

법제교류 자료 10-15-7

가 (ODA)

2010. 6. 29.

## 일 정

- 일 시 : 2010년 6월 29일 (화) 14:00~19:00
-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302호 세미나실
- 주 제 :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 사 회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 1 주제 :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박기갑(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 2 주제 :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정경수(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 제 3 주제 :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박병도(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 4 주제 :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이정(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 종합토론  
심영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용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목 차

▣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	7
제 1 장 서 론 .....	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	9
제 2 절 벨기에 ODA 현황 .....	14
제 2 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법제 .....	19
제 1 절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구조 .....	19
제 2 절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내용 .....	22
제 3 절 벨기에 법제의 특징 .....	22
제 3 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 .....	22
제 1 절 체계의 개관 .....	22
제 2 절 원조의 규모, 경로, 배정 .....	24
제 3 절 조직 및 관리 .....	26
제 4 절 정책의 시행 .....	27
제 5 절 인도적 활동 .....	29
제 4 장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	30
제 1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개관 .....	30
제 2 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	30
제 3 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	31
제 4 절 벨기에 법제 대비 한국 법제 상이점 .....	3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31
부 록 .....	33
ODA관련 주요용어 .....	35

벨기에 국제협력법 (영한대역) .....	37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53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61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	66
<b>■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b>	<b>77</b>
제 1 장 서 론 .....	7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	79
제 2 절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현황 .....	84
제 2 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법제 .....	92
제 1 절 연방정부조직법의 구조와 내용 .....	92
제 2 절 연방개발협력법의 구조 .....	92
제 3 절 연방개발협력법의 내용 .....	96
제 4 절 오스트리아 법제의 특징 .....	96
제 3 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 .....	96
제 1 절 체계의 개관 .....	96
제 2 절 원조의 규모, 경로, 배정 .....	98
제 3 절 조직 및 관리 .....	99
제 4 절 이행역량 .....	100
제 5 절 우선순위와 인도적 대응 .....	100
제 4 장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	100
제 1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개관 .....	100
제 2 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	101
제 3 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	101
제 4 절 오스트리아 법제 대비 한국 법제 상이점 .....	103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103
부 록 .....	104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 (영한대역) .....	106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14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141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14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149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	154
한국국제협력단법 .....	154
▣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	165
I. 개 요 .....	167
II. 미국의 ODA 현황 .....	168
1. 미국의 ODA 정책 유형 .....	168
2. 미국의 ODA 운용 체제 .....	169
3. 미국의 ODA 현황 .....	173
III. 미국의 ODA 법제 .....	179
IV. 미국의 ODA 시행 사례 .....	179
V. 미국의 ODA에 대한 평가 .....	181
VI.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183
▣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	185
제 1 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제도적인 구조 .....	191
제 2 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특징 .....	192
제 1 절 지역적 특징 .....	192

제 2 절 분야적 특징 .....	193
제 3 절 원조 조건의 특징 .....	194
제 4 절 원조 형태의 특징 .....	195
제 3 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역사적인 전개 .....	196
제 1 절 제1기 : 제2차 대전 후 배상기(1954-1963년)	
- 일본의 ODA 맹아기 .....	197
제 2 절 제2기 : 경제협력신장기(1964-1976년)	
- 일본 ODA의 본격적 시동기 .....	198
제 3 절 제3기 : 계획적 확대기(1977-1988년)	
- 일본 ODA의 주체적 확대기 .....	199
제 4 절 제4기 : 원조내용 충실기(1988-2000년)	
- 일본 ODA의 충실기 .....	201
제 5 절 제5기 : 원조정책의 재검토기(2000-현재) .....	203
제 4 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	206
제 1 절 일본 법정비지원제도의 현황 .....	206
제 2 절 JICA가 실시하는 기술협력으로서의 법정비지원 .....	208
제 3 절 법무성에 의한 법정비지원 .....	217
제 4 절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의 현황 .....	227
제 5 절 법정비지원을 둘러싼 상황과 과제 .....	236
참 고 문 헌 .....	239

#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발표자 : 박 기 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 1 장 서 론

### 1

#### I. 연구의 필요성

벨기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관한 선진적 제도와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벨기에는 1961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에 참여한 이후 국제적 수준의 ODA의 법제와 실행의 경험을 갖고 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의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국민총소득 대비 0.50% (2006년), 0.43% (2007년), 0.48% (2008년) 수준이었으며, 2010년까지 0.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벨기에의 ODA 공여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중앙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대륙의 최빈국들에 집중하고 있는 바,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의 현 수준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에 국내법제를 정비하였고,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리선언에 부합하는 정책조율 및 조치를 취하는 등의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벨기에가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1999년 제정한 「벨기에 국제협력법」이며, 그를 통해 벨기에의 현재적 차원의 공적개발원조의 확고한 법적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법제 정비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을 확립하였고, 특히 공적개발원조의 중점분야, 교차분야적 중점주제들을 설정하였다. 벨기에 원조체계는 연방외무부를 중심으로, 외무부 산하의 개발협력총국을 비롯하여 연방 및 지역 차원의 여

러 주체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원조체계를 분권화시키려 노력하고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의미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법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할 것을 검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뉜다. 그 이전에는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일반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와 실행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하다. 이에 비해 가입 검토 시점을 전후로 하여서는 공적개발원조 전반에 걸친 전문서적이 출간되는 한편 다수의 정책검토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개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 중에는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을 일부 소개하는 연구 성과도 나왔으나, 그 대상은 일본 등 특정 국가에 국한되고, 연구범위도 협소한 실정이다. 특히, 벨기에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은 바, 국내에서는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국내 연구 성과의 한계를 고려할 때, 벨기에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입법과 정책에서 초보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 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협력 관련 규범과 기준에 맞는 법제의 마련과 정책의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우리의 개발협력에 관한 법제의 이력은 매우 일천하다.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가입 시기를 전후하여 관련 입법의 필요에 따라 2008년 7월 송민순 의원 법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법안(진영 의원안, 배영식 의원안, 김부겸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법제 마련이 진행되어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7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기본원칙과 권한행사 및 배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개발협력정책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 법이 개발원조위원회의 규범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예컨대 평가 및 감시 체계의 확립과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시행을 위한 추가 세부입법을 위해서는 평가 및 감시체계가 공적개발원조가 법률목적에 부합하는지,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이 확보되는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규범과 기준 및 제 절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법제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우리 법제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 법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벨기에 법제와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에 분명하다.

## II.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가 다루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연구의 내용은 크게 1)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개관, 2)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 3)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 4)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우선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개관은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체계의 법적구조의 분석을 통해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원칙을 살펴보는 한편,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및 집중성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의 일반 동향과 개발협력 세부계획을 살펴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를 다룬다. 이에 해당하

는 법제 인프라로서 「벨기에 국제협력법」(Law on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후, 각 구성요소들을 축조해설한다. 특히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해 벨기에 국제협력법이 갖는 특징을 분석·정리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다루며, 그 기본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세부적으로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자세한 동향, 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관해 다루게 된다. 특히 원조의 규모·경로·배정, 조직 및 관리, 정책의 시행, 인도적 활동의 분야별로 나누어 이를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가 우리 법제에 대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에 관련된 법제를 소개·분석하는데서 출발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 국제협력단법과 동 법 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동 법 시행령을 다룰 것이다. 이어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이 우리 법제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각각 별도의 단위에서 분석·도출하게 된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다룬 분석·도출 내용을 체계화하여 입법적 과제 및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법제적 차원에서 우리 법제와 함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 입각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법제를 벨기에 법제에서 제시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을 담을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벨기에 프로그램에서 제시할 것이다.

### Ⅲ.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주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해당 법률의 완역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용어와 문장의 통일성과 엄밀성 확보를 위하여 번역대비표를 이용한다. 그리고 관련 용어 번역의 한국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원조개발기본법안’ 및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의 용어사용례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 성과를 전체와 공유함으로써 전체 성과의 통일성 담보에 유념할 것이다.

2단계는 벨기에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동료평가절차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검토이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중 하나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그 효과적 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중 전자 차원에서 행한 벨기에의 실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가 다룬 동료평가절차상 보고서를 정밀 분석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지침의 준수를 보장하는 벨기에의 실행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3단계는 우리나라 대외원조에 대한 검토·분석이다.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현황 및 정책 방향을 검토분석한 후 정부당국의 정책적 구상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체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도록 한다. 2차적으로 1차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벨기에 관련 법률의 축조해설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2 ODA

### I. 벨기에 개발협력 개요

#### 1. 법적 구조

1999년 5월 25일 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벨기에의 개발원조가 지속적 인간개발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 개발의 일반적 목적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법치주의, 선치 원칙의 달성
- 인간 존엄의 존중과 인권, 근본적 자유의 목적
- 협력국의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개발과 사회의 기반 강화 지원
- 벨기에 공공 여론의 인식 증진

벨기에의 개발협력은 원조의 지리적·분야별 집중 원칙 하에서 이루어진다. 지리적 집중의 원칙에 따라 벨기에의 직접적 양자협력은 2010년 현재 18개 국가(최대 25개 국가까지 원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됨)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분야별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개발협력 시 i) 생식건강을 포함한 기본적 보건의료, ii) 교육, iii) 농업과 식량안전, iv)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v)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의 지원을 포함한 분쟁방지와 사회통합의 5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이러한 분야들을 다룸에 있어서 벨기에 개발협력은 i) 자연, ii) 젠더 및 여성인권, iii) 사회적 경제(참여적 경제 개발), iv) 아동인권의 4가지 교차분야적 주제들을 고려해야한다.

## 2. 일반 동향

벨기에의 개발정책은 벨기에 연방정부 및 개발협력각료(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항상 유럽과 국제사회의 개발 의제를 반영하고 있다. 2005년에 채택된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유럽연합의 개발에 관한 유럽 총의는 벨기에 개발원조정책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벨기에 개발협력은 다음의 목표를 추구한다.

- 2010년까지 GNI 대비 개발원조 비율을 최소한 0.7%까지 격상
- 개발원조의 효과성 증진
- 수혜국의 부채부담 경감
- 개발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도입(미시경제, 사경제 분야에 대한 원조 제공, 공정거래 촉진을 통한 경제개발 증진)
- 새로운 형태의 원조 제공(협력국에 대한 직접적 예산지원을 통한 자생력 증진)

## 3. 개발협력 세부계획

### 1) 정부주도 개발협력(Governmental development cooperation)

정부주도 개발협력은 18개 협력국과 정부차원에서 합의되었으며, 정부 원조는 개발협력총국 예산의 약 20%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제일 많은 부분이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에 제공되고 있으며, 벨기에기술협력(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BTC)이 이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다.

18개 협력국 : 알제리, 베닌, 볼리비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니제르, 팔레스타인 자치령, 페루,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베트남

## 2) 유럽 차원의 개발협력 및 다자적 개발협력

벨기에는 유럽연합, 국제연합체제, 세계은행 및 IMF에 의해 운영되는 개발계획들에 재정원조를 하고 있다. 벨기에는 총 23개의 협력국제기구들과 작업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자적 협력은 DGDC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 3) 비정부주도 개발협력(Non-governmental development cooperation)

벨기에는 비정부기구, 대학, 과학기관, 교육관련 비영리기구, 관세동맹, 마을 및 지역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개발계획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계획예산의 85%까지 이를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DGDC 예산의 25%가 비정부주도 개발협력에 대한 합동재정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 4) 벨기에 생존기금(Belgian Survival Fund, BSF)

벨기에 생존기금은 1983년, 의회의 구상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사하라이남지역 만성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사업을 지원한다. 벨기에 생존기금은 벨기에기술협력, 19개의 벨기에 비정부기구 및 4개의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벨기에 복권(Belgian National Lottery)을 통해 마련한다.

## 4. 중부아프리카지역에 집중된 개발정책

지속가능한 개발은 평화가 확립된 상황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벨기에는 분쟁에 의해 황폐화된 아프리카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프리카지역에서의 벨기에 개발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대호수지역

(Great Lakes Region, 이하 대호수지역) 취약국가(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르완다)들의 화해, 민주주의 증진, 국가와 사회구조의 재건이다.

이들 국가 중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인 르완다에는 2010년까지 1억 4천만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원조가 농업, 식수제공, 발전시설의 지원의 형태로 지역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보건분야에 4천만유로가 사용되고 있는데, 르완다정부의 요청에 따라 벨기에는 모든 개발계획을 보건분야에 초점을 두도록 조정하고 있다. 르완다 사법체제의 제도적, 군수 차원의 강화를 통해 르완다정부의 선치(good governance)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오랜 내전을 겪은 부룬디도 2009년 새로운 협력협정의 체결 하에 벨기에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다. 총 6천만유로가 부룬디의 새로운 공공기관들과 직업훈련 및 경찰의 역량 제고, 기술교육의 확대 및 한센병, 결핵과의 투쟁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1천5백만유로는 부룬디의 도로와 발전소의 질적 개선 및 고용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긴급계획(emergency programme)에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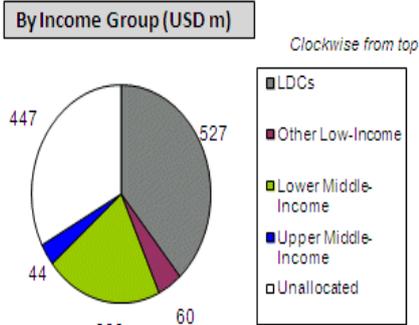
## II. 벨기에 개발협력 성과

2007-8년도 벨기에의 개발협력에 관한 실행과 전반적 성취도는 다음과 같다.

**BELGIUM**

Gross Bilateral ODA, 2007-08 average, unless otherwise shown

Net ODA	2007	2008	Change 2007/08
Current (USD m)	1 951	2 386	22.3%
Constant (2007 USD m)	1 951	2 219	13.7%
In Euro (million)	1 425	1 654	16.1%
ODA/GNI	0.43%	0.48%	
Bilateral share	63%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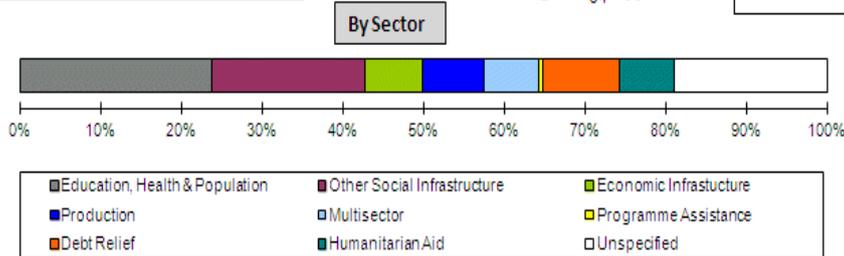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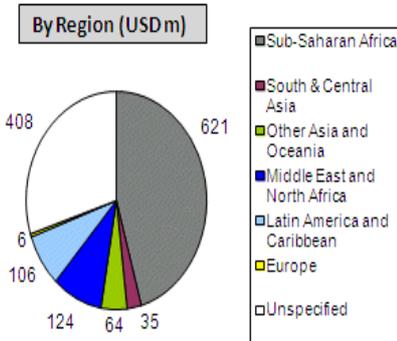


**Top Ten Recipients of Gross ODA (USD million)**

1 Congo, Dem. Rep.	192
2 Rwanda	54
3 Iraq	53
4 Cameroon	46
5 Burundi	43
6 Palestinian Adm. Areas	25
7 Mozambique	25
8 Viet Nam	25
9 Peru	24
10 Senegal	22

**Memo: Share of gross bilateral ODA**

Top 5 recipients	28%
Top 10 recipients	37%
Top 20 recipients	50%



Source: OECD - DAC ; [www.oecd.org/dac/stats](http://www.oecd.org/dac/stats)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는 2008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의 0.48%이며, (2009년 0.55%)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 중 7위 (2009년 6위)이다. 벨기에의 순수 공적개발원조규모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미화 24억달러로 22% 증가하였다. (2009년 26억달러, 공여국 중 14위)

벨기에는 공적개발원조를 2010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봤을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발원조위원회는 이러한 벨기에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벨기에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벨기에의 특별부채경감(exceptional debt relief)형태의 원조가 2011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벨기에는 2010년 목표 달성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하며, 따라서 명확한 중기예산계획(medium-term budgetary plan)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벨기에는 자국이 설정한 개발협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 18개국가에 대한 개발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중앙아프리카 지역, 특히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의 3개 국가(이들 국가는 모두 상위 5개 수혜국에 포함된다.)에 대해 양자적 공적개발원조의 21%를 지원할 정도로 지역적 집중원칙을 잘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는 양자적 공적개발원조의 58%를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 55%를 최빈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균을 상회한다. 자국이 설정한 최빈국 중 최소 10개 수혜국에서 상위 10개 공여국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하는 재원의 최빈국에의 전략적·집중적 할당은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제 2 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법제

### 1

#### I. 기본정보

##### ○ 입법경위

- 1999년 제정

- 법률 구조
  - 3부
  - 11개 조항
- 의 의
  - 벨기에 ODA 정책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본법

## II.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내용

### 1. [제 1 부] 일반규정

- 제 1 조
  -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적용 대상
- 제 2 조
  - 벨기에 국제협력의 정의와 범위
  - 각료(minister)의 정의
  - 협력국(partner country)의 정의
  -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sations)의 정의와 범위
  - 직접적 양자협력(direct bilateral cooperation)의 정의
  - 간접적 양자협력(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의 정의
  - 다자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의 정의
  - 계획(programme)의 정의 및 범위
  - 사업(project)의 정의 및 범위
  -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정의
  - 공동경영(partnership)의 정의
  -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정의
  - 개발단체(developing organization)의 정의
  - 선치(good governance)의 정의
  - 벨기에 개발 원조(Belgian development Assistance)의 정의 및 범위

2. [제 2 부] 목 적

< 목적의 정의 >

○ 제 3 조

-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과 원칙

3. [제 3 부] 전략

<제 1 장> 타당성과 평가

<타당성 판단기준>

○ 제 4 조

- 타당성의 판단기준

<외부평가>

○ 제 5 조

- 외부로부터의 평가에 관한 절차

<제 2 장> 기본원칙

<제 1 절> 직접적 양자협력

I. 지리적 초점

○ 제 6 조

- 직접적 양자협력의 대상인 협력국 수의 제한 및 선정기준
- 각 협력국에 대한 개발 전략의 수립 의무 및 절차

II. 중점 분야

○ 제 7 조

- 직접적 양자협력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
- 각 분야별 개발 전략의 수립 의무 및 절차

III. 중점 주제

○ 제 8 조

- 제 6조의 각 분야 고려 시 함께 검토해야 할 주제
- 각 주제별 개발 전략의 수립 의무 및 절차

<제 2 절> 다자협력

○ 제 9 조

- 다자협력의 대상인 협력국제기구의 선정절차, 협력국제기구의 수 및 선정기준

<제 3 절> 간접적 양자협력

< 비정부기구 >

○ 제10조

- 간접적 양자협력의 대상인 비정부기구의 선정절차, 선정최소기준

< 기타 협력자 >

○ 제11조

- 제10조 외의 협력자의 선정절차, 선정최소기준

2

3

## 제 3 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

1

벨기에 개발협력은 지난 2년간 국제적 서약들과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정책들이 공포되었고, 원조 관리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협력에 관한 새로운 법이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은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이하 파리선언)과 ‘상호보완

성과 노동분담에 관한 유럽연합 행동규범'(Code of Conduct on Complementarity and the Division of Labour of the European Union) 등의 관련 국제 구상에 따라 벨기에의 개발정책을 현대화하며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2005년부터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또한 벨기에 개발협력의 추가적인 동력이 되고 있는데, 벨기에는 대호수지역과의 역사적인 연관성 속에서 특별히 중부 아프리카지역에 초점을 두고 개발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벨기에 개발협력이 상당부분 취약국가들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빈곤감소는 2008-2011년 정부계획 내 '확대된 세계안보의제'(a larger global security agenda)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법적 기반은 1999년 벨기에 국제협력법(1999 Law on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이다.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벨기에 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은 벨기에의 개발원조가 지속적 인간개발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i) 개발의 일반적 목적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법치주의, 선치 원칙의 달성, ii) 인간 존엄의 존중과 인권, 근본적 자유의 목적, iii) 협력국의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개발과 사회의 기반 강화 지원, iv) 벨기에 공공 여론의 인식 증진의 세부적인 목적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벨기에의 원조체계는 연방외무부(FPS Foreign Affairs, FPSFA)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다. 연방외무부는 개발협력총국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특히 개발정책의 준비와 지원, 개입의 감시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협력총국은 아직 이러한 광범위한 권한을 실제로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첫째, 연방외무부 내에 개발협력각료(Minister of Development Cooperation) 산하 정책반(Policy Cell), 개발협력총국 내 정책지원단위(Policy Support Unit)의 2개의 정책형성단위가 있어 양자의 업무가 중

복될 수 있다는 것, 둘째, 개발협력총국의 정책지원단위는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낮고, 전략을 고안하는데 필요한 재원도 부족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벨기에의 정책개발과 전략검토능력의 제고를 위해, 정책지침에 대한 권한 위임 및 두 정책형성단위 역할분담의 명확화, 그들의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벨기에 개발협력의 전략적 기본틀은 1999년 벨기에 국제협력법을 비롯하여 특정 주체들을 규율하는 여러 개별법 및 다양한 칙령(royal decrees), 그리고 연방 차원의 전략과 분권적 실체(federated entities) 차원의 개별 전략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벨기에의 협력국에게 불필요한 업무처리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벨기에의 개발원조를 전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접근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벨기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회담을 통해 공통된 개발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특히 연방외무부는 여러 기관, 분권적 실체, 의회,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하에 이러한 회담을 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설정된 공통된 장기목표는 중기전략을 통해 행동계획으로서 구체화되어 다양한 주체들의 조정된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의 상승효과를 꾀할 수 있다. 현재 파리선언 등의 국제적인 구상에 발맞추어 새로운 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벨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새로운 법에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 2. , ,

벨기에는 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왔다. 2002년 몬테레이에서 발표한 2010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GNI/ODA ratio, 이하 원조비율)을 0.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서약은 견고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벨기에는 현재 원조비율 상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하며, 규모 측면에서는 14위에 해당한다. 또한 2009년에 벨기에 공적개발원조는 26억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실질기준 상 2004년 대비 44% 증가한 것이다. 원조비율은 0.41%에서 0.55%로 증가하였다. 몬테레이목표가 벨기에 법체계 안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벨기에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2010년까지 비율을 0.70%로 끌어올리겠다는 벨기에의 목표가 달성되면 벨기에는 0.70% 원조비율을 달성한 5개 국가 중 하나가 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벨기에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벨기에의 특별부채경감(exceptional debt relief)형태의 원조가 2011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벨기에가 2010년 목표 달성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 벨기에는 정부주도 개발협력규모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채택된 13개 유도적 협력계획(indicative cooperation programmes)에 대한 포락예산(budget envelopes)을 배가(doubling)하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원조비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명확한 중기예산계획(medium-term budgetary plan)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벨기에는 자국이 설정한 개발협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 18개국가에 대한 개발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원조는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벨기에는 그 투자자산의 3분의 1을 취약국가 지원에 제공하고 있는데, 계획된 개발계획 및 사용계획을 시행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공적개발원조 전반에 대한 위험전략(risk strategy)을 고안해야하며 다른 행동계획을 대안으로서 준비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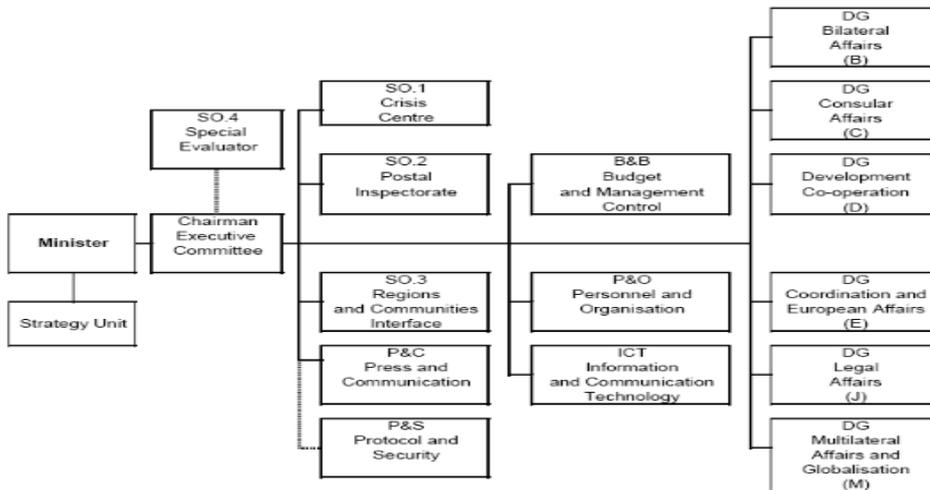
또한 벨기에는 기금계획(fund programmes)이 협력국과 합의한 경로를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개발협력총국이 전달한 원조는 66%에 달하지만 총 원조량 중 단지 16%만이 협력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유도적 협력계획을 통해 시행되었을 뿐이었다. 협력국과 합의

된 경로를 통한 원조의 공여는 개발과정에서 협력국의 주인의식을 보다 증진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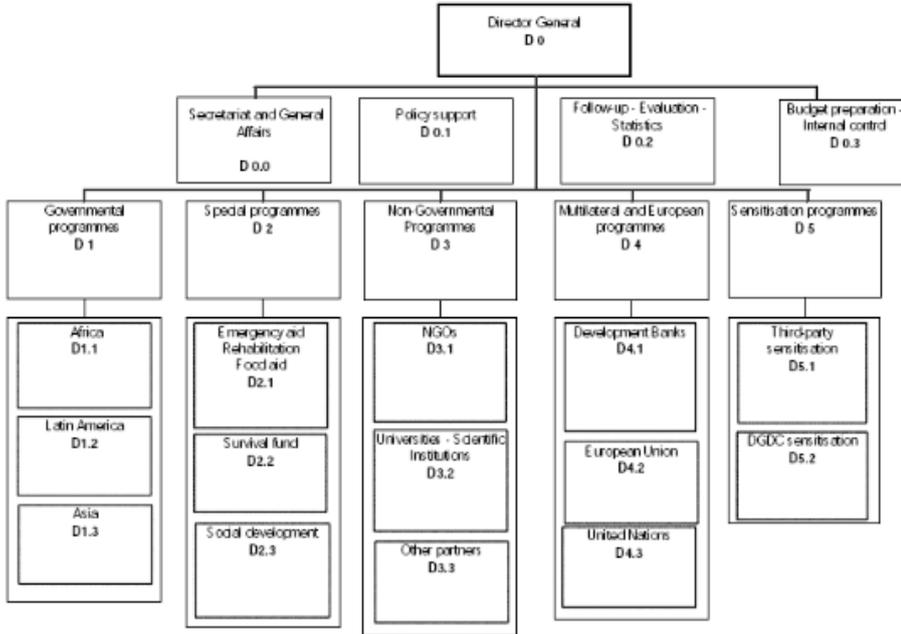
벨기에는 다자주의를 중요한 대외정책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40%가 다자기관(주로 유럽연합의 기관들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의 핵심예산(core budget)을 지원하는데 배정되고 있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균인 26%를 상회하는 수치이고, 벨기에의 다자협력에 관한 전략수립의 노력은 지난 2005년 동료검토에서 권고했듯이 시기적절하다. 벨기에는 2009년에 들어서면서 개발협력총국의 모든 자발적 기여를 다자기관 핵심예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특정사업에 대한 기금채정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벨기에의 새로운 접근은 긍정적이며, 벨기에의 모든 다자적 동반자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여타 공적실체(public entities)에 의한 다자적 기여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3

<벨기에 연방외무부 조직체계도>



<벨기에 개발협력총국 조직도>



4

벨기에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이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개발협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의 2007년 조화와 일치 계획(Harmonisation and Alignment Plan)은 벨기에가 원조효과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해야 한다는 2005년 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한다. 벨기에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에 맞춰진 4개년 유도적 협력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최근의 정책 및 전략적 결정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개발협력총국은 특정한 아크라행동계획을 개발하기보다 조화와 일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직원 대상 실천지침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실용적 접근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벨기에 개발 주체들의 활동에 대해 파리선언의 의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벨기에의 노력은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개발 주재관(development attachés)은 벨기에 개발 협력 주체들 간 상승효과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벨기에 정부의 비정부기구와의 2009년 협정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으로서, 비정부기구가 파리선언의 원칙들을 준수할 것과 개발협력총국이 그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위탁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초점 분야의 숫자를 줄이기로 하고, 그 지원을 협력국의 우선순위에 일치시키려는 벨기에의 결정은 200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유도적 계획 하의 다양한 원조유형을 통해 시행된다. 이러한 벨기에의 접근은 협력국 스스로의 개발과정을 인정하면서 협력국의 분야별 전략의 시행을 지원하라는 2005년 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한다.

하지만 정책 시행 상 원조효과성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벨기에는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있다. 첫째는 주인의식, 역량 및 체계의 수준이 떨어지는 취약국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부패가 만연한 취약국가에서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행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벨기에는 새로운 유도적 계획 하에 추가적인 예산 분할발행분(additional budget tranche)을 중앙아프리카지역 3개 협력국 중 2개 국가에 배정하였으며, 이는 해당 국가들이 합의한 선치의 기준을 만족시킬 때에만 제공된다. 이러한 벨기에의 조치는,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형성하는데 있어 협력국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는 벨기에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체계에서 비롯된다. 유도적 협력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은 점차적으로 분권화되고 협의적인 절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획 형성에 있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벨기에 원조를 보다

분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재정의 분권화는 원조의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셋째는 벨기에기술협력(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BTC)이 새로운 원조 유형에 보다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벨기에는 많은 수의 유사한 정책 시행 단위를 갖고 있으나, 이들에게 수혜국체계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다. 개발협력총국과 벨기에기술협력은 특히 취약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내부적 제한을 평가하고 수혜국체계를 사용하기 위한 직원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개발협력총국과 벨기에기술협력이 원조의 결과를 관리할 효과적인 체계를 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기존의 체제를 결과중심관리체제(results-based management)로 개선하고 이러한 체제를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원조에 있어서의 경험을 새로운 정책의 개발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벨기에는 모든 새로운 유도적 계획에 대해 결과모형(results matrix)을 포함시켜야 한다.

## 5

벨기에는 점진적으로 그 인도적 원조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일치시키고 있다. 2006년에 채택된 ‘인도적 원조에 대한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Humanitarian Aid)은 벨기제가 처음으로 채택한 포괄적 인도 정책(comprehensive humanitarian policy)이고, 선진 인도적 원조공여국 협의회(Good Humanitarian Donorship, GHD)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대호수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재해대비 및 교차분야적 현안, 특히 젠더 평등, HIV/AIDS, 환경 및 인권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절차는 벨기제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 맞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벨기제의 인도적 활동에 관한 예산은 2004년 대비 2008년에 실질기준 상 71% 증가했다. 그리고 이는 전체 공적개발원조량에 비취봤을

때 그 비율이 6%에서 9%로 증가한 것이다. 벨기에는 인도적 활동에 관한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제연합합동호소(UN Consolidated Appeals Process, CAPs)에 대해 사용하였으며, 10-15%를 국제적십자·적십월운동에 의한 호소에 사용하였다. 또한 다자적인 경로를 통해 벨기에는 다자기구출연을 시작하였으며, 여러 개의 다자적 신속대응체계(multilateral rapid response mechanisms)를 지원하고 있다.

선진 인도적 원조공여국 협의회의 원칙들은 인도적 원조가 “회복과 장기적 개발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벨기에는 그 인도적 수단의 대부분을 개발협력총국 관할 하로 통합시키고 있고, 이는 회복과 장기적 개발에 기여하는 원조의 측면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조치이다. 벨기에는 앞으로 이러한 통합을 더욱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적 원조에 있어 인력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이 없는 현 상황 하에서, 벨기에는 인도적 계획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백히 가치를 부가시킬 수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 상의 권한이 현장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긴급상황에 처하기 쉬운 협력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인력, 현장 주재관들에 대해 ‘인도적 원조에 대한 전략계획’에 포함된 인도적 원칙을 숙지시켜야 한다. 사업 감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결과중심적 감시체계의 채택 또한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 제 4 장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1

2

3

4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부 록

## ODA관련 주요용어

영 어	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D ACTIVITY</li> <li>• AMORTISATION</li> <li>• ASSOCIATED FINANCING</li> <li>• BILATERAL</li> <li>• CLAIM</li> <li>• COMMITMENT</li> <li>• CONCESSIONALITY LEVEL</li> <li>• CONSTANT DOLLARS</li> <li>• COUNTRY PROGRAMMABLE AID (CPA)</li> <li>•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li> <li>• CREDITS</li> <li>•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li> <li>• DAC LIST OF ODA RECIPIENTS</li>   <li>• DEBT REORGANISATION</li> <li>• DEFLATORS</li> <li>• DISBURSEMENT</li> <li>• EVALUATION</li> <li>• EXPORT CREDITS</li> <li>• GRACE PERIOD</li> <li>• GRANT</li> <li>• GRANT ELEMENT</li> <li>• GRANT LIKE FLOW</li> <li>• IMPUTED MULTILATERAL FLOW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조활동</li> <li>• 원금상환 / 소각</li> <li>• 재휴금융</li> <li>• 양자적</li> <li>• 청구(권)</li> <li>• 공약(公約)</li> <li>• 양허수준</li> <li>• 불변가격</li> <li>• 국별계획원조</li>   <li>• 신용보고체계</li>   <li>• 신용 / 여신 / 채권</li> <li>• 개발원조위원회</li>   <li>• 개발원조위원회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명단</li>   <li>• 채무조정 / 부채조정</li> <li>• 수치조정지수</li> <li>• 상환</li> <li>• 평가</li> <li>• 수출신용 / 수출차관 / 수출용자</li> <li>• 유예기간</li> <li>• 공여</li> <li>• 공여조건</li> <li>• 대위성 공여</li> <li>• 매개된 다자적 공여</li> </ul>

영 어	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ANS (ALSO CREDITS)</li> <li>• LONG TERM</li> <li>• MATURITY</li> <li>• MULTILATERAL AGENCIES</li> <li>• MULTILATERAL OUTFLOWS</li> <li>• NET FLOW</li> <li>• NET TRANSFER</li> <li>•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li> <li>•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li> <li>• OFFSHORE BANKING CENTRES</li> <li>• OTHER OFFICIAL FLOWS (OOF)</li> <li>• PARTIALLY UNTIED AID</li> <li>• PRIVATE FLOWS</li> <li>• PURPOSE OF AID</li> <li>• PURPOSE CODE</li> <li>•</li> <li>• SECTOR ALLOCABLE AID</li> <li>• SECTOR CLASSIFICATION</li> <li>• SHORT TERM</li> <li>• TECHNICAL CO-OPERATION</li> <li>• TERMS OF REPAYMENT</li> <li>• TIED AID</li> <li>• TOTAL RECEIPTS</li> <li>• UNDISBURSED</li> <li>• UNTIED AID</li> <li>• VOLUME (REAL TERM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 / 융자 / 차관</li> <li>• 장기</li> <li>• 만기</li> <li>• 다자적 기관</li> <li>• 다자적 공여</li> <li>• 순(純)공여(량)</li> <li>• 순(純)이전(량)</li> <li>• 공적개발원조</li> <li>• 공적개발금융</li> <li>• 역외금융센터</li> <li>• 기타 공적공여</li> <li>•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li> <li>• 민간공여</li> <li>• 원조목적</li> <li>• 원조목적분류번호</li> <li>•</li> <li>• 부문별 할당가능 원조</li> <li>• 부문 분류</li> <li>• 단기</li> <li>• 기술협력</li> <li>• 상환조건</li> <li>• 구속성 원조</li> <li>• 수혜총량</li> <li>• 미지급(공여)</li> <li>• 비구속성 원조</li> <li>• 공여규모(실질기준)</li> </ul>

## 벨기에 국제협력법 (영한대역)

### Law on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1999)

#### SECTION I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The present law governs a matter raised in Article 78 of the Constitution.

##### Article 2

In the present law the following terms are defined:

1.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ctions and contributions by the State of Belgium in the context of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2. "Minister":  
The member of the government with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in his/her remit;
3. "country":  
Country considered as a developing country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 벨기에 국제협력법 (1999)

#### 제 1 부

#### 일반규정

##### 제 1 조

본 법은 헌법 제78조에 규정된 문제를 규율한다.

##### 제 2 조

본 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벨기에 국제협력”:  
벨기에가 직접적 양자협력, 다자협력, 간접적 양자협력의 맥락에서 행하는 행위나 출자
- (2) “각료”:  
그 권한 내에서 벨기에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부 구성원
- (3) “협력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의해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는 국가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                                                                                                                                                                                                                                                         |                                                                                                                 |
|---------------------------------------------------------------------------------------------------------------------------------------------------------------------------------------------------------------------------------------------------------|-----------------------------------------------------------------------------------------------------------------|
| <p>4.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br/>Organisations which may be approved by the Minister and which may receive subsidies from the State of Belgium for their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p>                           | <p>(4) “비정부기구”:<br/>각료에 의해 승인되는 기구 및 개발협력의 맥락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 벨기에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구</p>                                |
| <p>5. "direct bilateral cooperation":<br/>Programmes or projects in a partner country, funded by the State of Belgium,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p>                                                                             | <p>(5) “직접적 양자협력”:<br/>협력국과의 양자협정에 근거하여 벨기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협력국 내에서의 계획 혹은 사업</p>                                  |
| <p>6.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br/>Programmes or projects in a partner country, funded or co-funded by the State of Belgium based on an agreement with a third party, which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or programme;</p>      | <p>(6) “간접적 양자협력”:<br/>당해 사업 혹은 계획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제3자와의 협정에 근거하여 벨기에로부터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협력국 내에서의 계획 혹은 사업</p> |
| <p>7. "multilateral cooperation":<br/>Programmes or projects funded by the State of Belgium and implemented by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and Belgian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sations for their development programmes or projects;</p> | <p>(7) “다자협력”:<br/>벨기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들의 개발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벨기에의 출자에 의해 이행되는 협력국 내에서의 계획 혹은 사업</p>        |
| <p>8. "programme":</p>                                                                                                                                                                                                                                  | <p>(8) “계획”:</p>                                                                                                |

Coherent set of short-term and medium-term objectives, focusing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n structural and sustainable enhancement of the position of individuals and groups of individuals in poor social categories in partner countries;

협력국들 내의 빈곤계층에 속하는 개인들 혹은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의 구조적이며 지속적인 지위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련의 단기적, 중기적 목적

9. "project":

Initiative which may, in particular, take the form of action, gifts, financial assistance or bursaries;

(9) “사업”:

특히 행위, 기증품, 재정적 원조 혹은 장학금의 형태를 취하는 구상

10.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ment centred on meeting current requirements, without compromising the requirements of future generations and in respect of which achievement thereof requires a process of change to adapt the use of resources, allocation of investment, targeting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to meet both current and future requirements;

(10) “지속 가능한 개발”:

미래 세대의 요구와, 그 성취가 현재, 미래 양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이용, 투자의 할당, 기술개발의 목표 및 제도적 구조를 적응시키는 변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타협하지 않으며 현재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둔 개발

11. "partnership":

Active and participatory form of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pecial focus on developing local capabilities, decentralising action at the level of the relevant target

(11) “공동경영”:

특히 협력국 내의 개발 과정과 관련된 공공기관들, 시민사회 및 사경제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적 장애성에 특별한 초점을 두며, 관련 목표 집단의 수준으로 행위

groups and making the partner country responsible for development, specifically by involving the public authoritie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economic sector in the partner country concern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12. "good governance":

Method seeking to optimise management of institutional capabilities, the public authorities' decision-making process and management of public funds while respecting democracy, the rule-of-law stat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s;

13. "Belgian development assistance":

All contributions made by various Belgian authorities, both federal and local,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aid which are recognised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as constitu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를 분산시키고 협력국이 개발에 책임을 지게 하는, 개발협력의 맥락에서의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협력의 형태

(12) “선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근본적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제도적 장래성의 관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공공기금의 관리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체계

(13) “벨기에 개발 원조”:

OECD DAC의 규칙에 따라 DAC에 의해 공적개발원조(ODA)로서 인정되는 개발원조의 맥락에서, 다양한 벨기에 당국에 의해 연방, 지역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출자

**SECTION II**

**Objectives**

**Definition of objectives**

**Article 3**

The primary objective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to be achieved by combating poverty, based on the concept of partnership and compliance with relevant development criteria.

In this context,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tributes towards attaining the general objective of developing and consolidating democracy and the rule-of-law state, including the principle of good governance, and towards the objective of respecting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ith specific focus on comba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ocial status, ethnic origin, religion, philosophical beliefs or gender. Federal cooperation promotes synergy with municipal, provincial, regional, Community-based and European cooperation in order to benefit from the wider effects which, in the long term, favour those populations receiving

**제 2 부**

**목적**

**목적의 정의**

**제 3 조**

벨기에 국제협력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빈곤과의 투쟁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공동경영개념과 관련 개발기준의 준수에 근거한 지속적 인간개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벨기에 개발협력은 개발의 일반적 목적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법치주의, 선치 원칙의 달성을 위해, 그리고 특히 사회적 지위, 민족적 출신, 종교, 철학적 신념 및 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의 투쟁에 초점을 둔 인간 존엄의 존중과 인권, 근본적 자유의 목적을 위해 기여한다. 연방차원에서의 협력은 장기적으로 원조를 받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위해 도시, 주, 지역, 공동체 중심 및 유럽차원에서의 협력과의 상승효과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벨기에 개발협력은 협력국의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개발과 사회의 기반 강화를 지원하며, 동시에 벨기에 공공 여론의 인식을 증진시킨다.

assistance.

To achieve this objective of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upports socio-economic and socio-cultural develop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foundations of society in the partner countries whilst at the same time raising awareness amongst Belgian public opinion.

**SECTION III**

**Strategies**

**CHAPTER I Relevance and assessment**

**Relevance criteria**

**Article 4**

To enable it to contribute effectively to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ssesses the relevance of development, as measured using the criteria defined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hich help to ascertain whether the actions in question take sufficient account of the following underlying principles:

- 1. Strengthening institutional and management capabilities;

**제 3 부**

**전략**

**제 1 장 타당성과 평가**

**타당성 판단기준**

**제 4 조**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벨기에 국제협력은 OECD DAC가 정의한 기준에 따라 개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이는 문제의 행위가 다음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 1. 제도·관리적 측면에서의 장애성 강화

- |                                                                 |                     |
|-----------------------------------------------------------------|---------------------|
| 2. social and economic impact;                                  | 2. 사회 · 경제적 영향      |
| 3. technical and financial viability;                           | 3. 기술 · 재정적 실행가능성   |
| 4. effectiveness of the planned implementation procedure;       | 4. 계획된 이행 절차의 유효성   |
| 5. focus on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 5. 남성과 여성 간 평등에의 초점 |
| 6. respect for protection and safe-guarding of the environment. | 6. 환경 보호의 고려        |

**External assessment**

**Article 5**

The King shall determine the instruments required to provide external assessment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regard to the objectives of the latter cited in Article 3 and to the relevance criteria cited in Article 4 and to Belgian development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of Belgium in addition to that provided by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shall also be assessed with regard to the relevance criteria cited in Article 4. The Minister shall submit an annual external assessment report to the Chamber of Representatives and to the Senate by no later than 30 April of the following year and accompany it with any relevant comments.

**외부평가**

**제 5 조**

국왕은 제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과 제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 그리고 벨기에 국제협력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며 마찬가지로 제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벨기에 개발원조에 대한 외부평가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결정한다. 각료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기적 외부평가보고서와 관련 논평을 하원과 상원에 제출한다.

**CHAPTER II Underlying principles**

**제 2 장 기본원칙**

**Section I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제 1 절 직접적 양자협력**

**Sub-section I Geographical focus**

**I. 지리적 초점**

**Article 6**

**제 6 조**

1)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undertake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in a maximum of 25 (twenty five) countries or regional organisations of countries, provided that the programmes are aimed at all member countries of such organisations, selected, by Royal Decree debated within the Council of Ministers, as "partner countries in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criteria:

1) 벨기에 국제협력은 최대 25개의 국가 혹은 국가 간 지역기구들 내에서 직접적 양자협력을 수행하는데, 단 지역기구의 경우 그 계획들은 그러한 지역기구들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국들은 각료이사회에서 심의된 법령에 의해 "직접적 양자협력의 협력국"으로 선정된 국가들을 의미하고 그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근거한다.

1. The level of poverty in the partner country as measured against the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human development indicator and the human poverty indicator;
2. The relevant current experience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partner country;
3.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partner country to its own socio-economic development;
4. Compliance by the partner country with the principle of

1. 사회·경제개발, 인간개발지표 및 인간빈곤지표의 수준에 비견하여 측정된 빈곤의 수준
2. 협력국의 맥락에서, 벨기에 국제협력의 현재적 경험
3. 협력국 스스로의 자국 사회·경제개발에의 공헌
4. 협력국에 의한 선치 원칙의 준수

- good governance;
5. The occurrence of a crisis in the partner country in respect of which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may intervene at international level to resolve the conflict and prevent fresh acts of violence;
  6. The level of regional integration in the partner country in the context of regional cooperation;
  7. Policies seeking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to establish equal opportunities pursued by the authorities in the partner country.
- 2) For each partner country involved in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a strategy paper should set out the relevant development strategy.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and the methods to be used in drafting said strategy paper shall be stipulated by the King.  
The aforementioned strategy papers shall be forwarded, along with the opinion of the Federal Development Cooperation Council, to the Chamber of Representatives and to the Senate,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They shall be evaluated and amend-
5. 벨기에 국제협력이 국제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폭력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협력국 내에서의 위급상황의 발생
  6.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협력국 내의 지역통합의 수준
  7. 협력국 내의 당국에 의해 추구되는,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설립하려는 정책들
- 2) 직접적 양자협력에 포함된 각 협력국을 위해 전략문서는 관련된 개발전략을 설정한다. 전략문서의 작성절차와 방법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다.  
언급된 전략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연방개발협력 이사회의 의견과 함께 하원과 상원에 제출된다.  
그러한 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협력의 맥락에 비추어 최소한 매 4년마다 평가되고 수정된다.

ed at least every four years in light of the changing contex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 Sub-section II Sectoral focus

### Article 7

1)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engage in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ollowing five sectors:

1. Basic healthcare, including reproductive health;
2. Education and training;
3. Agriculture and food safety;
4. Basic infrastructure;
5. Conflict prevention and social consolidation, including support for respect for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For each sector, a strategy paper should set out the relevant development strategy.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and the methods to be used in drafting said strategy paper shall be stipulated by the King. The aforementioned strategy papers shall be forwarded, along with the opinion of the Federal Development Cooperation Council, to the Chamber of Representatives and to the Senate,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 II. 중점 분야

### 제 7 조

1) 벨기에 국제협력은 직접적 양자 협력에 있어서 다음의 5가지 분야에 착수한다.

1. 생식건강을 포함한 기본적 보건의료
2. 교육
3. 농업과 식량안전
4.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5.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의 지원을 포함한 분쟁방지과 사회통합

2) 각 분야에 대해 전략문서는 관련된 개발전략을 설정한다. 전략문서의 작성절차와 방법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다.

언급된 전략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연방개발협력 이사회의 의견과 함께 하원과 상원에 제출된다.

그러한 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협력의 맥락에 비추어 최소한 매 4년마다 평가되고 수정된다.

King.

They shall be evaluated and amended at least every four years in light of the changing contex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Sub-section III Thematic focus**

**Article 8**

1)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ectors cited in Article 6 of the present law shall always take account of the following three cross-sectoral themes:

- 1. Re-establishing a balance between rights and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 2. respect for the environment;
- 3. social economy.

2) For each of these cross-sectoral themes, a strategy paper should set out the relevant development strategy.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and the methods to be used in drafting said strategy paper shall be stipulated by the King.

The aforementioned strategy papers shall be forwarded, along with the opinion of the Federal Development Cooperation Council, to the Chamber of Representatives and to the Senate,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III. 중점주제**

**제 8 조**

1) 벨기에 국제협력은 본 법 제6조 (법에는 제6조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7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 규정된 분야들에 대해 다음의 3가지 교차분야적 주제들을 고려해야한다.

- 1. 여성과 남성에 대한 권리와 기회 간의 균형의 회복
- 2. 자연에 대한 존중
- 3. 사회적 경제

2) 각 교차분야적 주제들에 대해 전략문서는 관련된 개발전략을 설정한다. 전략문서의 작성절차와 방법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다.

언급된 전략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연방개발협력 이사회의 의견과 함께 하원과 상원에 제출된다.

그러한 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협력의 맥락에 비추어 최소한 매 4년마다 평가되고 수정된다.

King.

They shall be evaluated and amended at least every four years in light of the changing contex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Section II Multilateral cooperation**

**Article 9**

In line with the procedure and as per the methods determined by the King,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engage i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20 (twenty) selecte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ecognised as "partner organisations in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which meet the following minimum criteria:

1. The general objectiv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should be compatible with those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cited in Article 3;
2. The areas in which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is active should dovetail with one or more of the priority sectors or themes of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as identified in Articles 6 and 7;
3.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제 2 절 다자협력**

**제 9 조**

국왕에 의해 결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벨기에 국제협력은 20개의 국제기구들과의 다자협력에 착수하는데, 대상 협력국제기구들은 다음의 최소기준을 만족하여 ‘국제다자협력에 있어서의 협력국제기구’로서 인정된 국제기구들을 의미한다.

1. 국제기구의 일반 목적들은 제 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들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제기구가 활발히 활동 중인 분야들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7조에서 8조’를 잘못 규정한 것으로 보임) 분류된 직접적 양자협력의 우선 분야 및 주제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과 긴밀히 들어맞아야 한다.
3. 국제기구는 개발계획에 근거

should adopt a planned approach based on development programmes which assess the use of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cooperation,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 4.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coherent in relation to the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by other development cooperation players in a bid to harmonise all contribu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maximise their impact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relevance criteria cited in Article 4.

한 계획적 접근을 채택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다자협력에 대한 출자의 사용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 4. 다자협력에의 출자는, 국제협력에 대한 모든 출자들을 조화시키고 제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에 따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개발협력 수행자들의 국제기구에 대한 잠재적 출자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Section III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rticle 10**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engage in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with selecte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 line with a procedure and as per the me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King, which meet the following minimum criteria:

- 1. The organisation must have

**제 3 절 간접적 양자협력**

**비정부기구**

**제10조**

벨기에 국제협력은 국왕에 의해 결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비정부기구와의 간접적 양자협력에 착수하는데, 대상 비정부기구는 다음의 최소기준을 만족하는 비정부기구를 의미한다.

- 1. 기구는 비수익단체 혹은 공익

-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27 June 1921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non-profit associations or public interest bodies, or shall be a company serving a social purpos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13 April 1996 amending the laws on commercial companies, drafted on 30 November 1935;
2. The organisation shall have development cooperation as its primary company object;
  3. The organisation shall have relevant and current experience in one or more area (s) of activity stipulated by the King and shall be able to provide evidence of such by submitting activity reports covering the past three years, and shall be prepared to undergo an operational eval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tipulated by the King;
  4. The organisation shall adopt a planned approach based on a multi-annual programme, including a financial plan drawn up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5. The organisation shall be independent, as stipulated by the
-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1921년 6월 27일에 제정된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1935년 11월 30일에 초안이 작성된 영리회사들에 관한 법들을 개정하는 1996년 4월 13일 제정법에 따라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한다.
2. 기구는 개발협력을 그 회사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한다.
  3. 기구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활동분야와 관련된 현재적 경험을 가져야하며, 과거 3년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경험에 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국왕에 의해 명기된 절차에 따라 그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4. 기구는 다년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접근을 채택하여야하며, 다년계획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입안된 재정계획을 포함하여야한다.
  5. 기구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독립적이어야한다.

King;

6. The organisation shall be capable of ensuring that it can continue to function as per the conditions stipulated by the

King;

7.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s management bodies shall be Belgian nationals;

8. The organisation shall pursue activities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ited in Article 3 and which take account of the relevance criteria cited in Article 4;

9. The organisation shall keep transparent accounts.

6. 기구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조건에 따라 계속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7. 기구의 관리기구의 구성원 중 과반수는 벨기에 국민이어야 한다.

8. 기구는, 제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에 따르며 제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을 고려하는 활동을 추구하여야 한다.

9. 기구는 투명한 계좌를 유지하여야 한다.

**Other partners**

**Article 11**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eeks to engage in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with public-law companies, groups,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n particular via communities, regions,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and private-law establishments other than the organisations cited in Article 10, selected,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기타 협력자**

**제11조**

벨기에 국제협력은 특히 공동체, 지역, 주, 지방자치단체, 제10조에 규정된 기구들 이외의 사법적 시설들을 매개로하여 공공법률회사, 단체, 협회, 기관과의 간접적 양자협력에 착수하는데, 대상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간접적 양자협력의 협력자’로 선정된, 다음의 최소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as "partners in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and which meet the following minimum requirements:

1. The organisations must adopt a planned approach based on a programme in respect of which the procedure and planning methods are stipulated by the King, enabling evaluation of contributions of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2. The organisations must perform activities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objectives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ited in Article 3 and which take account of the development relevance criteria cited in Article 4.

We promulgate this Act and order that it be sealed with the State seal and published in the Belgian Official Gazette (Moniteur belge/Staatsblad).

1. 기구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간접적 양자협력에의 출자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그 절차와 계획방법이 국왕에 의해 명기된 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접근을 채택하여야한다.
2. 기구는 제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에 따르며 제4조에 규정된 개발 타당성 기준을 고려하는 활동을 추구하여야한다.

우리는 이 법을 공포하며, 국가표장으로 날인하고 벨기에 공식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0. 7.26] [법률 제9938호, 2010. 1.25, 제정]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

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 협력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제 6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

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제1호의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시달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3.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간 사업 중복 등으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① 시행기관은 매년 전년도에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작성·분석·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간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위원회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9993호, 2010. 2. 4, 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 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또는 복구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4 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적절한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구호물품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6 조(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 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3.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4.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 7 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 8 조(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종류·규모·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와의 협조방안 등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2.4>

③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해외 긴급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③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해외긴급구호본부)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된다.

③ 구호본부의 장은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거하고 해외재난의 성격 및 피해규모와 정도를 감안하여 제 5 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④ 구호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
2.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제구조대
3.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6.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 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9993호,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2007.3.29 법률 제8316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라 함은 국민소득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개정 1999.1.21>

제 3 조 (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5.24>

제 4 조 (설립) ①협력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 6 조 (정관) ①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제 7 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연수생의 초청
  - 나. 전문인력의 파견
  -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 라. 개발조사
  - 마. 재난구호
  -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관련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 및 그 밖의 부대 사업[전문개정 2001.5.24]

제 8 조 (임원) ①협력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9.1.21>

②총재 및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③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④이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⑤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⑥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삭제<1999.1.21>

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④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제12조 (이사회) ①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99.1.21>

③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임면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①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재원) 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유효기간 2012.9.30]

제16조 (출연금) ①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사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계리(계리)하여야 한다.

④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⑥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9]

[유효기간 2012.9.30]

제19조 (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25조 (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6조 (비밀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 (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5.12.6]

제31조 (과태료) ①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32조 삭제 <2001.5.24>

부 칙 <제4313호,1991.1.14>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협력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비용) 협력단의 설립비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 4 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제 5 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를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6 조 (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외무부·건설부·노동부·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3.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②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7 조 (예산의 이체)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 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

제 8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력단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 해외개발공사법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4985호,1995.12.6>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5638호,1999.1.2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부 칙 <제6475호,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5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7>생략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과산자”를 “과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316호,2007.3.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15조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발표자 : 정 경 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 제 1 장 서 론

## 1

### I. 연구의 필요성

오스트리아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관한 선진적 제도와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오스트리아는 1965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에 참여한 이후 국제적 수준의 ODA의 법제와 실행의 경험을 갖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의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국민총소득 대비 0.47% (2006년), 0.50% (2007년), 0.42% (2008년)의 수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여대상국은 이라크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전 대륙에 걸쳐 있는 바,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 빈민을 위한 개발원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는 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의 현 수준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국내법제를 정비하였고,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리선언에 부합하는 정책조율 및 조치를 취하는 등의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스트리아가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2002년 제정하고 2003년 개정된 「연방개발협력법」이며, 그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현재적 차원의 공적개발원조의 확고한 법적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법제정비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개발협력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외무부로 집중시키고 그 시행을 위한 기관으로 정부가 소유하는 유한회사인 오

스트리아 개발청을 창설하였다. 오스트리아 원조체계는 수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정부부처 중에서도 8개 부처에 집중되지만, 효과적 운영을 위해 외무부, 재무부, 개발청이 주도하도록 짜여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을 만들어 법률의 미비와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외무부와 재무부기 협력하여 준비하는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에는 우선순위 원조대상과 분야 및 통로를 확정하며, 그 준비 및 승인과정에서 공공여론을 수렴하도록 짜여 있다.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의미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법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할 것을 검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뉜다. 그 이전에는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일반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와 실행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하다. 이에 비해 가입 검토 시점을 전후로 하여서는 공적개발원조 전반에 걸친 전문서적이 출간되는 한편 다수의 정책검토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개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 중에는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을 일부 소개하는 연구 성과도 나왔으나, 그 대상은 일본 등 특정 국가에 국한되고, 연구범위도 협소한 실정이다. 특히, 오스트리아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은 바, 국내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국내 연구 성과의 한계를 고려할 때, 오스트리아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입법과 정책에서 초보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 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협력 관련 규범과 기준에 맞는 법제의 마련과 정책의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우리의 개발협력에 관한 법제의 이력은 매우 일천하다.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가입 시기를 전후하여 관련 입법의 필요에 따라 2008년 7월 송민순 의원 법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법안(진영 의원안, 배영식 의원안, 김부겸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법제 마련이 진행되어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7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기본원칙과 권한행사 및 배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개발협력정책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 법이 개발원조위원회의 규범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예컨대 평가 및 감시 체계의 확립과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시행을 위한 추가 세부입법을 위해서는 평가 및 감시체계가 공적개발원조가 법률목적에 부합하는지,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이 확보되는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규범과 기준 및 제 절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법제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우리 법제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 법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법제와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에 분명하다.

## II.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가 다루는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연구의 내용은 크게 1)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개관, 2)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 3)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 4) 우리나라

라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우선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개관은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원칙을 살펴보는 한편,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및 집중성 제고를 위한 국가별 및 주제별 우선순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의 두 가지 주된 방식, 즉 다자간 개발협력과 양자간 개발협력의 체계와 구성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를 다룬다. 이에 해당하는 법제 인프라는 2개의 법률, 즉 「연방정부조직법」(Federal Ministries Act)와 「연방개발협력법」(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을 소개한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연방정부 내에서 공적개발원조 관련 업무관장사항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지를 분석·제시하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연방개발협력법의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후, 각 구성요소들을 축조해설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연방개발협력법이 갖는 특징을 분석·정리할 것이다. 특히 2003년 개정을 통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계획과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오스트리아개발청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나라의 유사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법제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다루며, 특히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 3개년 개발정책 프로그램인 ‘오스트리아개발협력’의 기본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세부적으로 ‘오스트리아개발협력’의 정책의 맥락, 지역 차원의 양자협력, 주제별 우선순위,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골격, 다자적 개발협력 등을 다루게 된다. 또한 일관성과 효과성 확보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개선 또는 퇴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체계를 정리함으로써 평가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가 우리 법제에 대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에 관련된 법제를 소개·분석하는데서 출발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 국제협력단법과 동 법 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동 법 시행령을 다룰 것이다. 이어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이 우리 법제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각각 별도의 단위에서 분석·도출하게 된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다룬 분석·도출 내용을 체계화하여 입법적 과제 및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법제적 차원에서 우리 법제와 함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 입각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법제를 오스트리아 법제에서 제시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을 담을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오스트리아 프로그램에서 제시할 것이다.

### Ⅲ.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주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해당 법률의 완역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용어와 문장의 통일성과 엄밀성 확보를 위하여 번역대비표를 이용한다. 그리고 관련 용어 번역의 한국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원조개발기본법안’ 및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의 용어사용례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 성과를 전체와 공유함으로써 전체 성과의 통일성 담보에 유념할 것이다.

2단계는 오스트리아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동료평가절차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검토이다. 우

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중 하나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그 효과적 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중 전자 차원에서 행한 오스트리아의 실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가 다룬 동료평가절차상 보고서를 정밀 분석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지침의 준수를 보장하는 오스트리아의 실행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3단계는 우리나라 대외원조에 대한 검토·분석이다.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현황 및 정책 방향을 검토분석한 후 정부당국의 정책적 구상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체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도록 한다. 2차적으로 1차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오스트리아 관련 법률의 축조해설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2

### I.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개요

#### 1. 목적과 원칙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평화와 인간안보의 보장
- 전지구적 빈곤 감소
- 환경의 보전

오스트리아의 모든 개발 계획과 사업이 견지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주인의식/동반자의식
- 사회-문화적 맥락의 통합
- 아동 및 장애인의 필요에 대한 고려

- 젠더평등
- 주인의식, 조화 및 제휴

위의 목적과 원칙은 2002년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개발협력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모든 관련 당국에 대해 기준을 특정화시키는 특정 목표 목록과 함께 일관된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토대를 제공한다. 즉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법적 그리고 제도적 토대는

- 연방개발협력법
  - 개발협력 3개년 계획
- 이다.

## 2. 우선순위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지역과 동반자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중앙아메리카 :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서아프리카/사하라지역 : 카보베르데,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 동아프리카/빅토리아호수지역 : 에디오피아, 우간다, 케냐, 부룬디, 탄자니아, 르완다
- 남아프리카 :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히말리아/힌두지역 : 부탄, 네팔, 파키스탄
- 동남부유럽/발칸서부지역 :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니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 남중앙아시아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 기타 우선순위 국가 : 팔레스타인 자치령
- 특별 계획 :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서사하라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주제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식수와 위생
- 개발 관련 교육과 훈련 및 과학과 연구

- 농촌 개발
- 에너지
- 투자와 고용, 중소기업의 증진
- 분쟁방지와 해결, 선치와 법의 지배, 민주적 분권의 발전, 탈중앙 집권, 인권과 인간안보의 강화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개발청(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 이하 개발청)을 설립함으로써 2004년 시작된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원조를 진전시켜왔다. 오스트리아개발청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과 동유럽협력의 시행기관이다. 개발청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동반자국가 내에서 양자적 계획과 사업을 시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관련 예산을 관리한다. 특히 오스트리아개발청은 원조 및 개발정책의 국내조정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무부의 직원 및 기술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원조체계가 더욱 일관되고 원조가 예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5년 주기 예산체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3. 다자간 개발협력

산업의 세계화와 안보정책 분야의 긴급한 도전은 전지구적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국제적 개발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세계경제와 국제협력체계 내 개발도상국의 수용이 이를 위한 큰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의 체계 내에서 개발협력을 조정하도록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국제연합 및 산하 기구들, 세계은행 및 기타 개발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적 개발협력은 총체적으로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다자적 및 양자적 계획은 상승효과를 갖도록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상호연계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직접 기여 및 구체화된 계획을 통해 그리고 공동사업의 시행을 통해 다자적 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오스트리아는 다자적 개발협력에 2억 74백만 유로를 지출하였고 그 중 21백 유로가 국제연합에 투여되었고, 1억 77백만 유로를 유럽연합에 지출하였고, 국제금융 및 기타 기구에 75백만 유로를 투여하였다.

국제적 개발정책과 국제협력의 기본틀은 다자적 토대에 의거하여 발전할 수 있다. 개발 주제는 국제회의에서 끊임없이 공유되고, 국제회의는 개발정책을 위한 강령(예컨대, 도하, 몬테레이, 요하네스버그 등)을 만든다. 최근 정치적 사건과 발전은 항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으나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새로운 주제와 초점이 부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예는 아프가니스탄이다.

국제연합 체계의 독특한 특징은 개발 동반자들이 동일한 기초 위에서 협력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제연합의 개발협력체계가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기능적 단위로 유지되는 것은 유력한 회원국으로서 오스트리아에 이익이 되며 또한 국제연합 기구들의 위치에도 장점이 있다.

오스트리아가 국제연합 체계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국제연합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국제연합산업개발기구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 국제연합국제아동구호기금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
- 국제연합인간주거계획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HABITAT)

#### 4. 양자간 개발협력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획은 오스트리아개발청이 개발단체 및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행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을 위하여 개발청은 또한 동반자 국가 및 기타 기부 국가들의 정부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활동이 국제적 및 지역적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15개의 개발청 협력사무소 및 2개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고, 오스트리아 외교사절단 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다.

민간부문 및 개발을 새롭게 강조하기 위하여 개발청은 지속가능한 빈곤 감소를 위한 선결요건인 경제적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개발청의 목적은 동반자국가 내에서 경제개발을 강화하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 1) 빈곤 감소

여러 해에 걸쳐 빈곤과의 전쟁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획에서 핵심적 현안이자 오스트리아 공약의 중심 목적이다. 이 원조 계획과 사업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다음에 집중하고 있다.

- 우선순위 및 동반자 국가로서 최빈국의 선정
- 해당 국가 내에게 특별하게 필요가 큰 지역, 지방, 구역의 선정
- 동반자 국가 내에서 분산적 접근과정에 대한 지원

- 빈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조치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지향
-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선정 (특히 여성과 아동)

## 2) 교 육

오스트리아 교육협력의 핵심전략은 현장주의와 제도적 및 인적 자원 역량의 개발을 보장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 3) 에 너 지

수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부문 활동은 그 시행에서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소수의 사업에 집중하여 왔다. 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 내 빈민과 농촌주민에 대해 집중하여 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대략 20억명은 현대적 형태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다.

## 4) 젠 더

오스트리아의 젠더에 대한 개발협력 차원의 접근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여성, 젠더 그리고 무력충돌이고, 두 번째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의 이행과 관련된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이고, 세 번째는 젠더폭력방지활동이다.

## 5) 거버넌스, 인권 그리고 평화구축

폭력은 빈곤 다음으로 개발협력의 주 관심사다. 평화 없는 개발이 없듯이 개발 없는 평화도 없다. 그러나 개발협력을 실제상 및 시행상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분석적으로 인권, 젠더현안, 분쟁방지, 테러에 대한 전쟁 뿐 아니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연계시켜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개발협력은 빈곤 감소,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구조의 증진, 천연자원의 보존 및 적절한 교육을 통해 위기를 방지하

는데 기여한다. 개발협력의 자원이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일관된 국내적 및 국제적 정책, 즉 정치적 및 시행상 차원에서 국제개발, 무역, 방위 및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지속적인 과정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투여되고 있다.

#### 6) 농촌 개발

이 분야 활동의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변방의 저개발 지역의 소규모 농업이다. 그 활동은 생산성 증가, 산물의 다양화, 자원(토지, 자본, 기술 등)에 대한 접근의 보장,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반구조의 창설 및 개선과 대표조직의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7) 환경

오스트리아는 1992년 리오선언과 기후, 오존층, 생물다양성, 사막화에 관한 전지구적 4대 협약을 승인하였고, 그에 입각하여 장래 자연환경의 유지와 지원에 직접 나서고 있다. 1996년 이후 모든 사업과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은 의도하지 않는 여하한 부정적인 사회적 또는 생태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수행하고 있다.

#### 8) 물 공급 및 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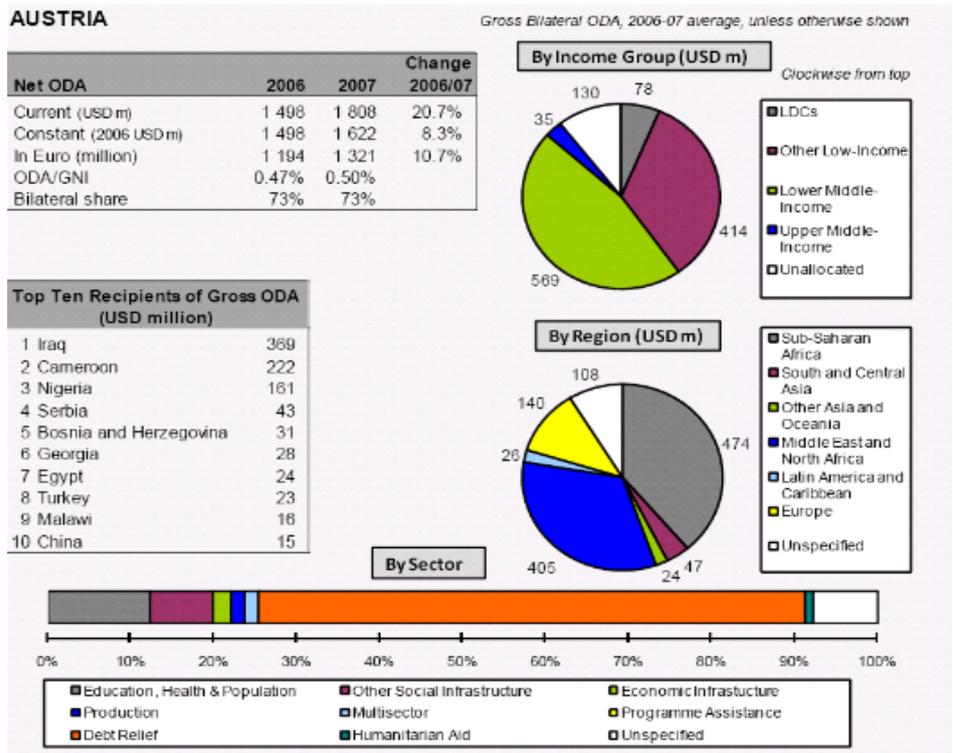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 정책은 항상적으로 세 가지의 주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사업은 첫째 주민들의 구체적인 혜택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지속가능하여야 하고, 셋째 담수지역의 천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물과 위생이다. 오스트리아는 물 관리 및 그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기법을 갖추고 전 세계 도처에서 물상황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9) 민간부문 개발

경제 성장은 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업은 수입과 일자리를 만든다.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은 동반자국가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을 강화시키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우선적 계획인 민간부문과 개발은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공적개발협력간 잠재적 상승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II.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성과

2006-7년도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에 관한 실행과 전반적 성취도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는 2008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의 0.42%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 중 11위이다. 오스트리아의 순수 공적개발원조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실적은 미화 17억달러로 14% 감소하였는 바, 2008년에 제공된 낮은 수준의 부채경감 공여에 기인한다.

부채경감은 2005-2007년 기간 중에는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의 50% 그리고 2008년에는 40%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다른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보다 높다. 부채경감은 2015년까지 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 0.7%라는 유럽연합 목표치에 도달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외원조를 급격하게 늘려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세계의 최빈국 주민들에 대한 개발협력에 집중하고, 인도적 지원, 우선적 협력대상국과 국제연합 기관에 대한 원조를 실질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협력대상국이 계획하는 원조의 비중을 증대시킴으로서 원조의 효과성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 제 2 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법제

### 1

### 2

#### I. 기본정보

- 입법경위
  - 2002년 제정
  - 2003년 개정

- 법률 구조
  - 6부
  - 28개 조항
- 의 의
  - 오스트리아 ODA 정책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본법
  -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청의 설립근거법

## II.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의 내용

### 1. [제 1 부] 정의 및 원칙

- 제 1 조
  -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정의
  -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목적
  -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원칙
  -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연방정부의 의무
- 제 2 조
  - 개발협력의 정의와 범위
  - 조치(measures)의 정의와 범위
  - 사업(projects)의 정의와 범위
- 제 3 조
  -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정의
  - 개발단체(developing organization)의 정의

## 2. [제2부]

### <제 1 장> 일반규정

#### ○ 제 4 조

- 개발협력의 수행
- 개발협력의 집행
- 개발협력의 기여에 부가되는 조건

#### ○ 제 5 조

- 개발협력사업의 시행방식
- 개발협력사업의 준비·시행·평가
- 단체선도형 방식
- 단체참여권유형 방식

### <제 2 장> 오스트리아개발청유한회사

#### ○ 제 6 조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설립

- 명 칭
- 본부소재지 및 회계년도
- 설립시기 및 등기
- 설립 및 소유의 주체
- 설립정관
- 순자본 및 추가자본
- 문서 등의 정본확인 불요

#### ○ 제 7 조 자산이전 및 평가

- 유동성 자산의 포괄적 이전 및 비금전적 자본의 공여
- 이전자산의 평가
- 대차대조표의 공개

#### ○ 제 8 조 오스트리아개발청 직무

- 개발협력조치의 준비 및 시행
  - 3개년 계획을 포함하는 연례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 9 조 관리지침
    - 비영리회사로서 지위
    - 필요한 모든 거래 및 조치수행의 권리
    - 경쟁조건부 용역제공의 권리
    - 관리인의 경영계획 수립
    - 관리인의 기획 및 보고체계 수립
    - 타법률의 적용 배제
    - 반대급부 제공 조건부 연방법무실 이용에 대한 권리
    - 반대급부 제공 조건부 연방전산센터 이용
    - 해산시 자산처리의 원칙과 한계
  - 제10조 오스트리아개발청 예산
    - 비용부담
  - 제11조 관 리
  - 제12조 운영위원회
  - 제13조 협력사무소
  - 제14조 오스트리아개발청 피고용인
  - 제15조 문관의 전직
  - 제16조 계약직 공무원의 전직
  - 제17조 피고용인이 된 공무원에 대한 적용규정
  - 제18조 평등대우
  - 제19조 휴 가
- <제 3 장> 기 금
- 제20조

3. [제 3 부] 자문 및 협력

- 제21조
- 제22조

4. [제 4 부] 기획 및 재정

- 제23조

5. [제 5 부] 최종조항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3

4

## 제 3 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

1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의 법적 기반은 1986년 연방정부조직법 (Federal Ministries Act, 1986)과 2002년 연방개발협력법 (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02)이다. 2002년 연방개발협력법은 오스트

리아개발청(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 이하 개발청)의 설립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개정되었다. 개발협력법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오스트리아의 원조정책을 집행하고 조정하기 위한 임무를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에 부여하였다. 이 법이 명시한 개발협력의 전반적인 목적은 3가지다. 첫째, 빈곤퇴치이고, 둘째,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및 선치(good governance)의 증진에 의한 평화와 안보의 보장, 셋째, 환경의 보전과 천연자원의 보호이다.

오스트리아 원조체계는 다수의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단일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갖고 있지 않고, 예산이 최소 8개의 정부부처로 분산되어 각 부처별 활동에 연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부, 개발청(정부가 소유하는 유한회사) 및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오스트리아 원조체계에서 주요 개발협력행위자이다.

오스트리아 개발원조에서 개발협력법은 개발정책 3개년 계획(Three-Year Programme on Development Policy)에 의해 보충되는데, 매년 갱신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3개년 계획은 원조에 관계된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수단이고, 우선순위 분야, 국가 및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원조통로를 규정한다. 3개년 계획은 외무부가 재무부와 협력하여 준비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외무부가 개발협력법을 집행하고 일관된 원조정책을 조정하는 임무를 명확히 부여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권한이 미약하다. 개발협력법에 따르면, 각 원조지출부처는 오스트리아 개발원조의 목적과 3개년 계획의 우선순위를 연계시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외무부와 재무부가 3개년 계획을 충실하게 견지하는 유일한 부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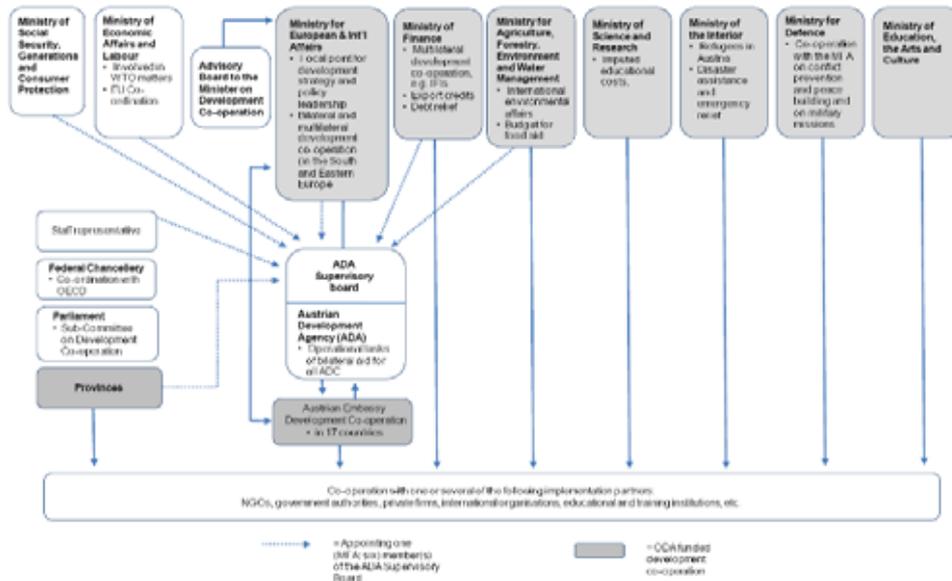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의 개발 목적과 비원조분야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은 연방정부에게 있다. 오스트리아 내각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조정하는

최고기관이다. 외무부는 일관성에 관한 정부부처간 실무분과(inter-ministrial working group on coherence)를 설치하였으며, 거기에서는 방위, 환경 및 기후변화와 무역 및 투자와 같은 현안에 관한 비공식적 협의가 있다. 그러나 일관성 및 비일관성에 관한 어떤 현안이 내각으로 회부되는지와 어떻게 회부되는지에 관해서는 불명료하다. 연방정부는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핵심사안을 식별하고 그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고 자원을 배정하는 방식에 의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다. 외무부가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위한 조정부처로서 그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책조정부서에 보다 명확하고 가시적인 권한위임을 취하는 것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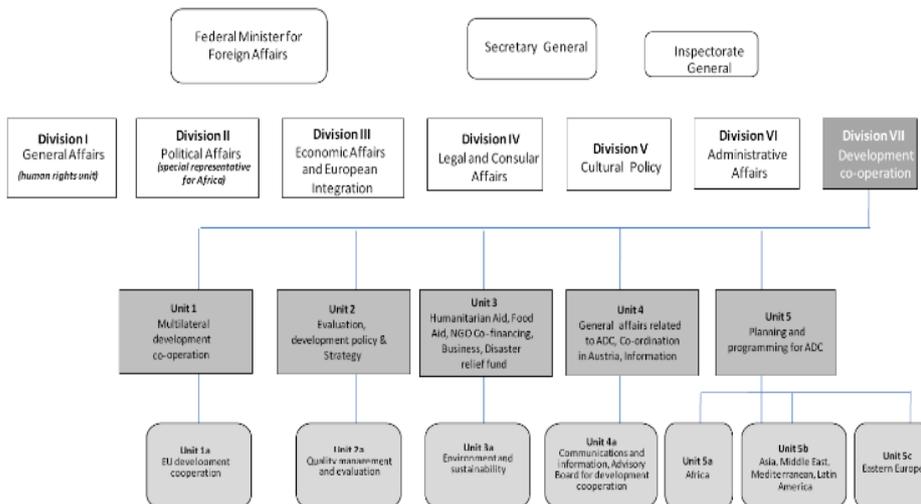
개발정책의 일관성에 관한 경제개발협력기구 합동보고서는 오스트리아가 감시, 분석 및 보고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킴으로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정부부처들 사이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고 감시하는 정보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적 자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외무부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국제개발연구재단(Austrian Research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의 협력을 개시하였다. 정책일관성부서에 대한 권한위임에 의해 오스트리아는 정부 내 분석 및 감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정책일관성 연구를 오스트리아 내, 국제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국가 내의 대학 및 연구소에 아웃소싱을 하였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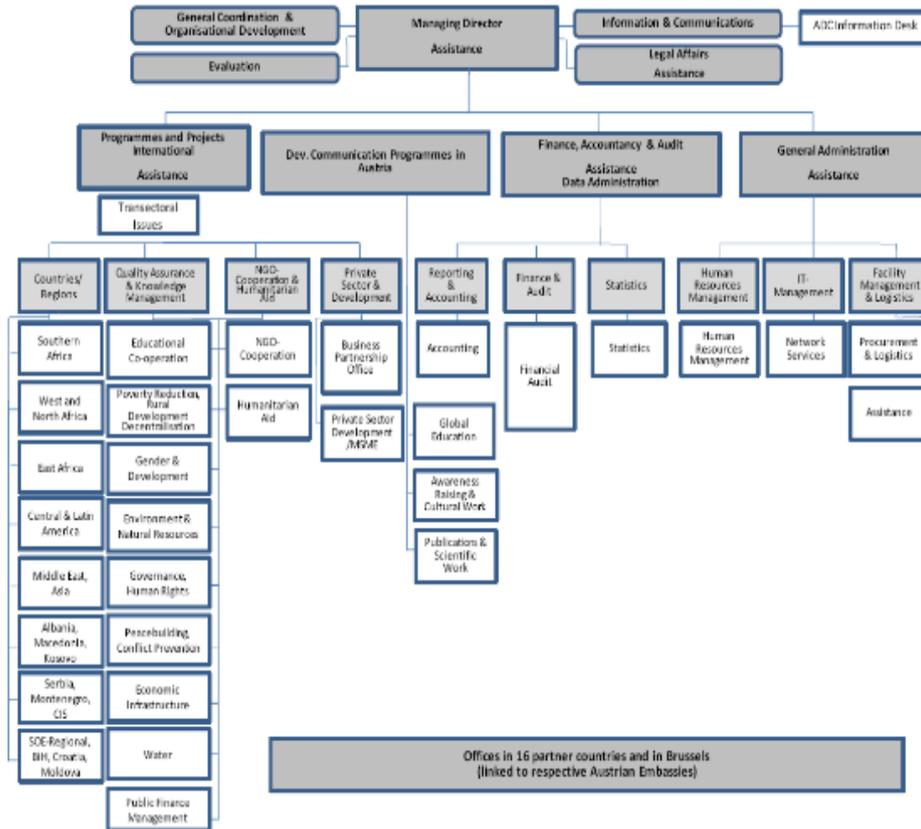
<오스트리아 원조체계>



<오스트리아 외무부 조직체계도>



<오스트리아 개발청 조직도>



4

5

제 4 장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1

2

3

<중기계획의 의의와 중요성>

경제개발협력기구 원조개발위원회 회원국의 경험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략과 시행을 유도하고 정부부처 전체에 걸쳐 총체적인 원조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정책에 대한 중간매개체는 원조관리의 우수사례이다. 현재에 있어서 오스트리아의 3개년 계획은 외무부와 개발청을 위한 3개년 전략과 활동계획과 혼용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오스트리아 개발원조에 적용할 수 있는 중기정책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개발협력법은 3개년 계획이 매년 갱신되고 내각에 제출된다. 이와 같은 3개년 계획의 순환성(rolling nature)은 우선순위의 누적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원조를 분산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승인받는 정책성명의 부재와 국제원조계획에 관한 정책토론의 결여는 그 계획을 행정집행으로 격하시키고 설계와 시행을 일반행정에 맡기게 된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는 현체계의 복잡성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지침을 가지고 중기의 정치적으로 안착한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연방개발협력법은 3개년 계획이 이 필요에 효과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향후 참여메카니즘을 통해 이 고안이 이루어진다면, 중기정책은 오스트리아 원조전략에 관한 합의를 달성하고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모든 정부부처와 시민사회가 이 전략에 대한 주인 의식이 제고될 것이다.

<정치적 및 공적 후원>

오스트리아의 개발원조의 상대적 취약점은 공적개발원조가 행정적 차원으로 국한되고 정치적 공론화 및 민간영역의 참여의 부족이다. 오스트리아의 개발원조는 공적 기관 중심이고 민간영역의 참여의 제고와 제도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오스트리아는 교회관련 자선 기부를 통한 빈민에 대한 연대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자선 전통을 가진 다른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과는 달리, 오스트리아의 연대는 개발원조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전환되지 못했다. 원조는 주변적인 정치현안이고 원조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뿌리가 깊지 못하다. 더욱이 의회 내에서 개발에 관한 토의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를 0.7%에 달하도록 하겠다는 국제적 공약에 부합하고 새천년발전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이 강한 공적 그리고 정치적 후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들과 공적 인사들이 원조 및 개발 현안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들과 공적 인사들이 원조 및 개발 현안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외무부, 재무부 및 개발청은 전략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원조정책, 특히 개발 성과에 관한 소통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적 논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다른 원조지출부처는 자신의 개발협력 경험이 대중과 잘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의 기본정보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부 록

영 어	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D ACTIVITY</li> <li>● AMORTISATION</li> <li>● ASSOCIATED FINANCING</li> <li>● BILATERAL</li> <li>● CLAIM</li> <li>● COMMITMENT</li> <li>● CONCESSIONALITY LEVEL</li> <li>● CONSTANT DOLLARS</li> <li>● COUNTRY PROGRAMMABLE AID (CPA)</li> <li>●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li> <li>● CREDITS</li> <li>●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li> <li>● DAC LIST OF ODA RECIPIENTS</li>   <li>● DEBT REORGANISATION</li> <li>● DEFLATORS</li> <li>● DISBURSEMENT</li> <li>● EVALUATION</li> <li>● EXPORT CREDITS</li> <li>● GRACE PERIOD</li> <li>● GRANT</li> <li>● GRANT ELEMENT</li> <li>● GRANT LIKE FLOW</li> <li>● IMPUTED MULTILATERA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조활동</li> <li>● 원금상환 / 소각</li> <li>● 제휴금융</li> <li>● 양자적</li> <li>● 청구(권)</li> <li>● 공약(公約)</li> <li>● 양허수준</li> <li>● 불변가격</li> <li>● 국별계획원조</li>   <li>● 신용보고체계</li>   <li>● 신용 / 여신 / 채권</li> <li>● 개발원조위원회</li>   <li>● 개발원조위원회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명단</li>   <li>● 채무조정 / 부채조정</li> <li>● 수치조정지수</li> <li>● 상환</li> <li>● 평가</li> <li>● 수출신용 / 수출차관 / 수출용자</li> <li>● 유예기간</li> <li>● 공여</li> <li>● 공여조건</li> <li>● 대위성 공여</li> <li>● 매개된 다자적 공여</li> </ul>

영 어	한 글
<p> <b>FLAWS</b>            ● <b>LOANS (ALSO CREDITS)</b>            ● <b>LONG TERM</b>            ● <b>MATURITY</b>            ● <b>MULTILATERAL AGENCIES</b>            ● <b>MULTILATERAL OUTFLOWS</b>            ● <b>NET FLOW</b>            ● <b>NET TRANSFER</b>            ● <b>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b>            ● <b>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b>            ● <b>OFFSHORE BANKING CENTRES</b>            ● <b>OTHER OFFICIAL FLOWS (OOF)</b>            ● <b>PARTIALLY UNTIED AID</b>            ● <b>PRIVATE FLOWS</b>            ● <b>PURPOSE OF AID</b>            ● <b>PURPOSE CODE</b>            ● <b>SECTOR ALLOCABLE AID</b>            ● <b>SECTOR CLASSIFICATION</b>            ● <b>SHORT TERM</b>            ● <b>TECHNICAL CO-OPERATION</b>            ● <b>TERMS OF REPAYMENT</b>            ● <b>TIED AID</b>            ● <b>TOTAL RECEIPTS</b>            ● <b>UNDISBURSED</b>            ● <b>UNTIED AID</b>            ● <b>VOLUME (REAL TERMS)</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 / 융자 / 차관</li> <li>● 장기</li> <li>● 만기</li> <li>● 다자적 기관</li> <li>● 다자적 공여</li> <li>● 순(純)공여(량)</li> <li>● 순(純)이전(량)</li> <li>● 공적개발원조</li>   <li>● 공적개발금융</li>   <li>● 역외금융센터</li>   <li>● 기타 공적공여</li>   <li>●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li> <li>● 민간공여</li> <li>● 원조목적</li> <li>● 원조목적분류번호</li> <li>● 부문별 할당가능 원조</li> <li>● 부문 분류</li> <li>● 단기</li> <li>● 기술협력</li> <li>● 상환조건</li> <li>● 구속성 원조</li> <li>● 수혜총량</li> <li>● 미지급(공여)</li> <li>● 비구속성 원조</li> <li>● 공여규모(실질기준)</li> </ul>

##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 (영한대역)

**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02),**  
including its Amendment (2003)

**연방개발협력법 (2002),**  
개정 (2003) 포함

### Part 1

#### Definitions and principles

##### Section 1.

(1)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it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shall perform development cooperation.

(2) Development policy shall comprise any measure by the Federal Government that aims at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or preventing any impairment to such a development. In particular, it comprises development cooperation.

(3) Austria's development policy shall primarily pursue the following objectives:

1. combating povert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by 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at is aimed at a process of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and economic growth combined with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social change;
2. ensuring peace and human security, especially by promoting

### 제 I 부

#### 정의 및 원칙

##### 제 1 조

(1) 연방정부는 국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개발협력을 수행한다.

(2) 개발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개발에 대한 여하한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여하한 조치로 구성된다. 특히 개발정책은 개발협력을 포함한다.

(3) 오스트리아의 개발정책은 다음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1. 구조적, 제도적 및 사회적 변화와 결합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과 경제성장의 과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개발의 증진에 의한 개발도상국 내 빈곤 퇴치
2. 특히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및 선치의 증진에 의한 평

democracy, rule of law,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as well as

- 3.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protecting natural resources that form the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 Austria's development policy is primarily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Any measure adopted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 1. the aims of the respective governments and population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speed and kind of development process in question and their right to choose their own way of development;
- 2. the integration of measures into the social environment, with specific regard being paid to cultural aspects and use of appropriate technology,
- 3.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as well as,
- 4. in a suitable manner, the needs of children and of people with disabilities.

(5)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fields of policy it pursues that may have effects on developing countrie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development policy.

**Section 2.**

(1) Development cooperation as defined by this Federal Act comprises any measure taken by the Federal Government that is part of Official

화와 인간안보의 보장

- 3.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초를 형성하는 환경의 보전과 천연자원의 보호

(4)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원칙들에 기반하며, 채택되는 여하한 조치는 다음을 고려한다.

- 1. 해당 개발과정의 속도와 종류 및 자신의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관련국 정부와 주민의 목적
- 2. 특히 문화적 측면과 적절한 기술의 사용에 대한 고려에 따른, 조치들의 사회적 환경에의 통합
- 3. 남녀평등
- 4. 적절한 방법으로, 아동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

(5) 연방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분야에서 개발정책의 목적과 원칙을 고려한다.

**제 2 조**

(1) 이 법이 정하는 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를 맡는 정부가 취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에 보고되는 여하한 조치로 구성된다. 이 조치는 오

Development Assistance and reported to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se measures may be carried out by the ADA (Section 6)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 (2) Measures according to Subsection 1 in particular include
- a. projects implem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 b. promotion, by means of grants in the form of contributions in kind and financial contributions or concessional loans, of projects implemented by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that comply with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tion 1, Subsections 3 and 4.
- (3) Projects according to Subsection 2 in particular include
- a)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of defined kinds and dimensions in developing countries;
  - b) education and training of, as well as assistance to, pers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 c) cultur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ransfer of technology;
  - d) training and employment of development workers and experts;
  - e) consultancy, including drawing up of plans and studies necessary for this purpose;

스트리아개발청(제6조)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사업
  - b. 제1조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 및 원칙을 준수하는 제3조 제2항이 정한 단체가 다양한 형식의 공여 및 재정기여 또는 양여대부의 수단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의 증진
- (3) 제2항에 따른 사업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개발도상국 내 정해진 종류와 범위의 사업 기획과 이행
  - b)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지원
  - c) 문화 및 과학 협력, 정보교환과 기술이전
  - d) 개발근로자 및 전문가의 훈련 및 고용
  - e) 이 목적에 필요한 기획 및 연구의 입안을 포함하는 자문

- f) measures to promote cooperation with private enterprises;
- g) information, education, cultural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on development policy in Austria,
- h) support of a sustainable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developm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of the Austrian development policy as laid down in Section 1 Subsection 3, by using synergies with trade and industry as well as development organisations,
- i)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 f)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조치
- g)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정보, 교육, 문화 및 공공관계
- h) 무역단체와 산업단체 및 개발단체와의 협동에 의거하여 제1조 제3항이 규정한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목적에 따라 개발도상국 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개발의 후원
- i)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에의 참여

**Section 3.**

(1) Developing countries as defined by this Federal Act shall be those countries and regions that are listed in the Appendixes to the Three-Year Programmes on Austria's Development Policy (Section 9). Selection of those countries and regions shall be based on the list of recipients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piled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 Development organisations as defined by this Federal Act shall be non-profit making legal entities under private law if their objectives laid down in their statutes and their actual operations include development cooperation. Other institutions,

**제 3 조**

(1) 이 법이 정한 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제9조)의 부속서에 기재된 국가와 지역으로 한다. 해당 국가와 지역의 선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집계한 개발원조의 수혜국 명단에 근거한다.

(2) 이 법이 정한 바와 같은 개발단체는 그 단체의 정관에 단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운영이 개발협력을 포함할 경우에 사법상 비영리법인격체이다. 다른 기관, 특히 법적으로 승인받은 교회 및 종교단체, 지방정부와 기타 공법상

in particular of the legally recognised churches and religious communities, the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corporations under public law as well as enterprises, if they perform development cooperation as defined by Section 2, Subsection 3, shall be treated as equivalent to development organisations.

기업 및 회사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개발협력을 수행할 경우에는 개발단체에 준하여 취급한다.

**Part II**

**제 II 부**

**Chapter 1**

**제 1 장**

**General provisions**

**일반 규정**

**Section 4.**

**제 4 조**

(1) The Federal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Three-Year Programme (Section 9) may perform development cooperation as defined by Section 2, Subsection 2 either directly, on its own, or in concert with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provided that it is ensured that the contributions made available by the Federal Government are used as defined by this Federal Act.

(1)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가용하는 기여가 이 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이용될 수 있을 경우 3개년 계획(제9조)을 고려하여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개발협력을 직접 또는 다른 국제법 주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When executing development cooperation, the Federal shall primarily use the administration and project implementation capaciti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strengthen the structures of civil society and public structures in these countries. In addition, in providing its contributions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endeavour to call upon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2) 연방정부는 개발협력을 집행하는 때에 개발도상국의 행정 및 사업 시행역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그 결과 해당 국가 내 시민사회의 구조와 공공의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기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발도상국과 제3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은 단체의 역량을 고려하고 제공하는 기여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그 기여가 적절하고 위에 적시된 기여의 목적에 부

Subsection 2 for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provided that, depending on the kinds and dimensions of the contributions made and in consideration of the capaciti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this is appropriate and conducive to meeting the objectives of said contributions.

(3) The conditions under which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 are made shall be laid down in each individual case in the form of either interdepartmental agreements or agreements under private law.

**Section 5.**

(1)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may contract out projects and grant funds - either on initiative by applicants for funds or as a result of invitations to submit applications for funding.

(2)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the policy-issue-related or geographical priorities of the Three-Year Programme, may resort to contracting out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implementing or evaluati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3) Funding based on initiative by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tion 1, Subsections 3 and 4. The applicants for funds shall al-

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일 것을 시행의 목적상 제3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은 단체에게 요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개발협력에 대한 기여의 조건은 기관간협정 또는 사법에 의거한 협정의 형식으로 각 개별 사안별로 규정한다.

**제 5 조**

(1) 연방정부는 개발협력사업 시행의 목적상 기금 신청자의 주도에 의거하거나 또는 기금제공 신청서 제출을 권유한 결과에 의거하여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금을 공여할 수 있다.

(2) 연방정부는 3개년 계획의 정책 현안관련 또는 지리적 우선순위의 맥락에서, 개발협력사업의 준비, 시행 또는 평가를 목적으로 계약에 명시할 수 있다.

(3) 제3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은 단체의 주도에 근거한 기금제공은 제1조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 및 원칙과 일치하도록 한다. 제3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은 단체만이 기금제공 신청 자격을 가진다.

so provide contributions. Only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shall be eligible for application for funding.

(4) The ADA (Section 6) may invite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to submit propos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in the context of the policy-issue-related and geographical priorities of the Three-Year Programme. Invitations to submit such applications for funding shall be made known in an appropriate way.

(4) 오스트리아개발청(제6조)은 제3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은 단체에게 정책현안관련 또는 지리적 우선순위의 맥락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그러한 기금제공 신청서 제출의 권유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지한다.

**Chapter 2**

**Austrian Development Agency  
Limited Company  
(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

**Formation of the ADA**

**Section 6.**

(1) The Austrian Development Agency Limited Company shall be formed under the legal name Austrian Development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A.

(2) The headquarters of the ADA shall be in Vienna; the financial year shall be the calendar year. The ADA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federal coat of arms.

(3) The ADA shall be formed as at 1 January 2004, to the exclusion of Section 2 Subsection 1 of the Act

**제 2 장**

**오스트리아개발청유한회사  
(오스트리아개발청, 개발청)  
개발청의 설립**

**제 6 조**

(1) 오스트리아개발청유한회사는 오스트리아개발청이라는 법정 명칭으로 설립되며, 이하에서는 개발청이라고 한다.

(2) 개발청의 본부는 비엔나에 두며, 회계연도는 서기력을 적용한다. 개발청은 연방국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3) 개발청은 1906년 3월 6일 유한회사법, 즉 제국법률집 RGBI 58/1906의 수정법(유한회사법) 제2

on Limited Companies of 6 March 1906 (Limited Companies Act), Collection of Imperial Acts RGBI. No. 58/1906 as amended. The provisions of the Limited Companies Act shall apply to the ADA as far as this Federal Act does not provide otherwise. The Management of the ADA, without undue delay, shall apply for entry in the commercial register and the competent court shall enter the company in the commercial register. Section 5 Subsection 2 of the Limited Companies Act shall not apply. As far as this Act does not contain the information required in Section 4 of the Limited Companies Act, it shall be included in the memorandum of formation.

(4)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the sole founder and owner of the ADA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including exercising the rights of shareholders and management of share interests, it shall be represent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 sale of shares shall not be admissible.

(5) The memorandum of formation shall be issu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presented when applying for entry in the commercial register of the company. Any necessary modifications of the memorandum shall be made accordingly.

(6) The share capital of the ADA shall be EUR 70 000 and shall be paid up fully after application for entry in the commercial register of

조 제1항을 배제하고 2004년 1월 1일에 설립한다. 이 법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한회사법의 규정은 개발청에 적용된다. 개발청의 관리인은 부당한 지연 없이 상업등기부 등재를 신청하고 관할 법원은 상업등기부에 이 회사를 등재한다. 유한회사법 제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이 유한회사법 제4조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정보는 설립정관에 포함되도록 한다.

(4) 연방정부는 개발청의 유일한 설립자이자 소유자이고, 주주권의 행사와 주식이익의 관리를 포함하여 이 장의 목적상 연방외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표한다. 주식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설립정관은 연방외무장관이 제정하고 이 회사의 상업등기부 등재 신청시 제출한다. 모든 정관 수정은 이를 따른다.

(6) 개발청의 주식납입금은 70,000 유로이고 이 회사의 상업등기부 등재 신청 후 전액 납입되도록 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개발청 자본금으

the company. In addition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contribute to the capital of the ADA the amount of EUR 910 000 in cash.

(7) Any statements, including the memorandum of formation of the ADA, decisions and official confirmations with regard to the ADA shall not require authentication if the seal of office has been affixed.

**Transfer of assets and valuation**

**Section 7.**

(1) Those movable assets that have so far been ow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managed and used principally by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nd which are necessary for fulfilling the functions of the ADA, including any pertinent rights, legal relationships, obligations, accounts receivable and debts, as at 1 January 2004 shall pass into the ownership of the ADA, by universal succession. The universal succession shall be entered in the commercial register. The non-cash capital contribution shall be effected without any increase of the share capital, and the equivalent shall be transferred to an untied capital reserve.

(2) Valuations of the assets transferred shall be entered in the opening balance sheet, which shall be prepar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point of time when this Federal Act has entered into force. The valuations in the opening balance sheet do not have to be linked to acquis-

로 910,000 유로를 현금으로 기여한다.

(7) 개발청 설립정관, 개발청 관련 결정 및 공식 확인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성명은 사무실 직인이 날인된 경우에는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자산의 이전과 평가**

**제 7 조**

(1) 연방정부가 이전까지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연방외무장관이 관리, 사용한 동산 중 개발청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동산은 모든 부속된 권리, 법률관계, 의무, 입금계좌 및 부채를 포함하여 2004년 1월 1일자로 일반승계에 의하여 개발청 소유로 이전된다. 일반승계는 상업등기부에 등재한다. 비금전적 자본 기여는 순자본의 증가 없이 효력을 갖고 그 가액은 조건 없는 자본준비금으로 이전된다.

(2) 이전된 자산의 평가는 공개된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표는 이 법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준비한다. 공개된 대차대조표상 평가는 취득비용 및 생산비용이 연계되지 않아도 된다. 기술장비 및 자산의 평가는 그 물품의 시가를 고려하여 효용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tion cost and cost of production. The valuations of technical equipment and assets shall be effected according to possibilities of utilis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of the art.

(3) The opening balance sheet shall include an appendix which gives a summary of those assets and liabilities that have been transferred from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to the ADA that may be allocated to it in a transparent way and that are regarded as necessary for operation, and which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e positions of creditors and debtors that are transferred. In addition said appendix shall include all and any assets, legal relationships and debits that are transferred from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to the ADA and cannot be seen from the balance sheet. The transfer of assets shall be subject to those provisions of company law that concern the formation of companies with non-cash capital contribution pursuant to Section 6a Subsection 4 of the Limited Companies Act, with the exception of the audit reports of the management and the supervisory board pursuant to Section 25 Subsection 1 of the Company Act of 1965,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98/1965 as amended. The opening balance sheet shall be audited and confirmed by a court-appointed auditor; the audit report shall be regarded as the for-

(3) 공개된 대차대조표는 연방외무부로부터 개발청으로 이전된 자산과 부채의 개요를 담은 부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자산 및 부채는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청에 배정하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부속서는 이전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위의 부속서는 연방외무부로부터 개발청으로 이전되고 대차대조표에서 확인될 수 없는 모든 자산, 법률관계 및 부채를 포함한다. 자산의 이전은 1965년 회사법, 즉 연방법률집 BGBl 98/1965 수정본 제25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인과 운영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예외로 하고 유한회사법 제6a조 제4항 따른 비금전적 기여에 입각한 회사의 설립에 관한 회사법 규정에 따른다. 공개된 대차대조표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사가 감사를 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1965년 회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설립보고서로 본다. 관리인은 상법, 즉 독일법률집 dRGl 1897 219쪽의 수정본 제10조에 따라 공개된 대차대조표와 연례재정보고서를 비너 자이통지에 공개하고, 그 공개가 상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업등기법원에서 확인한다.

mation report pursuant to Section 25 Subsection 2(4) of the Company Act of 1965. The Management shall have published in Wiener Zeitung the opening balance sheet pursuant to Section 10 of the Commercial Code, Collection of German Acts dRGBI. 1897 p. 219 as amended, as well as the annual financial statement, and shall establish confirmation at the commercial register court that publication has been arranged pursuant to Section 277 Subsection 2 of the Commercial Code.

### The functions of the ADA

#### Section 8.

(1) The function of the ADA shall be to prepare and implement measur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being paid to their effective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ADA shall fulfil its functions in coordin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that also undertake development activities. In this context, the ADA shall in particular take over the following tasks:

1. preparation of programmes and projects and conclusion of agreements on measur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Three-Year Programme (Section 23) as well as implementation of said programmes, projects and measures;
2. support of sustainable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devel-

### 개발청의 직무

#### 제 8 조

(1) 개발청의 직무는 개발협력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이며, 개발도상국 내 그 효과성에 특히 주목하여야 한다. 개발청은 개발활동을 하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청은 특히 다음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1. 3개년 계획(제23조)과 위에 적시된 계획, 사업 및 조치의 시행 맥락에서 계획 및 사업의 준비와 개발협력조치에 관한 협정의 체결
2. 오스트리아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 지속가능

- 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utilising Austrian potential;
3.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particular by means of acquisition of international means and cofinancing as well as arranging the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projects of enterprises and development organisations;
  4. support of assignments of Austrian development workers and experts, in particular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5. consultancy to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ith regard to all principal issues and concerns of development policy and cooperation, and in particular the preparation of the Three-Year Programme.
- (2) The ADA shall draw up an annual work programme, including an annual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and forecasts, which has to be approv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he work programme shall implement the current Three-Year Programme within the scope of activities of the ADA and in particular it shall include the focus of activities and objectives of the work of the ADA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resources necessary for this purpose. The ADA shall imple-
- 한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개발의 지원
3. 유럽공동체 및 기타 국제기구의 차원에서, 특히 국제적 수단을 취득하고 기업과 개발단체의 개발사업의 참여를 배치하고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다자적 개발협력사업의 참여
  4. 특히 국제기구 및 조직의 차원에서 오스트리아 개발근로자와 전문가 배치의 지원
  5. 개발정책 및 협력에 관한 모든 주요 현안 및 관심사, 특히 3개년 계획의 준비에 관련된 연방외무장관에 대한 자문
- (2) 개발청은 차기년도 연간예산과 예측치를 포함하여 연간활동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연방외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활동계획은 개발청의 활동 범위 내에서 현행 3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특히 개발청의 활동과 목적의 초점과 이 목적에 필요한 운영상 및 행정상 자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발청은 현행 연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수단에 따른 활동계획을 시행한다. 활동계획의 실질적인 수정은 연방외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고, 또한 연방외무장관은 새

ment the work programme according to the means provided under the current Federal Finance Act. Substantial modifications of the work programme shall require previous approval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ho shall also be entitled to ask for presentation of a new work programme at any time.

**Guidelines for management**

**Section 9.**

- (1) The ADA is a nonprofit company as defined by Section 34 of the Federal Fiscal Cod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I. No. 194/1961 as amended. It is not profit-oriented and shall be manag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econom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2) The ADA shall have the right to carry out any transactions and measures that are deemed to be necessary or useful for fulfilling its tasks. This also applies to the foundation of subsidiaries and acquisition of interests.
- (3) The ADA shall have the right to render services under conditions of competition pursuant to Section 2. Services shall only be rendered under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order to fulfil the functions transferred to the ADA pursuant to Section 8 Subsection 1. Receipts shall only be aimed at as far as they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cost coverage. In the accounting

로운 활동계획의 제시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관리지침**

**제 9 조**

- (1) 개발청은 연방재정법, 즉 연방 법률집 BGBI 194/1961 수정본 제 34조가 정하는 바와 같은 비영리회사이다. 개발청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성, 효율성과 효과성 원칙에 기초하여 경영한다.
- (2) 개발청은 자신의 임무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여하한 거래 및 조치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자회사의 설립과 이익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 (3) 개발청은 제2조에 의한 경쟁조건에 따라 역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역무는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개발청에 이전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쟁조건에 따라서만 수행해야 한다. 수취는 비용준비금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쟁조건에 따라 수행되는 역무와 기타 역무는 개발청의 회계체계 내에서 별도 회계부문에 표시한다.

system of the ADA, services rendered under conditions of competition and other services shall be represented in separate accounting areas.

(4) The first Management that may be appointed after this Act has entered into force but before the ADA has been established, shall draw up a business plan within six months after appointment and submit it to the Supervisory Board for approval. The business plan shall include in particular the business goals aimed at by the ADA, its strategies and organisation as well as plans for the employment of staff and use of physical resources, investments planned and financing, in consideration of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Austrian development policy (Section 1 Subsections 3 and 4).

(5) The Management shall take care that a planning and reporting system be established, which ensures that the Management's legal reporting obligations be fulfilled and which makes it possible to evaluate the measures taken by the ADA with regard to achievement of goals and effectiveness.

(6) The provisions of the Trade Regulation Act of 1994 (TRA of 1994),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94 as amended, shall not apply to the ADA.

(7) The ADA has the right to make use, against payment, of the consultancy services and representation by the Federal Law Office.

(4)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한 후 개발청이 설립되기 전까지 임명될 첫 관리인은 임명 이후 6개월 내에 경영계획을 세우고 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경영계획은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제1조 제3항 및 제4항)을 고려하여, 특히 개발청이 목적으로 삼는 경영목표, 그 전략과 조직뿐 아니라 직원채용계획과 물리적 자원의 활용, 투자계획과 재정운영을 포함한다.

(5) 관리인은 기획 및 보고체계를 수립하는데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인의 보고의무가 이행되고 그 목표와 효과성의 달성에 관하여 개발청이 취한 조치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1994년 무력규제법, 즉 연방법률집 BGBl. 194 개정본 규정은 개발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개발청은 비용을 지급하고 연방법무실의 자문역무와 대리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8) The Federal Computing Centre, upon request and against payment, shall perform tasks on behalf of the ADA. With regard to payment for the services rendered by the Federal Computing Centre, the ADA shall be regarded as a federal office.

(9) In the case of dissolution or termination of the ADA, or lapse of original purpose, the assets of the ADA, as far as they exceed the contribution to the capital effec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noncash capital contribu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nonprofit purposes or charitable purpose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8) 연방전산센터는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고 개발청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방전산센터가 수행하는 역무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개발청은 연방기관으로 간주한다.

(9) 개발청의 해체, 청산 또는 최초 목적 상실시 개발청의 자산은, 연방정부에 의한 유효한 자본 기여와 연방정부의 비금전적 기여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한, 개발협력 분야 내의 비영리적 목적 또는 자선적 목적에만 전적으로 사용한다.

### Financing of the ADA

#### Section 10.

The ADA shall defray its expenses

1. out of contributions provi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s from 1 January 2004 in the form of an annual basic payment to be used for covering the administrative expenses incurred for fulfilling its work programme. In addition to this basic payment, the 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funds earmarked for this purpose in the annual Federal Finance Act, may compensate higher expenses, provided that this is necessary although the ADA has observed the princi-

### 개발청의 재정운영

#### 제 10 조

개발청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개발청의 활동계획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2004년 1월 1일부터 연간기본배정의 형태로 지급하는 기여로부터 나오는 비용. 이 기본지급에 추가하여 연방정부는 연간 연방재정법에서 이 목적을 위해 배정한 기금에 따라 개발청이 경제적, 효율적 및 효과적 경영실천의 원칙을 준수할지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더 높은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ples of economical, efficient and effective business practices;
- 2. out of contributions provi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for carrying out operational measures taken in order to fulfil the work programme, according to the funds earmarked for this purpose in the annual Federal Finance Act;
- 3. out of payments for rendering services for the Federal Government or third parties;
- 4. out of other public or private contributions;
- 5. out of other receipts.

- 2. 연방정부가 연간 연방재정법에서 이 목적으로 배정한 기금에 따라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한 시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공한 기여에서 나오는 비용
- 3. 연방정부 또는 제3자를 위한 역무수행에 대한 지급에서 나오는 비용
- 4. 기타 공적 또는 사적 기여에서 나오는 비용
- 5. 기타 수취에서 나오는 비용

**Management**

**관리인**

**Section 11.**

**제 11 조**

The ADA shall have a general manager. The Management shall be appointed after a public notification of vacancies,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for a maximum period of four year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Staffing Act,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26/1998 as amended.

개발청은 1인의 일반관리인을 둔다. 관리인은 공석이 공식적으로 통지된 후에 연방외무장관이 직원법, 연방법률집 BGBl. 26/1998 개정본 규정에 따라 최대 4년 임기로 임명한다.

**Supervisory Board**

**감독위원회**

**Section 12**

**제 12 조**

(1)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ct, and if possible already before the formation of the ADA, but by 31 January 2004 at the latest, a supervisory board shall be established, which shall consist of 12 members

(1) 이 법이 발효된 후 가급적 개발청의 설립되기 전까지 다만 늦어도 2004년 1월 31일까지 최대 임기가 4년인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독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whose maximum period of office shall be four years.

1. Six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shall be appoint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ho shall appoint one of these members as Chairperson.
  2.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the Federal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the Federal Minister for Social Security, Gener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Federal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and Labour shall each appoint one member of the Supervisory Board.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all appoint one of these members as Vice Chairperson.
  3. One member of the Supervisory Board shall be appointed by the Provincial Governors, through the Liaison Office of the Provinces.
  4. One member shall be nominated by the bodies representing the staff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works constitution.
- (2) The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appointed pursuant to Subsections 1(1) and 1(2) may be dismissed and replaced by other members at any time, by the Federal Minister who has appointed them.
- (3) The members of the Supervisory

1. 감독위원회 위원 6인은 연방 외무장관이 임명하며, 이 중 1인이 의장으로 임명된다.
  2. 연방재무장관, 연방농림수자원 장관, 연방사회복지세대·소비자보호장관, 연방경제노동장관은 각기 1인의 감독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연방외무장관은 이들 중 1인을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3. 연방위원회 위원 1인은 지방주지사들이 지방주연락사무소를 통해 임명한다.
  4. 위원 1인은 노동현장에 따라 설치된, 직원을 대표하는 기관이 지명한다.
-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된 감독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을 임명한 연방외무장관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되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될 수 있다.
- (3) 감독위원회는 자기를 임명하는

Board shall be obliged to furnish comprehensive information to the Federal Minister who has appointed them.

(4) The Supervisory Board shall take decisions by simple majority. In the event of an equality of votes the Chairperson shall have the casting vote.

(5) The Supervisory Board shall in particular be responsible for

1. approval of programmes and projects as far as a decision in this matter does not come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Management;
2. audit of the annual work programme including the annual budget for the previous year and forecasts as well as any substantial modifications of the work programme before approval pursuant to Section 8 Subsection 2;
3. approval of the foundation of subsidiaries and acquisition of interests;
4.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and closure of coordination offices;
5. approval of the business plan pursuant to Section 9 Subsection 4.

연방외무장관에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감독위원회는 단순다수결로 결정한다.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5) 감독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1. 활동 및 사업과 관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안의 결정에 대한 승인
2. 전년도 연간예산 및 예측치를 포함한 연간 활동계획과 제8조 제2항에 의거한 승인을 받기 전의 활동계획의 여하한 실질적 개정에 대한 감사
3. 자회사 설립과 이익 취득의 승인
4. 협력사무소 설치와 폐쇄의 승인
5. 제9조 제4항에 의거한 경영계획의 승인

### Coordination offices

#### Section 13.

(1) In order to perform its functions, the ADA may establish coordination offices in other countries. The estab-

### 협력사무소

#### 제 13 조

(1) 개발청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 협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협력사무소의 설치

lishment and closure of a coordination office shall require previous approval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he coordination offices shall report to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n the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untry where they are situated.

(2) The heads of the coordination offices shall be appoint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fter the corresponding vacancies have been publicly notified by the ADA, for a maximum period of four years. Only persons having several years of qualified professional experience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shall be appointed. A non-recurrent reappointment for a maximum period of four years shall be admissible without giving public notification of vacancies. The pertinent contracts of employment and extension of said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by the Management.

**Employees of the ADA**

**Section 14.**

(1)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all have the right to issue general instructions or individual instructions to the Management and, through the Management, also to the heads of the coordination offices.

(2)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all have the right, for important reasons, to revoke appointments pursuant to Section 11 and

와 폐쇄는 연방외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무소는 자기가 소재한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및 경제적 발전에 관하여 연방외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협력사무소의 장은 개발청이 공식적으로 공석 사실을 통지한 후에 연방외무장관이 최대 임기 4년으로 임명한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수년간 양질의 전문적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임명되어야 한다. 공식적 공석 통지 없이 최대 4년 임기의 비반복적 재임명은 허용된다. 관련 고용계약과 위의 계약 연장은 관리인이 체결한다.

**개발청의 피고용인**

**제 14 조**

(1) 연방외무장관은 관리인에게 그리고 관리인을 통하여 협력사무소의 장에게 일반 지시 또는 개별 지시를 내릴 권리를 가진다.

(2) 연방외무장관은 중요한 사유에 의하여, 특히 제1항에 의거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명을 철

Section 13 Subsection 2,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an instruction pursuant to Subsection 1 has not been followed.

(3) In performing their tasks, the employees of the ADA shall be obliged to observe secrecy about any facts which have come to their knowledge only through their work. The provisions of Section 46 Subsections 1 to 4 of the Act on Employment of Civil Servants of 1979 (ECS of 1979),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333 as amended,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4) The Works Constitution Act,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22/1974 as amended, shall apply to all employees of the ADA. The ADA shall be regarded as an enterprise according to Section 34 of the Works Constitution Act.

회할 권리를 가진다.

(3) 개발청의 피고용인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근무를 통해서 알게 된 여하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1979년 일반공무원고용법, 즉 연방법률집 BGBl. 333 개정본의 제46조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4) 노동헌장법, 즉 연방법률집 BGBl. 22/1974 개정본은 모든 개발청 피고용인에게 적용된다. 개발청은 노동헌장법 제34조에 따라 기업으로 간주한다.

**Transfer of civil servants**

**일반공무원의 전직**

**Section 15.**

**제 15 조**

(1) Civil servants (Section 1 Subsection 1 of the ECS of 1979) who by 31 December 2003 have, at least primarily, performed tasks that are transferred to the ADA, as from 1 January 2004 shall be assigned to the ADA for permanent service, for the duration of their period of active service, as long as they are not assigned for permanent service to another office of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r another company in which the ADA has at least

(1)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발청으로 이전된 직무를 최소한 주되게 수행한 일반공무원 (1979년 일반공무원고용법 제1조 제1항)은 그들이 상시복무를 위해 다른 연방외무부 사무소 또는 개발청이 최소한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 (제2항)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복무시의 기간 동안 상시복무를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청에 배치된다.

a majority interest (Subsection 2).

(2) It shall be admissible to assign civil servants transferred to the ADA pursuant to Subsection 1 to a legal successor of the ADA or a company in which it holds at least a majority interest.

(3) The Manage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supervision as well as for exercising the pertinent right to issue instructions to civil servants assigned to the ADA. When performing this function, the Management shall be bound by instructions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4) Civil servants pursuant to Section 1, if they declare their withdrawal from federal civil service within a period of five years after this Federal Act has entered into force, shall have the right to be employed by the ADA or a company in which the ADA has at least a majority interest. Said employment shall be effective as from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withdrawal from civil service and under the conditions for newly employed persons effective at that point in time. The time of service as a federal civil servant shall be credited by the ADA, or the company employing the civil servant, with regard to all and any claims related to duration of employment. In the case of civil servants employed by the ADA or a company in which the ADA at least has a majority interest, the provisions of

(2) 제1항에 의거하여 개발청으로 전직한 일반공무원을 개발청 또는 개발청이 최소한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법적 승계자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3) 관리인은 관리감독과 개발청에 배치된 일반공무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부속된 권리를 행사하는 책임이 있다. 관리인은 이 직무의 수행시에 연방외무장관의 지시에 기속된다.

(4) 제1항에 의거한 일반공무원은 이 법이 발효된 후 5년의 기간 내에 연방일반공직의 퇴직을 선언하는 경우에 개발청 또는 개발청이 최소한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고용될 권리를 가진다. 위의 고용은 일반공직을 퇴직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그 시점에서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하여 유효한 조건하에 효력을 가진다. 연방일반공무원으로서 복무시점은, 고용기간 관련 모든 또한 여하한 청구와 관련하여, 개발청 또는 일반공무원을 고용한 회사가 인증한다. 개발청 또는 개발청이 최소한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고용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당해 사람이 연방정부와 계약관계를 포기하는 일반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준용한다.

Section 16 Subsection 3, second and third claus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a way as if the persons in question were civil servants withdrawing from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Federal Government.

(5) The ADA shall compensate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e complete employment-related expenditure for civil servants pursuant to Subsection 1, including attendant expenses as well as a contribution for covering pension cost (covering contribution). This contribution shall amount to 31.8 percent of the expenses for employment earnings. Employment earnings shall be all and any money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pension contributions. With the exception of special pension contributions, pension contributions that are directly deducted from the earnings of civil servants shall be credited. In the event of future changes of the level of the pension contributions of civil servants pursuant to Section 22 of the Salaries Act of 1956,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54 as amended, the percentage of the covering contribution shall be changed to the same extent. Any special pension contributions paid to the companies as well as any payments effected after this Act has entered into force shall be transferred to the Federal Government immediately and to the full amount. Any other payments to the Federal Government

(5) 개발청은 부수비용과 연금비용을 포괄하는 기여 (포괄기여)를 포함하여 제1항에 의거한 일반공무원에 대한 모든 고용관련 지출을 연방정부에게 보상한다. 이 기여는 고용수입을 위한 비용의 31.8%에 달해야 한다. 고용수입은 연금기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그리고 여하한 금전지출이다. 특별연금기여를 제외하고 일반공무원의 수입에서 직접 공제되는 연금기여는 대변에 계상한다. 1956년 급여법, 즉 연방법률집 BGBl. 54 개정본 제22조에 의거한 일반공무원의 연금기여 수준의 변경시 포괄기여의 백분율은 동일한 범위에서 변경된다. 이 법이 발효된 후 유효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여하한 특별 연금 기여와 여하한 지출은 즉시 그리고 전액으로 연방정부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연방정부에 대한 여하한 기타 지출은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shall be due on the tenth day of the month in question.

(6)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450/1994 as amended, shall apply to civil servants assigned to the ADA for permanent service.

(6) 고용보호법, 즉 연방법률집 BGBl. 450/1994 개정본은 상시복무를 위해 개발청에 배치된 일반공무원에게 적용한다.

**Transfer of contractual public servants**

**계약직선임공무원의 전직**

**Section 16.**

**제 16 조**

(1) Contractual public servants of the Federal Government who by 31 December 2003 have, at least primarily, performed tasks that are transferred to the ADA shall be allocated to the ADA for permanent service by means of an employer's declaration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hat shall be made by 31 March 2004 at the latest. As from the point in time when the employer's declaration comes into effect, they shall be employees of the ADA. The ADA shall take ov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e Federal Government has had to observe with regard to these contractual public servants.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최소 주되게 개발청에 이관되는 임무를 수행한 연방정부의 계약직선임공무원은 늦어도 연방외무장관에 의해 2004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할 고용인의 선언에 따라 상시복무를 위하여 개발청에 배정된다. 고용인의 선언이 효력을 갖게 될 시점부터 그들은 개발청의 피고용인이 된다. 개발청은 연방정부가 계약직선임공무원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는다.

(2) The provisions of the employment and remuneration law, in particular the Act on Contractual Public Servants of 1948,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86 as amended, shall continue to apply to employees pursuant to Subsection 1. It shall no longer be admissible to conclude specific contracts pursuant to Section 36 of the Act on

(2) 고용 및 보수법, 특히 1948년 계약직선임공무원법, 즉 연방법률집 BGBl. 86 개정본의 규정은 제1항에 의거한 피고용인에게 계속해서 적용한다. 계약직선임공무원법 제36조에 의거한 특별계약의 체결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제1항에 의거한 피고용인은, 고용이전과 별개인 개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즉시 그들에게 계속 적용

Contractual Public Servants.  
Employees pursuant to Subsection 1, if they state that they are willing to withdraw from transferred employment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at continue to apply in their case immediately after coming into effect of an individual contract differing from the transferred employment, shall have the right to enter simultaneously into an employment contract according to the legal provisions applying to newly employed persons. Within two years as from the formation of the ADA, any termination of employment for one of the reasons given in Section 32 Subsection 4 of the Act on Contractual Public Servants shall not be admissible.

(3) If employees pursuant to Subsection 1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legal provisions effective for newly employed persons, they shall not be entitled to severance payments resulting from their withdrawal. Any rights to future severance payments acquired in the time of employmen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personnel providence insurance fund for the employees in question and take effect as from the time of entry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ADA according to the legal provisions applicable to newly employed persons. In the case of such transfers, the provisions of Section 47 Subsection 3 of the Federal Act on Personnel Providence

되는 규율에 따라 고용이전을 포기하는 경우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따라 동시에 고용계약에 들어갈 권리를 가진다. 계약직선임공무원법 제32조 제4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의거한 여하한 고용종료는 개발청 설립 후 2년 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제1항에 의거한 피고용인이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유효한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으로부터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연방정부에 고용될 시점에 부여받은 추후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는 해당 피고용인을 위한 개인보장보험으로 이전되고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따라 개발청과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와 같은 이전의 경우 연방개인보장보험법, 즉 연방법률집 BGBI.

100/2002 제47조 제3항의 규정이 다음을 조건으로 적용되는데, 제1항에 따른 개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야 하고, 또한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효력을 갖는 급여가 계약직일반공무원법, 즉 연방법률집 BGBI. 86 개정본 제35조

Insurance (PPI),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00/2002, shall apply provided that no individual contracts according to Subsection 1 have been concluded and that the payment to be effec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pursuant to Subsection 2 shall be transferred to the competent personnel providence insurance fund by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n the amount that corresponds to 50 percent of the severance payment calculated pursuant to Section 35 Subsection 4 of the Act on Contractual Civil Servants of 1948,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86 as amended, and to receipt of which the contractual public servant withdrawing from employment is not entitled as a result of a transfer to employment with the ADA. The time of employment in a previous service relationship with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credited by the ADA with regard to all and any claims related to duration of employment.

(4) Any rights to future severance payments and anniversary bonuses for employees pursuant to Subsection 1 shall be taken over by the company.

**Provisions applicable to public servants who become employees of the company**

**Section 17.**

(1)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제5항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퇴직급여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그리고 개발청의 고용으로 이전되는 결과로서 고용을 종료하는 계약직 선임공무원이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수령액에 따라 연방외무부에 의하여 적절한 개인보장보험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연방정부와의 이전 역무관계에서의 고용기간은 고용지속과 관련된 모든 그리고 여하한 청구와 관련하여 개발청이 인정한다.

(4) 제1항에 의거한 피고용인을 위한 향후 퇴직급여 및 연례 상여금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인수한다.

**회사의 피고용인이 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제 17 조**

(1) 연방정부는 제15조 제4항 또는

assume contingent liability (Section 1356 of the General Civil Code) with regard to meeting remuneration claims of public servants who become employees of the company pursuant to Section 15 Subsection 4 or Section 16 Subsection 1. This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which, on the day before the public servant in question has withdrawn from federal civil service, results from the position relevant for this public servant in terms of remun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function performed at that point in time, as well as the years in service and the regular salary increases as provided for.

(2) Claims the Federal Government has made against public servants pursuant to Section 15 Subsection 4 and Section 16 Subsection 1 shall be transferred to the company upon commencement of the employment, and, upon settlement of the claim,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reimbursed by the company without undue delay.

(3) With regard to obligatory or voluntary use of flats provided by the employer, employees pursuant to Section 15 Subsection 4 and Section 16 Subsection 1 shall be treated as if they were federal civil servants. Such use of a flat shall not establish an accommodation right with regard to the flat in question, and the provisions of Section 80 of the ECS of 1979 and Sections 24a to 24c of the Salaries Act of 1956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사의 피고용인이 된 선임공무원의 보수 청구에 응하는 것과 관련된 부수적 책임 (일반민법 제1356조)을 진다. 이 책임은 해당 선임공무원이 연방 일반공무원으로부터 퇴직하기 전날 당시 시점에 수행하던 직무와 역무기간 그리고 제공된 정기급여 증가분을 고려하여 보수에 관한 공무원 관련 직위로부터 나오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2) 연방정부가 제15조 제4항과 제16조 제1항에 의거한, 선임공무원에 대한 청구는 고용이 개시될 때에 회사에 이전되고, 청구가 해결되는 때에 연방정부는 부당한 지연 없이 회사에 의해 상환되어야 한다.

(3) 고용인이 제공하는 주거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 사용에 관하여는 피고용인들을 연방일반공무원으로 간주하고 대우한다. 그와 같은 주거의 사용은 해당 주거에 관한 숙박의 권리를 확립시키지 않으며, 1979년 일반공무원고용법 제80조와 1956년 급여법 제24a조 내지 24c조의 규정이 계속 준용된다. 1979년 일반공무원고용법 제80조에서 정한 고용인의 권리는 연방외무장관이 행사한다.

shall continue to apply mutatis mutandis. The rights of the employer as defined in Section 80 of the ECS of 1979 shall be exercis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4) Employees of the ADA who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treated as if their previous employment with the ADA had been a civil service employmen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4) 연방정부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개발청의 피고용인은 그들에 대한 개발청에 의한 이전 고용이 연방정부에 의한 일반공무원 고용인 것과 같이 취급한다.

**Equal treatment**

**평등대우**

**Section 18.**

**제 18 조**

The Federal Act on Equal Treatment (AET),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00/1993 as amended, with the exception of Chapters 4 and 5 of Part III, Part V and Section 50, shall apply to employees with the ADA, civil servants assigned to the ADA for permanent service pursuant to Section 15 Subsection 1 as well as persons applying for employment with the ADA, provided that the company is regarded as an office and central office pursuant to Section 2 Subsections 1 and 2 of the AET.

연방평등대우법, 즉 연방법률집 BGBl. 100/1993 개정본은, 제3부의 제4장과 제5장, 제5부 및 제50조를 제외하고, 개발청의 피고용인,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상시복무를 위해 개발청에 배치된 일반공무원 및 개발청에의 고용에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회사가 연방평등대우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사무소 또는 본사무소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Leave of absence**

**휴 가**

**Section 19.**

**Section 19.**

(1) Federal civil servants who enter into fixed-term employment with the ADA in a management position or position as head of a coordination

(1) 관리인 직책 또는 협력사무소의 장의 직책에서 개발청과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연방일반공무원은 이 고용기간 동안 무급휴

office shall be granted unpaid leave of absence for the term of this employment.

(2) Any leave of absence pursuant to Subsection 1 shall not exceed a total period of 12 years.

가를 보장받는다.

(2) 제1항에 의거한 여하한 무급휴가는 총 1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Chapter 3**

**Funding**

**Section 20.**

(1) Applications for funding shall be submitted to the ADA (Section 6) and shall include any documents necessary. Applicants shall not have a right to funding. The ADA shall examine applications for funding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Three-Year Programme (Section 23). If funding is granted by the ADA, the latter shall conclude a funding agreement with the applicant for funds.

(2) The funding agreement shall include the conditions,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which in particular serve the purpose of meeting the objectives of this Federal Act and shall oblige the applicant funds

1. to use the fund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conomy, and effectiveness and in line with the agreement;
2. to keep the necessary records and preserve vouchers so that use of the funds in line with the agreement may be verified

**제 3 장**

**기금제공**

**제 20 조**

(1) 기금지원 신청은 개발청 (제6조)에 제출되어야 하고 여하한 필요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기금지원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아니 한다. 개발청은 적용할 수 있는 이 법의 규정과 3개년계획 (제23조)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발청이 기금지원을 제공할 경우에 기금신청자와 기금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2) 기금지원 협정은 특히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조건, 의무 및 제한을 포함하고 또한 신청자가 기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성 및 효과성 원칙에 부합하고 협정에 따른 기금 사용
2. 협정에 따른 기금 사용이 감사에 의해 검증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록물의 보관과 증거물의 보존

- by means of auditing;
3. to report immediately any occurrence that might delay or make impossibl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receiving funds;
  4. to draw up a schedule for project implementation;
  5. to submit interim reports if the project covers a longer period of time;
  6. to submit a report immediately after conclusion of the project, including in particular an overview of measures taken and results achieved as well as figures accounting for the use of the funds obtained and also earnings and expenses in connection with said project;
  7. to permit inspection of those books, vouchers and other documents that serve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o permit inspections in situ and to provide any necessary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 (3) The funding agreement shall also include provisions stipulating an immediate cessation of funding and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recipient of funds to pay back the contribution granted or its equivalent - plus, in the case of fault, an interest of three percentage points above the base interest rate as from the day of disbursement, in particular
1. if the recipient of funds has incorrectly informed bodies or
3. 기금을 받는 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여하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 보고
  4. 사업 시행 일정표의 작성
  5. 사업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중간보고서의 제출
  6. 사업협정의 체결 직후 특히 취한 조치와 달성한 결과의 개관 및 취득한 기금의 사용을 보여주는 수치와 위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을 포함하는 보고서의 제출
  7. 사업 시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서적, 증거물 및 기타 문서 감찰의 허용, 현장 감찰의 허용 및 사업과 연관된 여하한 필요 정보의 제공
- (3) 기금지원 협정은 또한 즉각적인 기금지원 중단 및 공여된 기여 혹은 그 상당분에 대한 기금수령자의 반납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과실이 있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상환일부더 기본이율의 3% 이자가 포함된다.
1. 기금의 수령인이 개발청 또는 유럽공동체의 기관 또는 대표

- representatives of the ADA or the European Community on conditions relevant for granting funds;
2. in the case of a serious violation of the funding agreement;
  3. if the project cannot be implemented. However, if the project has become inexecutable without fault on the part of the recipient of funds after implementation has been started, only those funds that have not yet been spent shall be paid back, or, on approval of the ADA, earmarked for other projects;
  4. if bod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demand a return of funds because said funding violates Community regulations;
- (4) Funding that has been promised shall not be disposed of in a legally effective way by means of assignment, transfer or pledge or in any other way.
- (5) When funds are handled by organisations or bodies of international law or applicants for funds from a developing country, the regulations of this Section shall generally apply. Notwithstanding, in individual cases it may be agreed that internal regulations of the organisations and bodi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apply. Also, in well-founded individual cases, deviations from individual regulat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admissible if the applicant for funds is a resident of a developing country.
- 에게 기금 공여 관련 조건을 잘못 고지한 경우
2. 기금지원 협정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시행이 시작된 후 수령인 측의 과실이 없이 사업이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출되지 아니 한 기금에 한해 반납되거나 또는 개발청의 승인 하에 다른 사업에 배정되어야 한다.
  4. 유럽공동체 기관이 위의 기금지원이 공동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4) 약속한 기금지원은 배정, 이전 또는 서약의 방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또는 여하한 기타 방식으로 처분되지 아니 한다.
- (5) 국제법에 의한 기구 또는 기관이나 개발도상국의 기금신청자가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서 국제법에 의한 기구와 기관의 내부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또한 잘 확립된 개별 사안에서는 기금 신청자가 개발도상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 조의 개별적 규율로부터 이탈이 허용된다.

**Part III**

**Consultancy and coordination**

**Section 21.**

(1) In order to advise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ith regard to any of his competencie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policy, a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at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n accordance with Section 8 of the Federal Ministries Act of 1986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76 as amended, to act as an Advisory Board on Development Poli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visory Board).

(2) The Advisory Board shall be composed of experts in the fields of development policy or development cooperation, respectively, who shall be nominat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3) The Advisory Board shall adopt rules of procedure and shall convene at least twice a year.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all act as a chairperson and nominate a senior official of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to act as an executive deputy who shall head and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the Advisory Board.

**Section 22.**

Any contribution that is provi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reported to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제 III 부**

**자문 및 협력**

**제 21 조**

(1) 연방외무장관에게 개발정책 분야에서 그의 권한에 관한 조언을 하기 위하여 연방법률집 BGBI. 76 수정본에 공포된 1986년 연방조직법 제8조에 따라 개발정책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방외무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자문위원회는 연방외무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개발정책 또는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3) 자문위원회는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1년에 최소 2회 소집한다. 연방외무장관은 의장으로 활동하며 연방외무부의 고위공무원을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이끌고 조정하도록 한다.

**제 22 조**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보고하는 공적개발원조에 해당하는 여하한 기여는 개발정책 (제1조 제3항 및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at is par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hall be in line with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development policy (Section 1, Subsections 3 and 4) an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s Development Polic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all ensure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both in Austria and with regard to Art. 180 EC Treaty.

제4항)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오스트리아의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에 일치하여야 한다. 연방외무장관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그리고 유럽공동체조약 제180조와 관련하여 국제개발정책의 협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Part IV**

**제 IV 부**

**Planning and financing**

**기획 및 재정**

**Section 23.**

**제 23 조**

For longer-term planning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cting in consent with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shall draw up a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s development policy, and after the ADA (Section 6) and the Advisory Board (Section 21) have been heard, annually submit this programme to the Federal Government and communicate it to the Nationalrat of the Austrian Parliament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The programme shall include any contribution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erformed by the Federal Government (Section 2, Subsection 1), the prioriti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연방외무장관은 장기 기획을 위하여 연방재무장관의 동의 하에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청 (제6조)과 자문위원회 (제21조)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 계획을 연방정부에 매년 제출하고 정보 제공의 목적상 오스트리아 의회인 나치오날라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 (제2조 제1항)가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여하한 기여, 개발협력의 우선순위와 각 사안에서 필요한 기금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유럽연합의 개발협력과 관련 국제기구 및 재무기구에 참여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하여야 한다.

funding necessary in each case. In addition it shall lay down the guideline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Part V**

**Concluding provisions**

**Section 24.**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an individual project, in those cases where consent of the Ministry of Finance shall be obtained according to the Budget Act of 1986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213 as amended, the necessary personal data may be communicated to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

(2) For the purpose of auditing of the accounting and settlement practices with regard to expenditure and revenu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is Federal Ac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urt of Audit Act of 1948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44 as amended, personal data may be communicated to the Court of Audit as far as this is necessary for pursuing the relevant auditing activities.

(3) In cases of joint funding (co-financing) personal data may also be

**제 V 부**

**최종규정**

**제 24 조**

(1) 연방법률집 BGBl. 213 개정본에서 공포된 1986년 예산법에 따라 연방재무부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 시행의 목적상 필요한 개인정보가 연방재무부에 통지될 수 있다.

(2) 연방법률집 BGBl. 144 개정본에서 공포된 1948년 감사법원법의 규정 하에서, 이 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출과 세입에 관한 회계 및 분쟁해결실행의 감사의 목적상 개인적 정보는 관련 감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감사법원에 통지될 수 있다.

(3) 또한 합동기금지원(공동재정지원)의 경우 공동재정지원이 근거하

communicated to the co-financing partner as far as this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executing the auditing rights of the co-financing partner included in the agreements on which co-financing is based.

(4) In the same way personal data concerning funding or contracting relations, to the extent necessary, may be communicated to institutions that shall take part in the preparation, implementation or evaluation of the project in question.

(5) Admissibility with regard to communication of personal data for other purposes, in particular in the context of public relations or information activities, is subject to the regulations of the Data Protection Act of 2000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65 as amended.

(6) The activities of the ADA pursuant to Part II Chapter 2 shall be regarded as public services as defined by Section 5 Subsections 1 and 2 of the Data Protection Act of 2000. Use of data by the ADA as a service provider shall be bound by instructions issu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 **Section 25.**

Article 34 of the Act Accompanying the Budget of 2001,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42/2000, shall apply.

#### **Section 26.**

In this Federal Act any terms relating to persons equally refer both to

는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재무 지원협력자의 감사권을 행사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수적인 한도 내에서 개인적 정보가 공동재정지원 협력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4) 동일한 방식으로 기금지원 또는 계약관계에 관한 개인적 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준비, 시행 또는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는 기구에 통지될 수 있다.

(5) 기타 목적상, 특히 공적 관계 또는 정보활동의 차원에서 개인적 정보의 통지에 관한 허용 여부는 연방법률집 BGBl. 165 개정본에 공포된 2000년 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는다.

(6) 제II부 제2장에 의거한 개발청의 활동은 2000년 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적 의무로 간주된다. 의무 제공자로서 개발청의 정보 사용은 연방외무장관이 발하는 지시에 기속된다.

#### **제 25 조**

2001년 예산집행법, 즉 연방법률집 BGBl. 142/2000 제34조가 적용된다.

#### **제 26 조**

이 법에서 개인에 관한 여하한 용어는 해당 주제의 차원에서 관련된

women and men, provided that this is relevant in the context of the subject matter in question.

**Section 27.**

The Development Aid Act of 1974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474 and as amended in BGBl. No. 579/1989 shall be invalidated.

**Section 28.**

Responsibility for enforcing this Federal Act shall rest with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ho shall act in consent with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as far as Section 23 is concerned.

Responsibility for enforcing Section 7 Subsection 1 shall rest with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Responsibility for enforcing Section 1, Section 12 Subsections 1 to 3 and Section 22 shall rest with the competent Federal Ministers. In other respects, this Act shall not affect any competences of other Federal Ministers in matters that may also constitut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compete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다는 것을 조건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 27 조**

연방법률집 BGBl. 474 및 BGBl. 579/1989 개정본에 공포된 1974년 개발원조법은 효력이 없다.

**제 28 조**

이 법을 집행할 책임은 연방외무장관에게 있으며, 제23조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연방재무장관의 동의 하에 행동해야 한다. 제7조 제1항을 집행하는 책임은 연방재무장관에게 있다. 제1조,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22조를 집행할 책임은 관계연방장관에게 있다. 다른 차원에서 이 법은 연방외무장관의 개발협력과 국제적 개발정책의 조정 권한을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개발정책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기타 연방장관의 여하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0. 7.26] [법률 제9938호, 2010. 1.25, 제정]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

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 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

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제 6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제1호의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

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시달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3.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간 사업 중복 등으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

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① 시행기관은 매년 전년도에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작성·분석·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간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위원회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9993호, 2010. 2. 4, 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 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또는 복구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4 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적절한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구호물품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6 조(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 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3.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4.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 7 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 8 조(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종류·규모·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와의 협조방안 등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

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2.4>

③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해외 긴급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③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해외긴급구호본부)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된다.

③ 구호본부의 장은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거하고 해외재난의 성격 및 피해규모와 정도를 감안하여 제 5 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④ 구호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
2.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제구조대
3.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6.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 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9993호,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2007.3.29 법률 제8316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라 함은 국민소득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개정 1999.1.21>

제 3 조 (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5.24>

제 4 조 (설립) ①협력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 6 조 (정관) ①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②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제 7 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연수생의 초청
  - 나. 전문인력의 파견
  -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 라. 개발조사
  - 마. 재난구호
  -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 나. 외국의 원조관련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 및 그 밖의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01.5.24]

제 8 조 (임원) ①협력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9.1.21>

②총재 및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③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④이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⑤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⑥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삭제<1999.1.21>

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④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제12조 (이사회) ①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99.1.21>

③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임면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①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재원) 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유효기간 2012.9.30]

제16조 (출연금) ①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계리(계리)하여야 한다.

- ④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⑤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 ⑥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9]

[유효기간 2012.9.30]

- 제19조 (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③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25조 (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6조 (비밀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 (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5.12.6]

제31조 (과태료) ①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32조 삭제 <2001.5.24>

부칙 <제4313호,1991.1.14>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협력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비용) 협력단의 설립비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 4 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제 5 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6 조 (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외무부·건설부·노동부·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3.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②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7 조 (예산의 이체)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 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

제 8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력단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 해외개발공사법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85호,1995.1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638호,1999.1.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 “개발도상국가”라 함은,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부칙 <제6475호,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5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7>생략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과산자”를 “과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316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5조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발표자 : 박 병 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개 요

◇ 20세기 이후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개발 원조의 역사는 주로 2차 대전 후의 냉전 체제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리 잡고 있다. 1947년 트루먼 정부 당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이 대외원조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직후 유럽 재건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미국의 대서방 세계에 대한 지도자적 위치 획득이라는 정치적 이익이 맞물려 도출된 결과라 할 수 있는 Marshall Plan (1947-1951)이 개발 원조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한 직접적인 시초라고 평가된다.

◇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가장 큰 규모의 공여국이며, 선도적인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OECD와 DAC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다국간(multilateral) 개발 기구(예, IBRD, IDA, UNIDO, UNDP 등)를 설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아직도 많은 곳에 큰 규모로 금전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 1961년 집행기구였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OECD로 개편되고 개발원조그룹(DAG)이 OECD 산하의 DAC) 전환됨에 따라 선진국의 개발 원조 노력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OECD/DAC는 개발 원조분야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의의 핵심 역할이라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DAC 회원국들로부터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현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기관의 각종 문서에 기초하여 작성될 것이다.

◇ 각국의 대외원조정책은 해당 국가가 처한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선진 공여국들의 공통적 관행 중 상당 부분은 DAC의 권고사항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에서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ODA 모델'을 만들어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토대적 연구로서 미국의 ODA 정책 및 평가체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가치가 있다.

◇ 2009년 11월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한국 정부는 DAC 규범과 기준에 맞는 법제의 마련과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데, 미국의 ODA 관련 법제와 정책의 실행 경험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한국의 ODA 정책방향과 시행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 II. 미국의 ODA 현황

### 1. ODA

◇ 주요 국가의 ODA정책의 유형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현실주의-국가안보 또는 경제적 실익 등 국익을 중시한다.

이상주의-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해소 등과 같은 인도주의를 중시한다.

◇ 미국의 ODA정책은 그 규모와 기여도는 크지만 외교 및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안보 차원의 국익실현 이외에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ODA를 활용하기도 한다.

- 실제 2007년 미국의 ODA 지원 대상국 중 미군 주둔지역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원액이 각각 37억5천만 달러와 15

억1천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했다. 이는 과거 냉전 시절 미·소 대결구도라는 세계질서 속에서 원조 정책을 자국의 세력 확보와 소련의 팽창 저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한 역사적 배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 미 의회 산하 해외원조특별위원회(HELP)의 자체 평가에서도 미국의 해외 원조는 지나치게 정치·안보적 목적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미국은 저개발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밀레니엄챌린지펀드’라는 독자적 정치발전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미국의 세계 전략에 활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냉랭한 평가를 받고 있다.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통한 교육과 보건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은 수원국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2. ODA

◇ DAC회원국들의 ODA 실시체제는 각 나라마다 조직 및 운영 면에서 상이하다. 원조이념 및 철학, 역사, 조직 및 정책적 특성상 다양한 운영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DAC 회원국은 독립적인 원조전담기관을 두고 종합적인 對개도국 원조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ODA 지원형태와 방식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어 선진 각국들은 對개도국 원조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정부 산하에 원조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특히 제반 대외원조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형태별로 전문인력과 기관을 두고 원조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자금협력별로 실시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 원조전담기관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우선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에 국제개발청(USAID)을 두고 제반 원조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캐나다도 외무부 산하에 각기 국제개발청(CIDA)을 두고 제반 원조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대외경제협력을 전담하는 경제협력개발부(BMZ)를 설치하여 원조정책의 기획, 입안, 결정을 총괄하는 전담부처형 운용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1997년 5월 노동당 정권이 출범하여 기존의 외무부 산하 해외개발청(ODA)을 국제개발부(DID)로 승격하여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외교관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무부 산하에 원조전담기관을 두고 있는 국가와는 달리 일본과 한국은 정책결정단계에서 관계부처간 협의에 의해 조정되는 분권형 원조실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 미국은 해외 개발 원조를 법제화하고 담당기구를 설립함으로써 냉전시대부터 체계적으로 ODA를 실시해 오고 있다.

- 1) ODA 주무부처-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 2) ODA 시행기관 -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1961년 9월 4일 미국 연방의회는 미국의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원조를 구분지어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재조직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통과시켰다. 경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권한을 부여한 동법에 근거하여 1961년 11월 3일, John F.Kennedy 대통령은 국제개발청(USAID)을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개발원조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과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 USAID는 폭넓은 경제적·사회적 개발 원조에 주안점을 둔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이다. USAID는 국제협력청(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원조 활동과 개발대출기금(Development Loan Fund)의 대출 활동, 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의 화폐통화기능, 그리고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평화를 위한 식량(Food for Peace) 프로그램이라 일컬어진 농업이익분배 활동과 같은 기존에 존재하던 미국의 원조 활동을 통합하였다.
- 1961년 Kennedy 대통령은 세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국 대외 원조 정책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세계적 요구에 대한 미국의 전례 없는 대응”이라 불려던 그 당시의 대외 원조 정책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즉, 당시의 대외원조정책은 개발도상국과 미국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몰락은 “자신들의 국가적 안보에 처참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미국의 상대적 번영에 해로울 것이고, 양심에 가책을 느낄 만한 것이다.”라는 것. 셋째는, 1960년대가 산업화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 또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덴마크 국제개발청,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등 1960년대부터 이미 외교부 또는 부서 내 별도 조직이 ODA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등 정부가 원조정책의 시행을 주도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표 1> 주요 DAC 회원국 개발원조 정책체제

국 가	ODA 주무부처 (전담 또는 총괄)	주된 시행기관
호주	외교부	AusAID
오스트리아	외교부	ADA(외교부 유관)
벨기에	외교통상개발협력부 (개발협력장관)	BTC(외교부 유관)
캐나다	국제협력부	CIDA
덴마크	외교부	외교부내 South Group
핀란드	외교부(개발협력장관)	외교부
프랑스	외교부, 경제부	AFD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경제협력개발부(BMZ)
그리스	외교부	외교부내 Hellenic Aid
아일랜드	외교부(개발협력장관)	외교부내 개발협력국
이태리	외교부	외교부내 개발협력국
일본	외무성	JICA(외교부 유관)
룩셈부르크	외교부(개발협력장관)	LUX-Development(외교부 유관)
네덜란드	외교부(개발협력장관)	외교부내 국제협력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NZAID(외교부 산하)
노르웨이	외교부(국제개발협력장관)	외교부(NORAD)
포르투갈	외무부	IPAD
스페인	외교부	AEIC(외교부 산하)
스웨덴	외교부(국제개발협력장관)	SIDA
스위스	외교부	SDC(외교부 산하)
영국	국제개발부	국제개발부
미국	국무부	USAID
한국	외교부(무상), 재경부*(유상)	KOICA, 수출입은행 등

<자료: Managing Aid, 2005, OECD>

\*재경부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됨

### 3. ODA

◇ ‘ODA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국이 국민순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중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면, 미국은 규모로 볼 때 최대의 ODA 공여국이다. 2008년 지원 규모는 260억 달러(2005년에는 사상 최고인 279.3억 달러 순지출)로, 북유럽 3국(115억 달러)의 2배 이상이지만 GNI와 대비하면 0.18%로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1위(총 평가 대상국가 22개국)이었다. 역사적으로 GNI 대비 최고는 1963년 0.6%이었고 최소는 1997년에 0.09%이었다.

-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경제성장에 비하여 매우 낮다. 2008년 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는 0.09%(8억2천만 달러)로 원조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10분의1 수준이며, DAC 회원국의 평균(0.3%)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6달러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셈이 된다. 2009년 11월 DAC 가입시 2015년까지 ODA 규모를 국민소득대비 0.25%로 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 북유럽 3국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의 ODA 공여국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북유럽 3국의 전체 ODA 규모는 115억 달러(GNI 대비 0.9%)로 유엔 권고 기준인 0.7%를 넘어선다.
- 북유럽 3국의 ODA는 국제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전파라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작됐다. 이는 후진국의 빈곤 퇴치는 선진국의 의무이며, 결국 선진국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지역 중 북유럽 3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비율이 38%에 달하는 등 지정학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빈곤 지역에 대한 원조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양자간(bilateral) 원조의 18%를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실행하고 자국 내 여러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NG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표 2> DAC 회원국의 ODA 현황

(단위: 백만불, %)

국 가	2008			2007			2006		
	ODA	ODA/ GNI	1인당 ODA	ODA	ODA/ GNI	1인당 ODA	ODA	ODA/ GNI	1인당 ODA
호주	3,166	0.34	148	2,669	0.32	127	2,123	0.30	104
오스트리아	1,681	0.42	202	1,808	0.50	218	1,498	0.47	181
벨기에	2,381	0.47	223	1,953	0.43	185	1,978	0.50	188
캐나다	4,725	0.32	142	4,080	0.29	123	3,684	0.29	113
덴마크	2,800	0.82	508	2,562	0.81	468	2,236	0.80	410
핀란드	1,139	0.43	214	981	0.39	185	834	0.40	159
프랑스	10,957	0.39	178	9,884	0.38	160	10,601	0.47	167
독일	13,910	0.38	169	12,291	0.37	149	10,435	0.36	127
그리스	693	0.20	62	501	0.16	45	424	0.17	38
아일랜드	1,325	0.58	305	1,192	0.55	275	1,022	0.54	241
이탈리아	4,444	0.20	75	3,971	0.19	67	3,641	0.20	62
일본	9,362	0.18	73	7,679	0.17	60	11,187	0.25	88
룩셈부르크	409	0.92	834	376	0.91	816	291	0.89	632
네덜란드	6,993	0.80	424	6,224	0.81	380	5,452	0.81	333
뉴질랜드	346	0.30	81	320	0.27	76	259	0.27	62
노르웨이	3,967	0.88	826	3,728	0.95	787	2,954	0.89	631
포르투갈	614	0.27	59	471	0.22	46	396	0.2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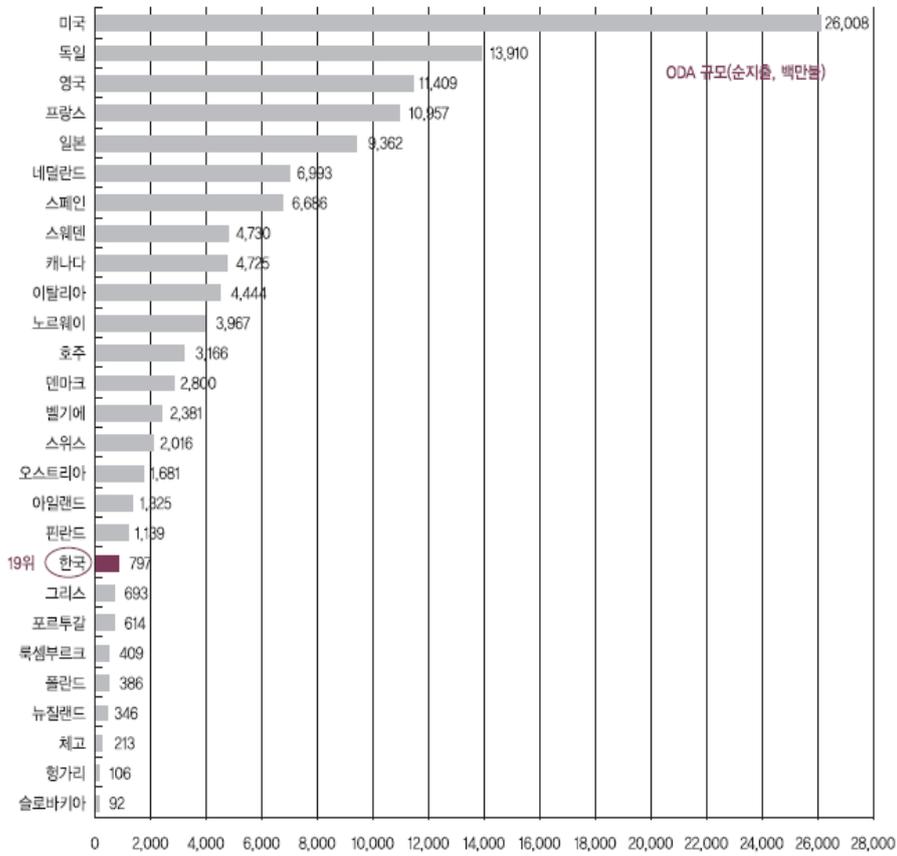
제 3 주제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국 가	2008			2007			2006		
	ODA	ODA/ GNI	1인당 ODA	ODA	ODA/ GNI	1인당 ODA	ODA	ODA/ GNI	1인당 ODA
스페인	6,686	0.43	145	5,140	0.37	114	3,814	0.32	85
스웨덴	4,730	0.98	511	4,339	0.93	473	3,955	1.02	434
스위스	2,016	0.41	262	1,689	0.37	223	1,646	0.39	220
영국	11,409	0.43	187	9,849	0.36	163	12,459	0.51	207
미국	26,008	0.18	86	21,787	0.16	72	23,532	0.18	79
합계	119,759	0.30	134	103,491	0.28	116	104,421	0.31	118
한국	797	0.09	16	699	0.07	14	455	0.05	9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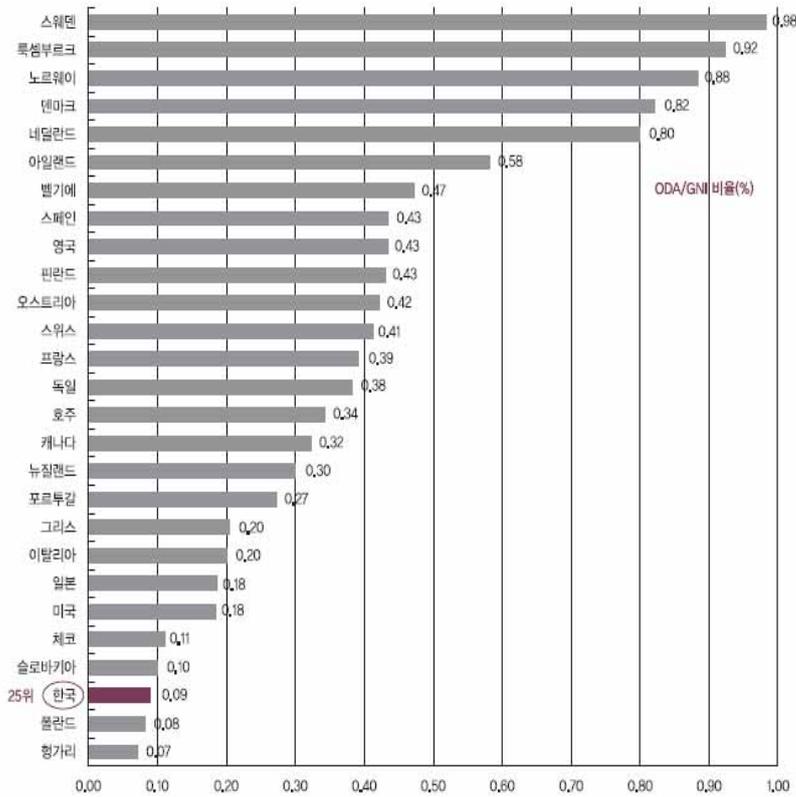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 ODA 순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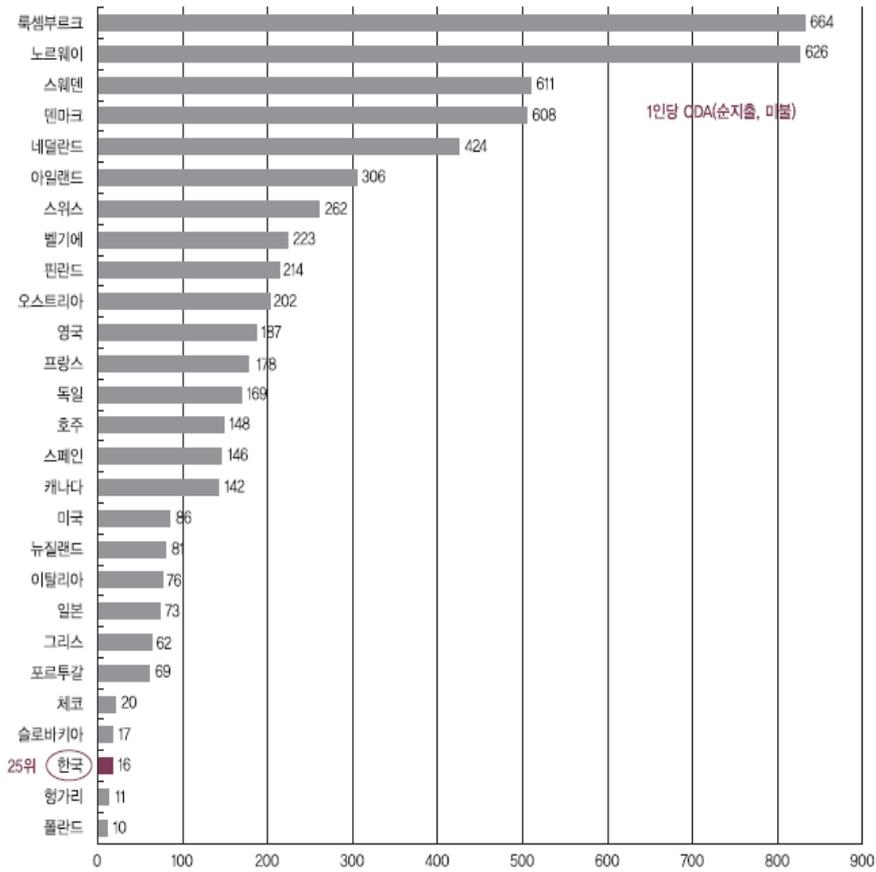
\* DAC 회원 22개국 및 Non-DAC 7개국(한국,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체코, 터키, 폴란드, 헝가리) 총29개국의 ODA 순위  
 -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는 공여국이 아닌 수원대상국임.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 ODA/GNI 비율 순위\* (%)



\* DAC 회원 22개국 및 Non-DAC 7개국(한국,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체코, 터키, 폴란드, 헝가리) 총29개국의 ODA 순위  
 -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는 공여국이 아닌 수원대상국임.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 •1인당 ODA순위(US달러)



- 1) DAC 회원 22개국 및 Non-DAC 7개국(한국,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체코, 터키, 폴란드, 헝가리) 총 29개국의 ODA순위  
 -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는 공여국이 아닌 수원대상국임.
- 2) ODA 총액과 인구자료를 바탕으로 외교부 자체 계상
- 3) 헝가리, 터키는 World Bank 인구 자료 활용하여 1인당 ODA 계상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World Bank)

### Ⅲ. 미국의 ODA 법제

◇ 미국에는 전반적인 ODA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으며, 또한 별도의 ODA 예산도 없고, 1961년 대외원조법(FAA: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이 미국의 대외원조 시행관련 제반 법적 요건(statutory requirement)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원조법은 미국의 개발원조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ODA의 법적 기반은 대외원조법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상세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매년 수정되고 있다.

- 1961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의 내용 분석
- 대외원조법 중 ODA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분석하고, 여러 차례의 개정된 주요 내용 소개

### Ⅳ. 미국의 ODA 시행 사례

◇ 미국 ODA의 특징은 인도적 목적 이외에도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패권국으로 지역분쟁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은 ODA를 안보 차원의 국익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부시 정부 - 초기의 안보 중심의 원조 정책은 말기부터 앞에서 지적했던 비판을 의식하여 원조정책의 방향이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 클린턴 정부 - 탈냉전기를 반영 원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목적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즉 미·소 대결구도 하에서 유럽과 제3세계에 초점을 둔 외교정책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원조 목적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조정책의 주요 우선 과제로는 동구, 구소련 및 기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증진, 강력한 자유시장 경제의 구축, 최빈곤 제 3세계 국가들의 장기개발과 빈곤퇴치, 미국의 상업적 국가이익과 원조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미국 기업의 무역환경 개선 등이 강조되었다.

◇ 최근의 세계적 개발원조 추세가 원조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 인구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원조 배분 전략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 원조 배분의 주요 기준이었던 국가별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인구, 경제발전, 민주주의, 인도주의 등의 원조 배분을 위한 기능적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원조규모를 할당하는 방식의 배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 배분에 있어서는 안보적 목적에 의한 원조규모를 줄이는 대신 경제적, 인도적 고려에 의한 원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분야별 ODA 시행 사례

- 1) 농업지원(agriculture)
- 2) 민주주의와 국정관리지원(democracy & governance)
- 3) 경제성장과 무역 지원(economic growth & trade)
- 4) 환경지원(environment)
- 5) 교육지원(education & Training)
- 6) 의료지원(health)
- 7)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 8)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 V. 미국의 ODA에 대한 평가

- ◇ ODA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검토한다.
- ◇ 1960년대 이후의 대외 원조 개선 노력
  - 1961년 법제화된 대외원조법은 어떻게 원조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 제한적 이었다.
  - 1970년대 초반 대외 원조는 1971년 의회가 회계 년도 1972년과 1973년 대외 원조 자금 운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입법적인 위협에 처했다. 1971년의 자금 무산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온 대외 원조에 의회가 처음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몇 가지 이슈들이 합쳐져 자금 무산을 이끌었는데, 첫째는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둘째는 원조가 너무 단기적인 군사적 방법에 국한되어 있다는 우려. 셋째는, 원조가, 특히 개발 원조 부분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의 이렇다 할 결과를 얻어내지 못함에 따른, 실패한 정책이라는 염려 때문 이었다.
  - 대외 정책의 개선은, 특히 경제 원조 정책 부분의, 의무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가 주도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빈곤한 측면(“인간의 근본적 욕구”)에 대한 원조를 주는 것이 정책 개선의 주요한 현안이 되었다. 수원국의 인민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의회는 기술적 원조 보조금과 발전 기금과 같은 오래된 항목들을 농업이나 가족 계획, 교육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새로운 항목들로 대체했다.
  - 1961년 Kennedy 대통령에 의해 떠올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외 원조 관리구조를 재조직하기 위해 1978년

Hubert Humphrey 상원 의원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안이 소개되었다. Humphrey의 법안에서, 국제개발청에 의해 운영되는 양자간 정책들, 재무부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 대출 기관, 당시 국무부에 의해 운영되던 국제연합(UN)의 자원 활동, 국제개발청에 의해 운영되던 식량 정책, 그리고 해외 민간 투자 회사의 활동들과 같은 다자간의 정책들을 재조직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동조합(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이 설립되었다. Humphrey의 법안은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ODA 정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 ODA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미국 내 여러 비정부기구들은 국무부 산하기관이 해외원조를 담당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최대의 NGO 연합체인 '미국 국제자원봉사 행동위원회' (American Council for Voluntary International Action)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국무부와 USAID, 또 1백50여개 해외원조기금을 받는 연방정부 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장관급 부처 신설을 촉구했다. 미국의 '국제개발센터' 역시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국제개발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랜들렛 '국제개발센터'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해외원조 정책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무부와 별도로 해외원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랜들렛 연구원은 외교정책과 해외원조 정책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며, 국무부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입장에서 급박하고 단기적인 정책을 취해야 할 때가

많은 반면 해외원조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처를 설립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랜들렛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국익을 위한 관점에서 전략적 원조를 제공하는 데 대해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전략적 원조가 과도해 균형이 깨졌다고 분석했다. 미국 해외원조의 절반 정도가 이라크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전략국가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볼 때, 해외원조를 담당하는 USAID가 계속 국무부 산하에 있으면 장기적인 해외원조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전략적, 단기적인 목적으로 유용된다는 것이다.

## VI.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 미국의 ODA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법제적 차원, 정책적 차원, 평가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 ◇ 미국의 ODA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한다.
  - ▲ ODA의 법적 기반 구축
  - ▲ 일관된 집행체제의 완비
  - ▲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비구속성 원조
  - ▲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원조 등

##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발표자 : 이 정  
(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개 요:

최근 다양한 요인에서 국제적인 제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부개발원조)의 약자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경제협력’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의 용건을 충족시키는 자금의 흐름이 ‘ODA’에 해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공여되는 것
  2.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3. 자금협력에 대해서는, 그 공여조건의 증여비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일 것
- ※ 증여비율(grant element)란, 차관조건의 완화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금리가 낮고, 용자기간의 길어질수록, 증여비율은 높아져 차입인(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여의 경우의 증여비율은 100%가 된다.

위의 일본의 ‘ODA’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1.에 대해서는 ‘실시기관’은 JBIC(국제협력은행)과 JICA(국제협력사업단) 등이다(유상 자금 협력을 JBIC가, 무상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의 부분을 JICA가 담당한다). 2.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원조 등은 ODA에서 제외된다. 3.에 대해서는 대부의 정도를 표시하는 수치로, G.E.가 낮으면, 개발도상국 측의 부담이 무거워지게 된다.

일본의 ‘ODA’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40년대 후반, 황폐하게 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도 ODA의 수용국이었다. 이러한 ‘경제협력’으로 조기부흥을 이룩한 일본은, 그 후 최초의 ODA로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한국, 몽골, 미크로네시아 등에 제2차 대전의 배상 형태의 무상원조를 실시했

다. 1961년에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1999년에 일본수출입은행과 통합하여 JBIC가 설립됨), 1974년 JICA가 설립되어 현재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198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ODA 거출을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 일본은 ODA 대강에서 다음의 4가지 이념과 4원칙에 준하여 ODA를 실시하고 있다.

<4가지 이념>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인도적 고려</li><li>2. 상호의존성의 인식</li><li>3. 환경의 보전</li><li>4. 자조노력의 지원</li></ol> |
|----------------------------------------------------------------------------------------------------------------------|

<4원칙>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환경과 개발의 양립</li><li>2. 원조의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조장에 대한 사용의 회피</li><li>3.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대한 주의</li><li>4.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촉진, 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 기본적인 인권이나 자유의 보장에 대한 주의</li></ol> |
|-------------------------------------------------------------------------------------------------------------------------------------------------------------------------------------------------------------------------------------------|

(1) ODA와 JICA의 역할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기관, NGO,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과 단체가 경제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 가운데,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행하는 자금이나 기술의 협력을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정부를

베이스로 하는 원조가, ODA의 정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래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에 의한 정의)로 여겨지고 있다.

-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공여되는 것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 자금협력에 대해서는, 그 공여조건의 증여비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일 것
- ※ 증여비율(grant element)란, 차관조건의 완화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금리가 낮고, 용자기간의 길어질수록, 증여비율은 높아져 차입인(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여의 경우의 증여비율은 100%가 된다.

ODA는 그 형태에서, 양국간 원조, 국제기관에 대한 출자·거출(다국간 원조)로 나뉘어지며, JICA는 이 중, 양국간 원조의 형태인 기술협력, 유상 자금협력, 무상 자금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2) 세 가지 원조방법을 일체적으로 담당하는  
신 JICA 탄생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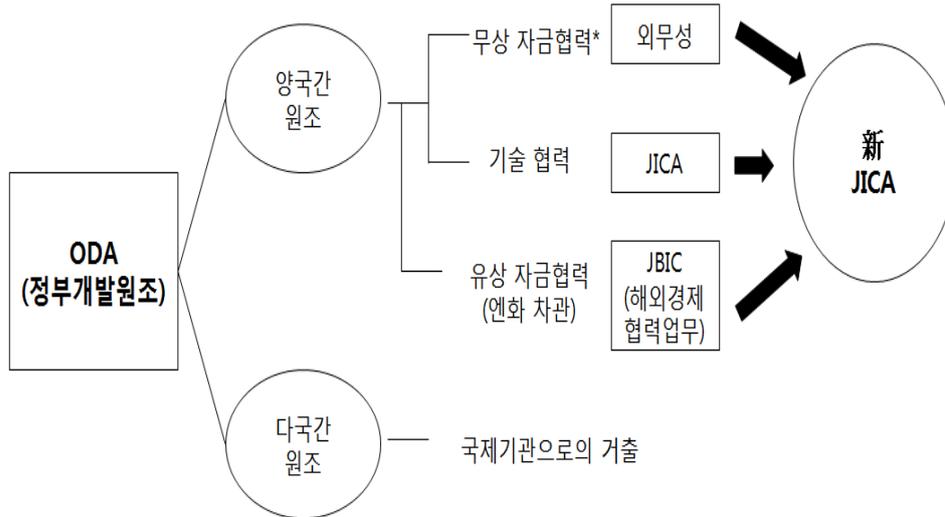
최근 유럽의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와 빈곤악감 등의 지구규모의 과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ODA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신흥원조국도 등장하는 가운데, 일본은 엄격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ODA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와, 국내의 행정개혁의 흐름에 따라, 일본 정부는 ODA의 한층 더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ODA 정책의 전략화와 실시체제의 강화 등의 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ODA의 실시기관을 일원화하게 되어, 국제협력은행

(JBIC)의 해외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 자금협력 업무(외교정책 상, 외무성이 직접 실시하는 것을 제외함)가, JICA에 계승되어, 2008년 10월 1일에 신 JICA가 탄생했다.

이러한 통합으로, 원조의 방법을 유기적으로 제휴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외교정책 수행상의 필요로  
외무성이 계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출처: JICA(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의 HP  
(<http://www.jica.go.jp/about/jica/oda.html>)

## 제 1 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제도적인 구조<sup>1)</sup>

세계의 개발원조를 둘러싼 환경은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 일본의 정부개발원조가 놓여진 상황도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ODA의 제도적인 구조도 변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ODA는, 크게 엔화 차관, 기술협력, 무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엔화 차관은 국제협력은행(JBIC), 기술협력은 국제협력기구(JICA), 무상은 외무성 경제협력국과 국제사회협력부(국제기관에 대한 거출분)가 실시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가, 2006년 8월의 외무성개혁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즉, 경제협력국에 대신하여 새롭게 국제협력국이 신설되어, 거기서 경제협력국이 실시했던 무상원조와, 국제사회협력부가 주도하고 있던 국제기관에 대한 개발자금거출부분이 통합되어, 멀티(multi)와 바이(bi)의 유기적인 제휴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상승효과를 가지는 효율적인 원조의 실시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또, 2008년에는 신 JICA법이 시행되어, JBIC의 엔화 차관부문이 신 JICA의 아래로 편성되어, 신JICA 아래에서 엔화 차관, 기술협력, 무상(ODA 실시부분)이 일원적으로 관리·운영되게 된다.

또, 일본의 ODA 정책의 기본적인 기획·입안·조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각료 차원의 해외경제협력회의(내각총리대신 아래에 내각관방장관, 외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이 참가한다)가 있다. 또, 외무대신의 자문위원회로서는 국제협력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협력에 관한 유식자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1) 横田洋三 『本調査の概要』 『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 ODA研究会、2008年3月、12-13頁

## 제 2 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특징<sup>2)</sup>

일본의 ODA의 특징에 대하여, (1) 지역적 특징, (2) 분야적 특징, (3) 원조조건 특징, (4) 원조형태의 특징 등의 네 가지로 개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 1

일본의 ODA는, 제1기의 제2차 대전 후 배상기부터 시작되어 거의 일관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1992년의 구 ODA 대강, 2003년의 신 ODA 대강에서 아시아 중시가 관철되어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2006년의 실적을 보면, 아시아는 일본의 ODA 총액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양주(0.9%), 중앙아시아(0.6%), 중동(17.1%), 아프리카(11.1%), 중남미(4.1%), 유럽(0.6%)을 크게 따돌리고 있다. 아시아는 일본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인 관계도 깊고, 또 국가의 숫자도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실은 그만큼 부자연스럽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다액의 원조를 받고 있던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이 개발도상국의 영역에서 벗어나 원조대상국에서 졸업하고, 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많은 원조를 받고 있던 국가들이 점차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개발도상국 중에서의 우등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일본의 ODA에서의 아시아 중시는 역시 특필할 수 있는 일본 ODA의 지역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에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전란이 계속되고 난민이 증대하여, 기근 등의 자연재해에 습격을 당하여, 그 결과 빈곤에 허덕이는

2) 横田洋三 「本調査の概要」 『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 ODA研究会、2008年3月、9-12頁

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일본은 과거 3회의 아프리카 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를 주최하고, 2008년 5월에는 제4회 회의(TICAD IV)를 개최하게 되어, ODA에서의 아프리카 중시의 정책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 점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일본의 ODA의 비율이, 2006년에는 그 전의 5년간의 평균이었던 7.8%에서 11.1%로 비약적으로 증대했던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 대양주,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에 대한 ODA 금액이 최근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최근 우려되는 경향으로서, 일본의 ODA 금액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영향으로, 과거에는 일본이 제1위의 원조국이었던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의 국가(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마다가스칼, 모잠비크, 탄자니아)에서, 일본은 1위의 지위를 다른 국가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현재 일본이 1위의 원조국으로 되어 있는 국가는 이 지역에서 제로이다.

## 2

일본의 ODA에 관해서는, 종래 거시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형개발 프로젝트(댐건설, 도로·철도건설, 철강이나 중화학공업 추진) 중시라는 비판을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2번에 걸친 ODA 대강의 방침에 따라, 상하수도, 관개정비, 교육·위생 등의 개발도상국의 시민생활에 밀착된 분야에도 힘을 쏟게 되어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시작한 ‘남남(南南)협력’(개발도상국에 의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의 지원은 일본이 원조하는 방식)이나 ‘일반시민·인간의 안전보장 무상자금’(현지 베이스에서 비정부조직(NGO)을 통하여 1건

원칙 최대 5,000만 엔(예외로 1억 엔)까지의 프로젝트에 무상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의 주체성을 육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제휴 아래에서 현지의 니즈에 알맞은 원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신 ODA 대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듯이, 거시경제적 성장 중시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의 관점을 도입한 ODA으로의 전환이 도모되고 있는 점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박멸, 인권·민주주의의 촉진, 환경보전, 기아·난민·재해·감염증에 대한 대응, 테러방지나 법정비지원 등, 인간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에 힘을 쏟게 되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원조정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특징으로서 군사적 사용의 금지, 피원조국가의 군사예산이나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상황에 대한 유의가 있다. 이것은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기본방침으로서 엄격하게 준수되어 왔던 시책으로, 군사원조를 ODA의 주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등과 비교하여, 한층 더 눈에 띄는 특징이다.

### 3

일본의 원조에 대해서는, 종래 증여비율(grant element)이 낮고, 증여에 비하여 엔화 차관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2001년부터 2005년의 원조총액에 차지하는 증여(무상 + 기술협력)의 비율은 35%였지만, 2006년도의 수치는 25%로, 오히려 증여의 비율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엔화 차관은 국제협력은행에 의한 대부가 중심이지만, 이것은 이자를 붙여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정부의 예산에 반드시 큰 영향을 받는 일없이 자금을 회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

능한 것에 대하여, 증여는 매년 예산을 획득해야 하며, 최근과 같이 긴축재정 시에는 감액을 저지하는 것이 고작이며, 일반적으로는 감액도 각오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지금의 사정은 일본의 원조방침은 ODA 대강에도 나타나 있듯이 원조수용국의 ‘자조노력’이 기본으로, 채산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익이 상승하도록 계획되고 운영되는 것을 촉구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향으로, 일본도 신 ODA 대강에서 명언하고 있는 사회 인프라, 농업, 교육, 위생, 인권, 환경을 중시하는 원조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엔화 차관은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증여나 조건이 완화한 대부(soft loan)가 가미됨으로써, 유연하고 세밀한 원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ODA는 이러한 방향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 4

일본의 ODA는, 역사적으로 제2차 대전의 배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경위도 있어, 다국간 원조(multi, 국제기관에 대한 거출)보다 양국간 원조(bi)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도 현저하고 2006년 각국의 ODA 총액에서의 다국간 원조의 비율은 이탈리아 55.4%, 그리스 46.3%, 포르투갈 42.1%, 스페인 38.3%, 덴마크 35.6%, 핀란드 33.8%, 벨기에 33.4%, 스웨덴 32.9% 등 선진 원조국이 대략 3분의 1인 것에 대하여, 일본은 20.8%로 5분의 1로 되어 있다. 또, 영국(24.2%), 독일(26.1%), 프랑스(27.8%), 네덜란드(28.0%) 등의 원조국도 거의 4분의 1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8.5%는 매우 낮은 수치로 눈에 띄지만, 일본이 이를 모델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국간 원조의 금액은 각 국제

기관에서의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거출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조금액이 늘어나면 그것은 양국간 원조의 부분이 많아지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다국간 원조의 비율이 낮아지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ODA에 대하여 오늘날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조건부’(tied: 원조자금에 따른 조달처를 일본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의 원조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있다. 실제로 1970년까지 일본의 ODA는 원칙적으로 모두 구속차관(tied loan)이었다. 그 후 특히 엔화 차관의 비구속(untied)화가 진행되어, 1994년에는 98.3%로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의 비구속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엔화 차관을 제외한 무상 및 기술협력 부분에는 구속(tied)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조총액에 차지하는 비구속률은 오늘날에도 100%는 아니다. 2005년의 실적에서 일본의 비구속률은 89.6%로, 100%인 영국, 아일랜드, 99.6%의 노르웨이, 99.1%의 룩셈부르크, 98.3%의 스웨덴, 97.4%의 스위스, 96.2%의 네덜란드, 95.7%의 벨기에, 95.1%의 핀란드, 94.7%의 프랑스, 93.0%의 독일 등에 뒤지고 있다.

### 제 3 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역사적인 전개<sup>3)</sup>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개관한다.

---

3) 横田洋三 「本調査の概要」『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 ODA研究会、2008年3月, 2-9頁.

## 1 : 2 (1954-1963 ) - ODA

일본 ODA의 시작은, 제2차 대전 후 부흥기의 후반에 해당되는 1954년에 서명되었던 일본-버마 배상협정에서 비롯된다. 즉, 일본은 전쟁의 파괴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는 자립하고 있지 못했던 1954년에, 본래라면 ODA가 실시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아직 없던 시기에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서명을 계기로 전쟁배상을 인접 아시아 국가에서 실시하게 되어, 그 최초의 국가로서 미얀마(당시 버마)가 협정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 후, 필리핀, 남베트남(당시),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로 하여 일본은 배상 혹은 이에 준하는 무상원조라는 형태로 무상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일본의 경제력은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예를 들면, 세계은행으로부터는 전쟁의 부흥을 위한 다액의 자금을 받아들여, 제강공장이나 고속도로,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 등의 건설을 실시했다. 다만, 이 시기에, 일본은 1954년의 콜롬보 계획(Colombo Plan)에 참가하여, 가입국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을 개시했던 경험도 있고, 전후 부흥과 개발원조가 뒤섞여 배상이 그 연결 역할을 연출했던 시기로서, 일본의 ODA의 제1기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는, 외무성의 위탁으로 국제개발센터의 프로젝트 팀이 실시했던 조사보고서 “ODA 40년의 총괄(ODA40年の総括)”(1994년, 이하 간단히 “총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은 ‘전후 배상기’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일본 ODA의 맹아기’이기도 했다.

## 2 2 : (1964-1976 ) - ODA

제2기는, 도쿄 올림픽 개최, 도카이도 신칸센의 개통, 수도 고속도로 완성이 거듭되었던 1964년부터 제1차 오일쇼크가 안정되었던 1976년까지의 12년간이다. 이 시기가 시작되는 1964년은, 동시에 일본이 ‘선진국의 클럽’이라고 말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이 인정되어, 명실공히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던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구식민지가 계속하여 독립하여 UN가입을 하고 있었던 시기와 중첩되어, ODA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적인 요청에 따라 ODA 자금을 증액하고, 구체적으로는 1964년의 1억 1,600만 달러에서 1976년의 11억 100만 달러로, 약 10배의 성장을 보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원조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국제협력사업단(JICA: 현 국제협력기구)의 설립(1974년),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현 국제협력은행, 설립은 1961년)의 체제정비를 실시하여, 정부주체의 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아시아 지역에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설립(1966년)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신흥독립국가들의 등장으로 조건이 완화된 개발자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세계은행의 소프트 론(soft loan: credit)의 창구인 국제개발협회(IDA)나, 개발도상국의 기업에 정부보증 없이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는 국제금융공사(IFC)가 창설되었던 것도 이 시기이다(IFC는 1958년, IDA는 1960년에 설립). 또, 무역의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요구가 강해져, 자유무역 추진을 지향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일변도가 아니

라, 개발도상국에 무역상의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UN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64년에 개최되어,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것이 UN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상설화되었다. UNCTAD에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이해를 보이는 최대 사무국장 프레비쉬(Prebisch)의 보고서(‘프레비쉬 보고’, 1964년)가 제출되고, 또, 세계은행의 위촉아래에, 개발원조의 기본이념과 구체적 지침을 명확히 했던 ‘피어슨(Pearson)보고’(1969년)가 공표되어, 그 후 세계의 개발원조활동의 바이블이 되었다.

이러한 ODA를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에 대하여,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이해를 보이면서, 원조액의 증대를 도모했다. 이 제2기는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와 중복되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과 일본의 ODA의 양적인 확대가 어느 정도 상승관계를 보였다. 즉, 일본 ODA 제2기는 국제적인 요청과 일본의 내재적인 요구가 합치하여, ODA의 양적 확대가 도모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은행 등으로부터의 부흥원조자금의 수용과 병행하는 형태에서의 배상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는 대외원조라는 제1기의 원조형태는 극복되고, 일본이 순수한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 자각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해외로부터도 일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기대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ODA 40년의 총괄”은 ‘경제협력 확대기’라고 하지만, ‘일본의 ODA의 본격적인 시동기’라고 볼 수 있다.

### 3 3 : (1977-1988 ) - ODA

일본 ODA의 역사적인 전개에서의 제3기는 제1차 오일쇼크와 제2차 오일쇼크의 중간시기에 해당하는 1977년부터 냉전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한 1988년까지의 11년으로, “ODA 40년 총괄”은 ‘계획적 확대기’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일본의 ODA의 주체적 확대기’라고 부

를 수도 있다. 이러한 후자의 주체적 확대기라는 호칭은, 이 시기에 일본이 개발원조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명확히 내세웠던 점에서 채택된 것이다.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오일쇼크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일본은 이러한 나쁜 영향에서 비교적 빨리 극복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도 또 선진국으로부터도, 원조액의 증대를 강력하게 요청받게 되었다. 또, 전후 배상이 1976년에 종료되었기도 했고, 1977년 일본은 국제경제협력회의 각료회의에서 경제협력 목표로서 ‘5개년간 배증계획’을 발표했다. 게다가 일본은 다음 해의 ‘3개년간 배증계획’(ODA 제1차 중기목표)으로 목표의 달성시기를 1년간 단축했다. 이것은 바로 “총괄”이 언급하듯이 ‘지금까지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로, 일본의 개발도상국 원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5면).’

이 시기는, 개발원조에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새로운 동향이 보이게 되었다. 즉, 1970년대는 1972년의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개최나,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오일쇼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 지는 것처럼, 세계적인 환경(공해)문제나 자원고갈문제에 강한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단순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부담이 적은 개발자금을 대량으로 제공하면 좋다는 피어슨 보고서의 주장에 대하여, 환경보전이나 자원보호에 배려했던 원조라는 시점이 도입되게 되었다. 또, 아우구스토 피노체토(Augusto Pinochet Ugarte) 정권 하의 칠레나, 마르코스(Ferdinand Edralin Marcos) 정권 하의 필리핀과 같은 군사정권하의 인권 억압국가에 대한 원조를 삼가도록 국제적 여론도 형성되었다. 이렇게, 개발 원조를 경제적인 측면뿐 만이 한정하지 않고, 환경, 자원, 인권 등의 관련 영역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이 시기부터 점차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오



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가의 거시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기존의 개발원조 이념을 전환하여 인간중심의 개발이념인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UN 개발계획(UNDP)이 주장하고, 1990년 이후 매년, 인간개발지표를 실은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던 것도 이 시기이다.

이러한 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큰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도 원조이념을 명확히하고, 원칙에 따른 원조의 계획·실시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1992년 6월에 일본정부는 각의결정의 형태로 ‘원조(ODA) 대강’을 발표했다. 대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이념으로서 다음의 여러 사항을 명시한다.

- (가)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아와 빈곤의 현 상황은 인도적 견지에서 간과할 수 없다.
- (나) 평화와 번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확보되는 사회의 구축이 불가결하다.
- (다) 환경의 보전에 배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이 전인류적 과제이다.
- (라) 광범한 인재양성, 여러 제도를 포함한 경제사회 기반 및 기초생활 분야의 정비, 그리고 ‘좋은 통치’의 확보가 목표이다.

그리고, 다음의 네 가지를 원칙으로 든다.

- (가)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
- (나) 군사적 용도 및 국제적 분쟁조장에 대한 ODA 자금의 사용을 회피한다.
- (다)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충분히 주의를 한다.
- (라)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주화의 촉진, 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 및 기본적인 인권 및 자유의 보장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한다.

또 중점사항으로서 다음의 여러 사항을 지적한다.

- (가) 대상지역으로서,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아프리카, 중근동, 중남미, 동유럽 및 대양주의 특히 후발 발전도상국(LLDC)을 중시.
- (나) 대상문제에 관해서는 지구규모문제, 기초생활분야,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지원의 노력
- (다) 경제사회개발의 기초조건인 인프라정비지원 중시
- (라) 구조조정, 누적 채무지원에 노력

이러한 ODA 대강의 발표는, 지금까지 원칙이 없는 원조, 국가이익에 봉사하는 원조 등으로 비판되어 왔던 일본의 ODA의 바람직한 양상에 대하여 평가를 일변시킨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국내외의 원조관계자로부터 환영받았다. 특히, 환경, 인권, 민주화 등의 인류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군사적인 목적에 대한 원조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되었다. 이러한 제4기를 ‘일본의 ODA의 충실기’라고 규정짓는 것에 이론은 없을 것이다.

## 5 5 : (2000- )

일본 ODA의 역사적 전개의 제5기는, 밀레니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밀레니엄 선언이 발표되었던 2000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시기이다. 국제적으로는 밀레니엄 선언에 근거로 하여 UN이 2001년에 설정했던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실현을 위하여, UN 관계기관이나 UN 가입 국가가 힘을 합쳐 한층 더 효과적인 개발원조의 추진을 도모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게 되었다. MDGs란, 구체적으로는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개발목표로, ① 1일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의 반감, ② 초등교육의 완전실시, ③ 젠더의 평등의 실현, ④ 유아사망률의 삭감,

⑤ 임산부의 건강개선, ⑥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감염증의 예방, ⑦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 ⑧ 지구규모의 개발 파트너십의 구축, 등의 여덟 가지 항목을 들 수 있다.

또, 제5기의 큰 국제적인 사건은,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했던 이른바 ‘동시다발테러’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 지원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적용되어, 정부개발원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테러의 온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국제사회에서는 강해졌고, 테러의 위협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빈곤박멸에 진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점차 국제원조 커뮤니티에 정착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을 통합하여 국제협력은행(JBIC)을 설립(1999년)하고, 2003년에는 국제협력사업단(JICA)을 독립행정법인에 개편하여 명칭을 국제협력기구(약칭 JICA는 바뀌지 않음)로 하는 등의 기구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채택 후 10년을 경과했던 ODA 대강을 재검토하여, 2003년에 신 정부개발원조 대강(신 ODA 대강)이 각의결정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목적으로서 다음의 여러 사항을 든다.

(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함으로써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한다.

(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세계에서 심각화되고 있는 빈부의 차이의 확대, 민족적 종교적 대립의 격화, 테러의 다발, 자유·인권·민주주의의 억압, 환경의 악화, 감염증의 확대, 남녀의 격차, 빈곤·기아·난민·자연재해의 위협, 등에 ODA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 기본방침으로서 다음의 여러 항목을 증시한다.

- (가)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지원
- (나)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
- (다) 공평성의 확보
- (라) 일본의 경험과 지견의 활용
- (마)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제휴

그리고 중점과제로서 다음의 4가지를 지적한다.

- (가) 빈곤삭감
- (나) 지속적인 성장
- (다) 지구규모문제에 대한 노력
- (라) 평화의 구축

또, 중점지역으로서 아시아 여러 국가, 특히 아세안 등의 동아시아 지역의 중시, 남아시아의 특히 빈곤인구에 대한 배려, 중앙아시아의 특히 코카사스 지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화에 대한 지원, 아프리카의 후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 중동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평화의 정착계획의 실시, 중남미나 대양주의 특히 취약한 도서국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그리고, 원조실시 원칙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 (가) 환경과 개발의 양립
  - (나) 군사적 용도나 국제적 분쟁 조장에 대한 사용회피
  - (다) 테러나 대량파괴무기 확산의 방지,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이나 대량파괴 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입의 동향에 대한 주의
- (라) 민주화 및 인권이나 시장경제도입의 노력 등에 대한 주의

이렇게, 국제적인 원조환경의 변화에 맞춰 일본 ODA 정책도 새로

은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일본의 원조금액은 피크였던 1997년 이후, 거품경제 붕괴 후인 경제정체와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고, 2007년에는 피크시의 1조 1,687억 엔에서 38% 감소했던 7,293억 엔까지 떨어졌다. 신 ODA 대강의 의욕과는 반대로, 원조액은 매년 감소되어, 2008년도 ODA 예산액은 7,002억 엔으로 전년에 비하여 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확대가 요구되고, 주요 선진국가가 ODA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장래적으로는 국민총소득(GNI)의 0.7%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과거 최대의 ODA 거출국으로 현재도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ODA 거출액의 순위를 점차 다른 선진 국가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 제 4 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 1

‘법정비지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체제이행국의 제도구축과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강화의 문맥에서, 주요한 도너의 중점 지원영역이 되었으며,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포괄적인 개발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 구상(1998년 공표)이 입법·사법개혁을 구조개혁과제의 네 가지 핵심사항의 하나로 들어 주목받았다.<sup>4)</sup>

일본의 법정비지원은, 법무성의 법무종합연구소 내에, 법정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2001년 4월에 국제협력부가 설치되었다. 국제협력부가 관여하는 법정비지원활동의 대부분은 ODA의 일환으로서,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의 기술협력 시스템에서 실시되는 지원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형태이다. 그 대상국은, 베트남에서 시

4) 金子由芳 『法整備支援における政策判断に資する立案・評価手法の検討』 国際協力総合研究所、2006年8月、1頁。

작되어,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sup>5)</sup>

## 1. 법정비지원의 정의

법정비지원이란, 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법의 지배를 침투시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개발도상국이 법제도 및 사법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여러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sup>6)</sup> 이렇듯, ‘법정비지원’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떠오르기 쉽지만, 법률이 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의 적용을 담보하는 사법제도의 정비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령 및 사법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법조실무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협력부에서는 기본법의 정비, 사법제도의 정비, 법조양성 등의 인재육성의 세 가지를 포함한 내용을 법정비지원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비지원’을 법령안 작성에 관한 지원 외, 법령의 운용을 위한 제도·체제정비 및 이러한 것에 종사하는 법률전문가의 인재육성에 관한 지원을 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 2. 정부의 정책에서의 법정비지원의 위치<sup>8)</sup>

법정비지원 활동은, 정부의 정책 중에서는 ODA 정책의 한 가지로 규정된다. 즉, ODA 대강(2003년 8월 각의결정)에서 법정비지원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ODA 중기정책(2005년 2월 각의결정)에서도 법정

5)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頁

6) 鳥居香代 『JICAの法整備支援』 JCIA公共政策部

7)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頁

8)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3頁

비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이하 개혁심의회)의 최종의견에 따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2004년 3월 각의결정)에서도, 국제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법정비지원의 추진’이라는 항목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또, 자유민주당 정부조사회·사법제도조사회의 제안인 ‘세계에 자랑스러운 일본법제도정비지원의 전략 비전(世界に誇る、わが国法制度整備支援の戦略ビジョン)(2007년 6월)이 내각에 제출되는 등의 움직임도 있어, 내각의 ‘해외경제협력회의’는, 제13회 회의(2008년 1월 30일 개최)에서 법정비지원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중요한 해외경제협력의 한 가지로, 향후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등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법정비지원은 정부의 정책상도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 2 JICA가

9)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개인,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직능단체나 NGO, 대학교, 정부기관, 국제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국간 프로젝트로서 실시되는 것의 대부분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국제약속에 근거로 하여 실시하는 기술협력, 즉 정부개발원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법정비지원은 1990년대 후반에 지적 지원의 한 분야로서, 체제 이행국에 대한 시장경제 이행지원으로 시작되어 점차 법의 지배의 확립이라는 목표가 의식됨과 동시에, 지원내용·대상지역이 다양화하고 있다. 또, 법정비지

9)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37-46頁。

원의 지원방법에는 공동형의 접근이나, 공적기관에 의한 조직적 지원 등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 1. JICA의 법정비지원의 시작과 확대

### 1) 법정비지원의 시작

1990년대에 들어서자,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또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사회제도의 정비를 실시하는 등의 새로운 개발과제가 발생했다. 또, 원조의 비효율이나 실패의 원인으로서 피원조국가의 나쁜 거버넌스<sup>10)</sup>가 지적되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좋은 통치의 추진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원조국가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1992년에 일본정부는 ‘정부개발원조대강’에서 인재양성이나 제도정비 등의 지적지원을 통하여 좋은 통치를 촉진하고, 건전한 경제개발을 실현한다는 기본이념을 내세웠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1994년에 도이모이 정책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전환하여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베트남 정부와의 정책협약에서, 지적지원, 특히 시장경제화 지원을 베트남에 대한 정부개발원조의 중점 5분야<sup>11)</sup>의 한 가지로 삼기로 합

10)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정책체제의 양태’, ‘국가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관리에서 행사되는 권력의 양상’, ‘정책을 계획·책정·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운영능력’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JICA의 조사 및 연구에서는 ‘어떤 국가의 안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그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에서 동원하고, 배분 및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구제도, 정부·시민사회·민간부문 간의 협동관계나 의사결정의 양상 등, 제도전체의 구축이나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JICA社会開発部(2004), 3頁).

11) 일본정부는 1994년 10월에 경제협력종합조사단을 파견하여, 베트남 정부와의 사이에서 ① 인재양성·제도만들기(특히 시장경제화지원), ② 전력·운수 등의 인프라 정비, ③ 농업·농촌개발, ④ 교육, 보건의료, ⑤ 환경 등의 5가지 항목을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원조중점분야로서 합의했다. 2000년에 책정되었던 국가별 원조계

의했다.

JICA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94년에는 베트남 사법성으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민법기초에 대한 조언 등을 실시하는 단기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하고, 사법성 관계자의 일본연수를 개시했다. JICA에서는 이때부터 법제도정비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으며, 후에 법제도정비에 관한 지원을 가리켜 ‘법정비지원’이라는 호칭이 정착되었다.<sup>12)</sup>

1996년 12월에는 ‘중요정책 중추지원’ 계획안의 일환으로서, 베트남의 법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베트남 중요정책 중추지원: 법정비’ 프로젝트를 개시했다(1996~1999년. 1999년부터 단계2, 2003년부터 단계3으로 계속되었다).

1996년에 시작되었던 프로젝트(단계1)에서는 베트남 사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 수용으로 시장경제화에 관련되는 개별 입법 작업에 대하여 폭넓게 조언 등을 실시했다.

1999년 12월에 시작되었던 단계2에서는, 베트남 사법성에 더불어 새롭게 최고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원을 대상으로 하여, 베트남 측의 다양한 니즈에 응하면서 시장경제에 적합한 민상사 분야의 법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어 지원이 실시되었다. 단계1에 계속하여 개별 입법 작업에 대한 조언에 더불어, 베트남 민법의 개정 초안을 베트남과 일본 작업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민법개정 공동연구’를 중심에 둔 민상사법 분야의 체계적인 입법지원, 법조양성학교로의 지원이나 일본으로의 유학생 수용 등으로 이루어진 인재육성, 의 세 가지를 협력

---

획에서는, 이러한 5가지 분야를 중점분야로 베트남 원조에 힘쓸 것이 확인되었다. 그 후, 2004년 4월 28일의 국가별 원조계획개정으로, 현재의 중점분야는 ① 성장촉진, ② 생활·사회면에서의 개선, ③ 제도정비의 3가지 분야로 되었다.

외무성 HP: <http://www.mofa.go.jp/mofaj/gaiko/oda/index/kunibetsu/enjyo.html> 참조.

12) 1994년 이전에서의 JICA의 법제도에 관한 지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연수원 수용 사업으로서, UN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소와 연계하여 아시아 국가의 형사재판관, 검찰관, 경찰관 등에 대한 형사사법연수를 실시해왔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의 기둥으로 지원이 실시되었다.

2003년 7월부터 시작되었던 단계3에서는 단계2의 세 가지의 기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목표를 명확히 하여 두 가지의 서브 프로젝트 (A: 민법을 중심으로 한 민상사 분야 입법지원, B: 법조강화 지원)를 형성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007년 3월 종료).

## 2) 법정비지원의 확대

시장경제에 대한 이행경제의 일환으로서 베트남에서 시작되었던 법정비지원은, 동아시아 국가(중국, 몽골), 인도차이나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장경제에 적합한 법체도의 정비를 주요한 협력내용으로 확대했다. 다만, 법정비지원의 목적은 반드시 시장경제화의 촉진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국가에서의 법정비지원에서는 시장경제화의 촉진과 함께, 기본법 정비나 인재양성을 통한 법의 지배의 확립도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는 1991년의 내전 종결 이후,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제도 및 사법개혁을 국가의 가장 중요과제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을 비롯한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 정부직원 및 사법관계자의 인재가 부족하여 기술 수준도 낮고, 자력으로 법령·제도의 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JICA는 1999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민법·민사소송법 등의 기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제도 정비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그 후, 2003년 4월부터, 민법·민사소송법의 입법화 촉진을 지원하는 단계2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법조인재의 절대적인 인재부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왕립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에 대하여 전문가로 파견하여, 2005년 11월부터 ‘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 민사교육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 왕립 변호사회·변호사 양성학교

에 대해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협력을 얻어 변호사 양성학교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sup>13)</sup>

또,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법의 지배에 근거로 하는 시장경제화를 위하여 법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법학교육이 정지되었던 적도 있어, 법조인재의 부족이나 관계 기관의 능력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달리, 기본적인 법령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스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기초지원이 아니라, 민법·기업법 교과서나 판결기안 매뉴얼 등의 실무 매뉴얼의 작성지원 및 이러한 것들을 통한 인재육성지원이라는 형태를 취했다(‘라오스 법제도정비 프로젝트’ 2003년 5월~2007년 5월).

또, 시장경제 이행국 이외의 국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화해조정제도의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통하여 분쟁이 조기에 공정하게 해결되는 제도만들기, 라는 법의 지배의 확립에 불가결한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민상사법 분야 이외에서는 필리핀에서의 보호사(保護司)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연수(2006년 6월~7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판사를 대상으로, 형사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분야의 기초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요르단에서의 제3국 연수(2003~2006년도), 아프가니스탄의 헌법기초를 담당하는 헌법위원회에 대하여, 일본헌법의 이념이나 견해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의 헌법학자의 파견(2003년 5월)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당초 시장경제화의 촉진을 이루고, 민상사법을 주요한 대상분야로서 베트남에서 개시되었던 법정비지원은, 법의 지배의 확립이라는 목표도 의식되게 됨과 동시에, 지원내용 및 대상지역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

13) JICA 소규모개발 파트너 사업 ‘변호사회 사법지원 프로젝트’(2001-2002년), JICA 개발 파트너 사업 ‘변호사회 사법지원 프로젝트’(2002-2005년).

## 2.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과 법정비지원

법정비지원은 정부개발원조의 한 형태인 기술협력<sup>14)</sup>으로서 실시되고 있지만, 법정비지원에는 일본형의 기술협력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특징이 많이 드러나 있다.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으로서, 다른 원조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협력과 비교하여 자주 지적되는 점으로서, ① 피원조국가의 자주성(ownership)을 존중하고, 공동으로 합의를 형성하면서 프로젝트의 계획, 실시가 행해지는 것, ② 피원조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 위에, 카운터파트 기관이 주체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제도를 변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③ 피원조국가의 카운터파트 기관에 대응하는 일본 국내의 정부기관이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의 수용 등에서 지원의 주체가 됨으로써,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일본의 조직으로부터 타당한 노하우나 기술을 체계적, 기능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1) 자주성(ownership)의 존중

일본 기술협력의 특징의 한 가지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도 과거 피원조국가였던 경험에서, 피원조국가의 입장에 서서 피원조국가의 자주성을 존중한 프로젝트의 계획,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또, 이것은 일본사회의 의사결정의 특징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프로젝

14) 기술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의 담당자가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기술이나 기능,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거나, 혹은 그 국가의 실정에 알맞은 적절한 기술 등의 개발이나 개량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술수준의 향상, 제도나 조직의 확립이나 정비 등에 기여하는 원조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경제사회인프라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한 무상 자금협력, 유상 자금협력(엔화 차관)과 대비된다. 기술협력의 협력수단에는,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의 수용, 기재의 공여 및 개발조사가 있지만, 현재에는 개발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원조 리소스의 투입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협력수단을 편성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일정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주류이다.

트의 계획, 실시에 있어서는 상대국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중시하고, 관계자와의 합의형성을 도모하면서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이로써, 상대국 관계자가 결정된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수행에 있어 강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일반적인 기술협력 이상으로, 자조노력 지원으로서 원조국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3년에 개정되었던 ‘정부개발원조대강’에서는 법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지적 지원은, 좋은 통치에 근거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고, 개발도상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개발전략을 중시하기 위하여, 좋은 통치 촉진을 위한 지원이 제도의 강요가 되지 않도록 개발도상국의 주도권(initiative)을 존중한다는 점의 중요성에 유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법정비지원에서는 단계1 및 단계2에서, 베트남 측 카운터파트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베트남 측과 년도마다 협의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의 활동내용(세미나, 연수의 테마 등)을 결정한다는 방법이 취해졌다. 이러한 방법은, 3년의 기간 전체에서 활동을 계획·관리하는데 있어서 용이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법정비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베트남 측의 신뢰를 획득하고, 지원의 성과가 베트남 국내의 법률·제도의 정비에서 중시·활용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 2) 피원조국가에 의한 주체적인 지식의 획득

또, 일본에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의 지식을 수입하여 흡수하고 내부화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자국의 상황에 따라 외래의 지식을 자국의 개발에 살린다는 견해는 기술협력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넓게 공유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식의 이식이나 모델의 강요가 아닌, 피원조국가에 이미 있는 지식이나 제도의 기반에 유의한 협력이 실시되고 있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예를 들

면, 베트남의 민법개정공동연구나 캄보디아의 민법·민사소송법 초안 공동기초에서, 단순히 일본의 혹은 유럽이나 미국의 민사법을 모델로 하여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자신들의 유럽과 미국법 수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사회의 실정에 입각한 초안이 작성되도록, 일본의 전문가와 베트남·캄보디아 측의 법안기초 관계자와의 공동작업 체제가 취해지고 있다.

### 3) 공적기관에 의한 조직간 협력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술협력은 원조 리소스의 조달에 관하여 중앙관청, 국립연구기관 등, 공적기관의 협력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공적기관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상대국의 공적기관을 조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대국의 공적기관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폭넓은 노하우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종합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큰 장점이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법정비지원 단계2 및 단계3에서, 일본의 법무성 및 최고재판소로부터 검찰관, 판사가 장기 전문가로서 현지에 파견되어, 각각 조직적인 백업을 얻어 활동했던 것은, 카운터파트 기관인 베트남 사법성,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에 필요한 지식·노하우를 장기 전문가의 활동에서 직접·간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매우 유효했다고 생각된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캄보디아변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변호사회의 조직으로서의 능력향상이 도모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 3. 향후의 법정비지원의 전망

법정비지원은 현재, 지원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수용내용을 크

게 나누면, 법규정의 정비(률의 정비), 운용·집행기관의 정비(조직이나 집행체도의 정비), 법조인재의 육성(인재의 정비), legal empowerment(시민의 법률·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향상)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 대한 법정비지원에서는 당초, 법률의 정비(기본법의 기초지원)에 중점을 둔 협력이 이루어져, 기본법의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법조인재양성에 활동의 대상을 확대해왔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차기 프로젝트에서, 법률의 적절한 운용과 집행을 위한 사법관계 기관의 정비에 중점이 옮겨질 전망이다. 한편, 라오스에 대해서는 지원개시의 시점에서 이미 일정 정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부터 판결기안 매뉴얼 작성 등의 운용면·집행과정의 개선이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했던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legal empowerment에 대해서는, 몽골에서의 법률부조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캄보디아 변호사 양성학교에서 리걸 클리닉에 대한 지원 등의 사례가 있지만, 아직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실시된 경우는 없다.

이 네 가지 분야의 지원에 관해서는 각각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의적으로 어느 분야에 대한 협력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국의 법체계 정비의 진전도, 법조인재의 양질의 정도, 일본의 법제도와와의 근사성 및 친화성 등에 따라,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떻게 네 가지의 분야를 편성하여 법정비지원을 실시하는지가 유효한가, 라는 관점에서 향후의 법정비지원의 계획 및 입안을 검토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법규정의 정비에 비하면, 다른 세 가지 분야의 협력에서의 협력방법의 확립은 뒤떨어지고 있다. JICA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인재육성이나 조직의 조직향상에 협력해 온 지견의 축적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살린 법기구의 정비, 법 주체의 육성 등에서의 유효한 협력방법의 확립이 기대된다.

## 3

1. 법무종합연구소의 국제협력<sup>15)</sup>

법무종합연구소는 ODA 가운데,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소관하고 있는 기술협력의 일환으로서, 1996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민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법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종합연구소는 재단법인 국제민상사법센터(재단)과의 공동사업으로, 한국과의 사이에서 1999년부터 민사법무행정에 관한 실무상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양국의 실무가에 의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국과는 1996년부터 재단이 중심이 되고 법무종합연구소가 협력하여, 민상사법에 관한 최신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의견·정보교환을 실시하는 일중(日中)민사상사법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법무종합연구소의 국제협력은, 형사사법에 관한 국제연수협력에서 시작되었다. 1961년에 UN과 일본정부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협정(1961년 조약 제4호)에 근거로 하여, UN 아시아 극동범죄방지연구소가 일본에 설치되어, 법무종합연구소 국제연합연수협력부가 운영하게 되었다. 법무종합연구소는 이러한 경험과 실적을 살려, 1996년부터 민상사법 분야에서의 법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는 법무종합연구소 총무기획부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사업량의 증대됨에 따라 2001년에 국제협력부가 설치되어 이러한 업무에 전임하고 있다.

15)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74頁。

## 2.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법정비지원의 과제

### 1) 법정비지원의 이념과 목적

법정비지원을 무엇을 위해 실시하는가, 그 이념과 목적은 관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다양하다. 법무종합연구소는 법무성의 ‘소장사무에 관계되는 국제협력’(법무성설치법 제4조 제37호)으로서의 입장에서, 법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성의 임무는 법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권리옹호(동법 제3호)로, 법무성이 법정비지원을 실시하는 목적은 대상국이 법의 지배를 기조로 하는 민주적인 주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에 공헌하는 바에 있다.<sup>16)</sup>

법무종합연구소 내의 국제협력부에서는 지금까지 대상국에서 권한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지배되는 ‘사람의 지배’에서 탈피하여, 어떠한 권력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정비지원에 힘써왔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로 하여 행정이 운영되고, 분쟁이 되었던 경우는 법률에 따라 재판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이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완비됨으로써, 그 국가의 정치·사회·경제가 안정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외국과의 원활한 거래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기업진출 등을 촉진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의 안정·발전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안전과 번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의 정비, 인재육성을 포함한

---

16)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79頁。

사법제도의 정비는 사회발전의 기초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ODA 관계부처 등이 노력하고 있는 각종 지원의 기초·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sup>17)</sup>

## 2) 법정비지원의 방법

구체적인 법정비지원 활동은, 각 지원 프로젝트마다 JICA의 기술협력의 기법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및 라오스에 대한 활동은 JICA의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의 한 형태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한 것은 ① 국내지원조직의 설치, ② 일본 연수의 실시, ③ 단기 전문가 파견(현지 세미나 등의 실시), ④ 장기 전문가 파견이다.

일본은, 메이지시대에 서유럽의 법체계를 배웠고, 제2차 대전 후에는 미국법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지원 방법의 특징 중 한 가지는, ①의 국내 지원 조직에 의한 지원체제를 들 수 있다. 다른 선진국가의 지원은 대형 로펌이 수탁하여, 소인수의 법률가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명칭은 연구회, 작업부회, 자문그룹(advisory group) 등 다양하지만, 해당 분야가 전문분야의 학자들, 법조 3자나 법무성의 직원 등을 멤버로 하는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이른바 all Japan 체제로 지원에 임하고 있는 것이 큰 특색이다. 지금까지, 지원을 실시할 때, 지원대상국의 주체성·자주성을 존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 서서 자국의 법제도를 강요하지 않고, 상대국의 담당자와 연수 등의 장을 통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담당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상대국의 니즈를 충분히 바탕으로 한 지원을 실시해왔다. 특히,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은, 그 나라의 생활이나 문화 및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일본의 법제를 강요해도 상대국의

17) 稲葉一生「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3頁。

실정에 맞지 않으면, 결국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 시간은 걸리지만, 상대국 담당자와의 공동작업 방식을 취함으로써, 상대국 담당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발전으로 이어지게도 된다.

②의 일본 연수는, 지원대상국의 담당자를 일본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제협력부는 연수의 기획·실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의 단기 전문가 파견은 1년 미만의 기간,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제협력부도 교관을 강사로서 파견하거나, 세미나의 기획에 협력하고 있다. ④의 장기 전문가 파견은, 1년 이상의 기간,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상대국 기간 등에 상주시켜 그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국제협력부의 교관을 장기 전문가로서 파견하고 있다.<sup>18)</sup> 사법성, 검찰청, 재판소 등의 협력 상대방 기관과 항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뉴얼이나 교재의 완성 등, 프로젝트에서 예정되어 있는 최종성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수시로 상대국 관계자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작업의 촉진을 도모하는 등, 프로젝트 운용의 주요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sup>19)</sup>

### 3)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법정비지원의 특질 - 법률실무가에 의한 법정비지원<sup>20)</sup>

법무종합연구소 국제협력부의 교관은, 검사, 재판관 및 법무성 민사국 직원 중에서 인사이동의 일환으로 배속되어, 2-4년 정도 근무한 뒤 본래의 직장으로 돌아온다. 교관은 배속 시점에서는 지원대상국의 언어에는 능통하지 못하고, 대상국의 법제도나 법률에 관한 지식도 가

18) 稲葉一生「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3-4頁。

19)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75頁。

20)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79-80頁。

지고 있지 않은 것이 통레이지만, 배속 후는 매일의 업무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지나 노력으로 대상국의 법제도와 업무에 필요한 외국어를 습득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행히도 소질과 의욕에 넘치는 교관이 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로에서 출발한다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단기간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어 그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인사이동의 제도, 경험자의 이임에 따른 국제협력부의 전략저하와, 후임자의 개인적 노력에 의한 극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부서 전체에 있어서 큰 손실이다.

한편, 국제협력부에 의한 법제도정비의 장점은, 사법연수생으로서 법조 양성교육을 받은 경험과, 법조 등으로서의 직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가에 의한 지원으로, 법무종합연구소가 법정비지원에 관여하는 것의 의의는 이러한 점에 있다. 그래서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국제협력은 법조양성기관에서의 법률실무교육의 지원이나, 재판관에 의한 판결기안 실무의 개선 등,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4) 법정비지원과 국익<sup>21)</sup>

ODA의 제도 중에서 기술협력은 무상 자금협력과 더불어 무상원조인 ‘양국간 증여’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무상원조인 이상, 원조 상대국이나 관계자로부터 대가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원조활동은, 현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상대국의 입장에 서서 상대국과 함께 생각하고 공헌하는 것을 본래의 취지로 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지원’이어야 하며, 일본의 법정비지원이 대상국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조의 자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21)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80頁。

그러나 일본이 특정국가에 대하여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의미로 일본 및 국민의 이익, 즉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국익을 어떻게 보는가이다. 법정비지원은 사회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호흡이 긴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국익도 긴 시야로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에서 법의 지배에 입각한 좋은 통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도모됨과 동시에, 대상국과 일본간의 우호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통하여,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이 실현되는 것이, 일본이 국제협력을 실시하는 이유이며, 일본의 국익이라고 생각된다. 지원대상국의 선정시에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5) 법정비지원의 실시체제 및 책임체제<sup>22)</sup>

법정비지원은 주로 JICA의 기술협력의 제도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에 대신하는 현실적인 수단은 찾아내기 어렵고, 앞으로도 이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과연 법정비지원의 방법으로서 정말로 이상적이고 적합한 수단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첫째로,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에서의 JICA와 법무중합연구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검토한다.

ODA는 외무성 국제협력국이 소관하고, ODA 가운데의 기술협력에 관한 실시기관으로서 JICA가 설치되어 있다. ODA는 넓은 의미에서의 외교의 일환이지만, 외무성의 ODA에 대한 관계 방식은, 이른바 지역국 등이 소관하는 통상의 외교활동과는 다르고, JICA에 대한 감독행

22)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81-84頁。

정이라고 해도 좋다. 외무성은 기술협력의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외, 개개의 기술협력안건의 선택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안건의 형성에서 실시에 이르는 실질적인 작업은 JICA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개의 안건에서의 구체적인 지원활동에는 외무성은 관여하지 않고, JICA의 책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23)</sup>

법정비지원은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JICA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은 JICA로부터 의뢰를 받아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캄보디아의 법령기초지원을 위한 법률학자 등에 의한 공동연구회 및 부회는 JICA가 조직하고, 위원도 JICA가 위촉한다. 장기 전문가나 현지 세미나 강사 등을 위한 단기 전문가도 JICA가 위촉하여 파견한다. 일본연수는 JICA가 재단에 실시를 위탁하여, 국제협력부가 재단에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법무종합연구소 쪽에서 보면, 법무종합연구소는 일본연수에 대해서는 조직으로서 수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장기 및 단기 전문가 파견과, 공동연구회 및 부회에 대한 위원 파견은, 형식적으로는 개개의 교관을 인재파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어느 경우에서도 법무종합연구소는 JICA에서 의뢰를 받아 이에 협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계획안 하에서, 프로젝트 운영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은 JICA를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JICA는 개발원조기관으로서 토목건설, 농업, 보건위생, 교육, 산업, 경제,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을 착수하고 있으며, 법정비지원은 지원 분야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하다. 법정비지원은 전문기술성이

23) 각 기술협력 프로젝트마다, 현지 차원에서 원활한 협력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장으로서, 일본과 지원대상국의 양측 관계기관에 의한 조인트 코디네이션 위원회(Joint Coordination Committee)가 설치되었던 적이 있어, 거기에는 JICA 현지 사무소 외, 일본의 재외공관도 참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이것은 JICA의 기술협력에 대한 재외공관에 의한 측면지원임과 동시에, 외부성의 JICA에 대한 감독행정의 일환으로, 기술협력 그 자체는 JICA가 그 권한과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매우 높지만, JICA는 사법제도나 법률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JICA가 법정비지원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령탑 기능을 완수하는 것은 짐이 무거운 것처럼 생각된다. 즉, JICA는 최근에 법정비지원을 포함한 법률·사법문제에 관한 어드바이저로서, 변호사를 상근의 국제협력 전문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둘째로, 법정비지원과 국가의 운영책임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법전기초지원에 관련하여, 법정비지원은 본래 국가의 책임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의 운영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다. 즉, ODA로서의 기술협력은 국가의 사업으로, 국가에 운영의 책임이 있지만, 국가로부터 JICA에 업무가 위임되어, 거기서 또 법률학자에 의한 국내지원위원회나 법령기초를 위한 공동연구회 또는 부회에 업무가 넘겨져, 그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점차 희석화되고 있다. 그 결과, 본래는 국가에 대한 자문기관에 불과한 학자에 의한 국내지원위원회, 공동연구회나 부회가 지원활동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게 되지 않는가, 라는 비판이다.

법정비지원은, 한 국가의 통치의 근간에 관계되는 기본법제나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주권국가에 대하여 입법의 권고, 기타 정책제언을 실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에서 국가에서 국가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ODA의 기술협력 제도가 그러한 역할에 적합한 메커니즘인지의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정비지원은 제도의 시스템 자체로서, 정부의 외곽단체, 즉 외무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인 JICA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부에 의한 활동이라는 말하기 어렵다.

또, 상대국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제언내용을 결정할 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아도, JICA 베이스의 기술협력으로 실시되는 법정비지

원에서는, 예를 들면 국제회의의 정부대표 단원에게 부여되는 대처방침이나 훈령<sup>24)</sup>과 같은 형태로 정부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원이나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견해로서 이해되었던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sup>25)</sup>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면, JICA 베이스의 기술협력은, 제도의 시스템으로서는 ODA의 일환이기 때문에, 확실히 국가(정부)로서의 노력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자체는 정부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문가 차원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야하는 것처럼 여겨진다.<sup>26)</sup>

이렇게 살펴보면, 법정비지원을 JICA의 기술협력의 체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이상,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정부)로서의 책임을 문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sup>27)</sup>

24) 국제회의에 출석하는 정부대표단원에 대해서는, 외무성(외무대신)으로부터 대처방침이나 훈령이 제시된다. 예를 들면, 결의안이나 조약안의 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조항의 문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수정제안 등, 어느 대응의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대표단으로부터 외무성에 대하여 청훈(문안 제안의 취지와 배경, 각국의 대응 등을 설명하고, 일본으로서의 대응안을 제시하여 훈령을 청구하는 것)을 행하여, 훈령을 받은 후, 이에 따라 대처해야한다. 외무성은 대처방침안이나 청훈안의 내용이 다른 관청의 소관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관계관청과의 사이에서 합의를 실시하여, 정부전체로서의 합의를 형성한 뒤 대처방침이나 훈령을 내린다. 그러나 JICA 베이스의 법정비지원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정부 견해를 형성하기 위한 메카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25) 일례를 들면, 베트남 민사소송법 기초지원 과정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베트남측(법안기초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재판소)에 대하여, 베트남 민사소송법 공동연구회의 전문가위원회에 의한 토의와 합의에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당사자주의의 도입, 감독심제도의 폐지, 검찰관에 의한 민사소송의 제기권한의 폐지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러한 의견의 내용자체는 합리성 및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그 의견은 일본의 정부견해로서 공인되었던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26) 개개 프로젝트에서, 대상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지원을 실시하고, 어떠한 의견·제언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령의 기초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동연구회 또는 부회의 의원, 현지에서 상대국 관계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장기 전문가, 법무종합연구소 국제협력부 교관 등, 지원활동에 관계되는 각 전문가(학식경험자)의 견해와, 이러한 전문가 상호간의 협의에 위임되어 있다.

27) 만약 법정비지원을, 국가(정부)가 내용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국가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행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일미(日美)구조협약과 같이, 일본과 상대국과의 사이에서의 외교적 대화로서 실시하는 것을 생각할

셋째로, 양국의 동업기관 사이의 신뢰관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법무종합연구소가 실시하는 법정비지원에서는, 대상국의 카운터파트 기관은 사법성, 검찰청, 법원, 법조양성기관 등의 사법관계 기관이다. 일본이 평소 지원업무를 통하여 카운터파트 기관과 접촉하는 가운데 실감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은 각각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중앙관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서, 일본에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대응기관, 즉 일본의 법무성, 검찰청 또는 법원 등과 사이에서의 상호교류와, 이러한 기관에 의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카운터파트 기관이 일본의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지원활동에 협력하는 것도, 일본 정부의 ODA에 의한 기술협력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동업기관 상호간의 신뢰감과 연대감, 즉 법무성에 속하는 법무종합연구소가 조직으로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지원을 신뢰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는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법정비지원은,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도 ODA의 기술협력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실시체제나 실시방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다면적인 요소를 고려한 뒤, 더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6) 도너간 협조의 필요성

민상사법에 관한 법정비지원의 분야에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나 국제기관(donor)이, 각각 독자적인 입장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한 국가에 대한 복수의 도너에 의한 지원이 중복되거나 저축되는 경우도 있다. 대상국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너 사이에서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

수 있을 것이다.

형사사법의 분야에서는 세계 각국이 공통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조적인 노력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 실천되고 있다. 마약범죄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1988년에 UN 마약 신조약이 채택되어 마약범죄의 수익에 대한 돈세탁(money laundering)의 범죄화나, 도망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사공조 등의 강화 등이 의무화되었다. 그 후, 국제조직범죄나 오직부패의 분야에서도 UN조약의 채택을 통하여, 비슷한 국제적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UN 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나, 위의 각 조약의 채택국 회의 등이, UN 가입국간에서의 정책협의를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 법정비지원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협조적인 대응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원조대상국의 현지 베이스에서, 도너국이나 도너 기관이 때때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교환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실정이다. 향후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보다 본격적이고 항상적인 정보교환이나 정책협의를 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이치를 탐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 1. 대상국 · 대상지역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가 기존부터 노력해왔던 지원사업의 대상국은 모두 아시아지역이다.

ODA 대강에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시아는 중점지역이다’라고 제시되어 있

28)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3頁、4-8頁。

는 것처럼, 아시아는 ODA의 중점지역이다. 일본도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와는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깊으며 공통된 문화적 기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 2. 베트남

### 1) 종래의 경위

일본의 법정비지원 가운데 베트남에 대한 것이 가장 역사가 깊고, 법무성이 협력을 실시했던 것은 1994년이다. 그 후, 1996년, JICA의 법정비지원 프로젝트로서 실시되고 나서부터 2007년 3월 동 프로젝트의 단락이 일단 마무리 될 때까지 동안, ① 민사기본법령의 기초·개정, ② 국가사법학원에서의 법조양성, ③ 판결서의 표준화, ④ 베트남 국가대학 법학부 하노이교에서의 일본법 교육 등의 실시가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 2004년에 민사소송법과 파산법이, 2005년에는 개정 민법이, 각각 베트남의 국회에서 가결 성립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2) 법조 3자에 의한 현지 지원 활동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법정비지원은 베트남의 사법성,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 등, 사법제도의 핵심기관을 상대로 하고, 당초는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의 파견뿐만이었지만, 2000년 이후, 현직의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라는 법조 3자가 JICA의 장기 전문가로서 파견되어 상주하고, 일상적, 기동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베트남 측 사법관계기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의 한 가지로 들 수 있다. 검찰관 출신의 장기 전문가에 대해서는 국

제협력부 설치 후인 2003년부터는 국제협력부 교관을 파견하고 있다.

### 3) 현재의 상황과 과제

이러한 경위로, 2007년 4월부터는, 종전 프로젝트의 계속이 아니라, 4년 계획의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각 5대째가 되는 법조 3자의 장기 전문가가 파견되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개정이나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민사판결집행법 등의 중요한 법률의 기초지원도 예정되어 있지만, 실무개선을 위한 지원에 보다 한층 더 중점이 놓여지게 되었다. 즉, 법의 운용체제 및 법조 등의 능력개선을 위한 지원으로서, 베트남 측이 지정하는 파일럿 지구(박닌성이 지정되었다)에서, 주로 사법기관(재판관, 검찰관, 변호사)을 대상으로 하여, 재판실무의 개선과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 지방에서도 사법기관 외 사법보조기관(호적, 부동산등기, 공증, 집행에 관계되는 직원)도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능력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폭넓은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파일럿 지구에서는 장기 전문가를 중심이 되어 베트남 측 워킹그룹(Working Group)과 함께, 현행의 재판절차·재판소에서의 재판활동의 모니터링이나 현행 실무의 검증과 문제점을 찾아내어 문제점의 원인분석과 개선책의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중앙기관에 환원한 후, 기존의 지원에서 작성했던 실무 매뉴얼의 개정이나 새로운 매뉴얼의 작성, 판례나 기타 법률정보의 지방으로의 전달 및 지방으로부터의 문의에 관한 응답방법의 개선 등에 반영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종전의 프로젝트에서는 재판관으로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좌장을 중심으로, 국내지원 조직인 연구회 멤버들에게, 판결서 개선 등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받았다.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앞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종전에 비하여 실무개선의 지원에 중점이 놓여지게 되었기 때

문에, 비교적 젊은 실무자인 현지의 장기 전문가를 충분히 서포트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경험이 풍부한 실무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 여전히 중요한 법률의 개정이나 신규 입법 지원도 예정되어, 앞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국내 지원조직·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나 실무가, 관계기관 등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3. 캄보디아

#### 1) 종래의 경위

##### (1) 민법 및 민사소송법 기초지원

일본 측의 국내지원 조직인 민법작업부회 및 민사소송법 작업부회가 많은 노력을 들여, 캄보디아 측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듭하면서 완성시킨 민법 초안 및 민사소송법 초안은 2003년 3월까지 캄보디아 측에게 인도되었고, 그 후, 캄보디아 국내의 정치정세에 의해 약간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법률로서 성립·공포되어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민법은 적용개시일은 미정이지만, 2007년 12월에 법률로서 성립되었다. 원안을 일본이 작성한다는 방식으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라는 민사 분야의 기본법이 법률로 정비되었던 것은, 일본의 법정비지원에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2) 재판관·검찰관 양성지원

재판관·검찰관을 양성하는 왕립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이하 ‘양성학교’라고 한다)가 2003년 11월에 교육을 시작했지만, 양성학교의 체제는 취약했다. 그래서 국제협력부에서는 JICA와의 협력 아래에서, 정식적인 지원 프로젝트를 형성하기 전에, 조사·준비적인 지원활동

을 실시하면서, 양성학교의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2004년 1월부터 국제협력부 교관을 반년 간 파견하여 조사를 한 후, 양성학교 관계자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또, 교관을 단기 전문가로 5개월 정도 파견하는 것을 반복하여, 1기생 커리큘럼의 재검토나 교재의 작성 지원 작업 등을 추진하여 프로젝트화를 위한 준비활동을 실시하고, 1기생에 대한 모의재판을 실시하거나 민사 제1심 절차 매뉴얼 작성지원 등을 실시하면서, 양성학교 측과 협의를 추진하여 2005년 11월, 드디어 정식으로 JICA의 지원 프로젝트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식적인 프로젝트화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교재작성이나 교관양성 등의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부 교관을 비롯하여 장기 전문가로서 양성학교에 파견했다.

## 2) 현재의 상황과 과제

### (1) 기초지원

2008년 4월부터의 4년 계획 프로젝트에서는, 민법 관련의 호적, 등기, 공탁 등의 부속법령의 기초·정비, 민법, 민사소송법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 측이 원안을 기초해 왔지만, 앞으로는 캄보디아 측에 기초의 주도권을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민법의 부속법령은, 등기나 공탁 등의 업무를 어느 기관이 취급하게 하는가, 그 설비나 기재는 어떻게 하는가 등 캄보디아의 제도설계나 인프라 정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을 것, 일본의 지원 대상 기관인 사법성 이외의 기관이 소관하고 있는 제도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 정비해야 하는 법령이 많은 가운데, 캄보디아 측의 워킹그룹의 주요한 멤버는 사법성 또는 재판소에서의 요직을 맡고 있으며 그 본래 업무가 매우 바쁜 등, 과제는 많아 일본 측의 지원에 기대되는 부분은 여전히 크다. 그러한 가운데, 캄보디아 사법성 내에 새롭게

워킹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젊은 세력에 의한 서브 워킹그룹이 결정되었던 것은 캄보디아 측이 입법을 담당하는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으로, 자립발전성의 관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다. 한편, 일본 측의 장기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활동내용도 다기에 걸쳐 있으며 양적으로도 과중한 상황에 있지만, 새롭게 업무조정 전문의 장기 전문가가 1명 파견될 예정으로, 과중한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2) 재판관·검찰관 양성지원

2008년 4월부터의 4년 계획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국제협력부에서 2대째의 장기 전문가를 파견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판관·검찰관 양성지원에 JICA 프로젝트의 형성과정부터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실무가의 양성지원은, 바로 실무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는 활동으로, 앞으로도 사법연수소 교관을 비롯한 국내 지원위원 등의 조언을 얻으며 교재작성지원, 커리큘럼 개선지원, 교관양성지원 등, 적극적으로 양성학교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판관·검찰관의 신규양성 교육에 특화된 지원이었지만, 2008년 4월 이후 지원내용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성학교 측의 강한 요청이 있어, 재판관의 계속 교육도 지원 내용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현지에서의 지원체제로는 계속 교육 지원에 대한 대응은 매우 한정된 것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프로젝트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섭과정에서는 서기관 양성학교, 집행관 양성학교에 대한 지원도 요청되고 있었다. 일본이 지원했던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적절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서기관 및 집행관의 양성도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며, 앞으로 일본 측 지원체제의 내실화·강화가 기대된다.

#### 4. 라오스

1999년부터 사법관계자의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일본연수·현지 세미나를 시작하여 법무종합연구소 교관을 JICA 단기 전문가로서 현상조사 등에 파견하는 등을 실시한 결과, 2003년부터 법정비지원 프로젝트가 실시되어, 국제협력부로부터는 전문관을 JICA 장기 전문가로 파견하는 외에, ① 민법과 상법의 교과서 작성지원, ② 민사 제1심 재판의 판결서 매뉴얼 및 검찰관 매뉴얼의 작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연수와 현지 세미나를 실시했다.

2007년 5월, 이 프로젝트는 종료되고, 현재 다음의 프로젝트까지의 ‘브릿지 기간’으로서, JICA 라오스 사무소에서 위의 각종 성과물의 보급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 인적체제를 포함하여 신규 프로젝트의 실시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가 중기개발계획(2004년~2009년)에서의 세가지 기둥 중 한 가지에 ‘민주적이고 공정한 인도네시아의 창조’가 거론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사법기관·법집행 기관의 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 그 활동의 한 가지로서 ‘미제사건의 해결촉진화’를 들 수 있으며, 미제사건의 삭감이 급선무로 여겨지고 있다(인도네시아에서는 최고재판소에서는 미제사건이 많아 화해 및 조정절차는 매우 저조했다).

국제협력부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200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분쟁해결 제도의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를 테마로 하여 ① 화해·조정실무의 개선, ② 소규모 분쟁에서의 간이한 재판절차의 도입, ③ 상소제한의 도입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연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온 바, 2006년의 연수 성과로서, 인도네시아에서의 화해·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案)이 연수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JICA 프로젝트로서 2007년 3월부터 2년간의 예정으로, 화해·조정제도 정비를 위한 최고재판소규칙개정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국내 지원조직으로서 전 재판관으로 이 분야에 상세한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이 결성됨과 동시에,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되었다. 국제협력부는 이러한 그룹멤버의 교수들과 장기 전문가와 제휴하여, 일본연수, 현지 세미나를 비롯하여 프로젝트의 운영진반에 협력하고 있다.

## 6.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시장경제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에 따라, 도산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구소련연방시대는, 국영기업 체제가 취해지고 있었으며, 기업의 도산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산법이 제정되어도 그 제도가 좀처럼 주지되지 않고, 또 도산법에 관한 문헌 등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과 실무가 다르거나, 실무의 취급도 가지각색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무종합연구소에서는 JICA와 협력하여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시장경제화 촉진을 위한 연수 등의 활동을 실시해온 바, 도산사건을 소관하는 우즈베키스탄 최고경제재판소로부터의 요청에 부응하여, 2004년부터 우즈베키스탄 도산법 주석서의 작성지원에 협력해 왔다(JICA 프로젝트로서 합의문서가 교환되었던 것은 2005년 11월이지만, 사실상 2004년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그 성과로서 2007년 3월에 도산법 주석서(러시아어), 같은 해 9월에 우즈베키스탄어판 및 일본어판, 2008년 3월에 영어판이 각각 간행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주석서 발간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일본 측의 국내지원조직으로서 일본의 도산법의 전문가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도산법 주석서 작성지원 위원회가 설치되어, 우즈베키스탄 측 워킹그룹이 집필했던 원안에 대하여 일본 측이 코멘트나 수정안을 제시하여, 보다 좋은 내용이 되도록 협의를 거듭해온 것이다.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영어 외 러시아어도 능통한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되고, 국제협력부로서도 이러한 전문가와 밀접한 제휴를 맺으며 프로젝트의 운영에 협력해왔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의 도산법 주석서가 발간된 의의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07년 9월에 종료되었지만,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중앙아시아 국가에는 여전히 법령이 미비하거나 운용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는 등의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국가들은 우라늄 등의 천연광물자원의 공급 국가로서 재화에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정치적·경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일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법제도·실무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바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원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는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국가 회사법제 등을 테마로 하는 ‘중앙아시아 비교법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 7. 중 국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로부터 일본에 대하여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재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 ‘중각민사소송법·중재법 개선 프로젝트’가 2007년 11월부터 3년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협력내용으로서는 위의 법제공작위원회 민법실의 기초담당자 등에 대하여, 일본의 법 개정의 경위나 그 배경에 있는 실무의 실정 등에 관한 지견 등,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의 실정을 바탕으로 한 개선점을 제언해가는 것 등이 예정되어 있다. 국내지원조직으로서 일본의 민사소송법 등의 연구자와 법조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설치됨과 동시에, 2007년 11월에 제1회 일본연수, 2008년 3월에는 현지 세미나가 각각 실시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제2회 일본연수가 예정되어 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는 중국으로의 유학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가 파견되었다.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기반인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은,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과 교류가 있는 많은 국가에게 있어 의의가 있는 것으로, 법무성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있다.

5

29)

법정비지원 사업은 대상국의 사법제도의 근관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가나 국제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동종의 지원과 적절한 제휴 및 조정을 도모하면서, 대상국 전체의 법체계에 정합성이 있으며 또 해당국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의 입장에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정을 보면, 대상국으로부터의 개별 요청을 그때마다 개별로 검토하고, 개개의 관계부처 등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상이 강하고, 그러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는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또, 본래 업무에 매우 바쁜 연구자 등의 일부를 보란티어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적인 협력에 의존해왔던 부분도 크다고 생각된다.

29) 稲葉一生「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8頁。

법정비지원 사업에서, 법무성, 그 중에서도 국제협력부가 완수해야 하는 역할이 중대한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법무성만으로 완수할 수 있는 지원에는 저절로 한계가 있으며, 일본 국내의 제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휴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어, 첫째가 국내 법률가간의 제휴이고, 둘째가 관계부처 등의 제휴이다.

법정비지원에서 현지에서의 지원활동에 임하는 전문가로서,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재차 말할 필요도 없다. 또, 국내의 서포트 체제로서, 법조 3자와 학계가 이른바 All Japan으로서의 지원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법정비지원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법률가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바가 크고,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가지는 법률가가 늘어날 것이 기대되지만, 그러한 법률가가 늘어나듯이, 법률가의 인센티브를 높일 노력이나 연구가 필요하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법률가뿐만이 아니라, 지원대상국의 현지어와 일본어의 법률용어에 정통한 통역·번역가의 양성과 확보이다. 법정비지원은 말이라는 도구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기술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매우 한정된 사람들에게 통역이나 번역 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의 인적 체제를 포함하여, 관계부처가 제휴하고, 정부 전체가 법정비지원에 대한 대응전력이나 기본계획의 책정이 내각을 중심으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했던 해외경제협력회의에 관계부처 등의 국장급 멤버로 구성된 연락회의가 설치되었고, 또 관계부처의 과장급 멤버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향후 법정비지원에 관한 니즈 조사를 재차 실시하고, 중점 국가, 지역, 지원 분야, 인재확보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예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정비지원에 종사해온 경험과 지견을 살리면서, 정부전체

로서의 노력에 전면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한다. 향후 그러한 정부전체의 시스템에서 법정비지원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 참 고 문 헌

- 논 문 -

- 鮎京正訓 「法整備支援活動による法整備の国際発信」『法律のひろば』  
2006年8月(Vol.59 No.8)、37-43頁
- 鮎京正訓 「大学による法整備支援—人材育成と比較法学の課題」『法律  
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17-21頁
- 鮎京正訓 「名古屋大学と法整備支援事業・研究」『Jurist』 有斐閣、2008  
年6月15日(No.1358)、17-25頁
- 磯井美葉 「弁護士会に対する支援の意義と課題—モンゴル弁護士会支  
援の経験から」『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  
46-49頁
- 伊藤文規 「法整備支援の現場から—ベトナムにおける法・司法制度改  
革支援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研修』 2009年7月(No.73  
3)、53-60頁
- 稲葉一生 「法整備支援に学ぶ—外から見直した日本の法制度—法整備  
支援の今後の課題」『研修』 2007年7月(No.709)、81-86頁
- 稲葉一生 「法整備支援の軌跡と今後の課題」『法の支配』 日本法律家協  
会、2007年10月(No.147)、84-92頁
-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  
2-8頁
- 上原敏夫・竹下守夫・大村雅彦・三木浩一・松下淳一・矢吹公敏・田  
中嘉寿子 「[座談会]法整備支援の現状と課題」『Jurist』 有斐  
閣、2003年4月15日(No.1243)、64-86頁

- 上原敏夫 「カンボジア民事訴訟法典の成立」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6-33頁
- 上柳敏郎 「法整備支援の制約条件とその克服—特集あと書きにかえて」 『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54-57頁
- 岡村泰孝 「(財)国際民商事センターの法整備支援活動」 『法律のひろば』 2001年10月(Vol.54 No.10)、38-43頁
- 尾崎道明 「法整備支援の新たな展開—国際協力部の親切」 『法律のひろば』 2001年10月(Vol.54 No.10)、4-11頁
- 尾崎道明 「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における民商事法を中心とした法整備支援活動について」 『法の支配』 日本法律家協会、2002年7月(No.126)、5-16頁
- 大谷美紀子 「国際司法支援活動における国際法曹団体との協同」 『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50-53頁
- 落美都里 「我が国の法整備支援の現状と問題点—法分野からの平和構築—」 『レファレンス』 国立国際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2007年3月号、99-109頁
- 香川孝三 「在ベトナム日本大使館公使として触れたベトナムの法と社会(3)—法整備支援事業」 『法学教室』 2006年12月(No.315)、6-7頁
- 金子由芳 「法整備支援における政策判断に資する立案・評価手法の検討」 国際協力総合研究所、2006年8月
- 神木篤 「法曹養成支援の課題—カンボジア」 『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34-37頁
- 川嶋四郎 「日本における法整備支援の課題と展望について」 『法政研究』

- 九州大学大学院法学研究院、2007年3月(Vol.74 No.4)、685-714頁
- 亀卦川健一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の行う法整備支援について」、『慶応法学』2009年3月(No.13)、239-261頁
- 桑原尚子 「法整備支援における「法の移植(legal transplants)」をめぐる議論の序論的考察—理論と実践の架橋をめざして—」、『国際開発研究フォーラム』、2007年3月(No.34)、171-184頁
- 佐々木雄太 「大学における国際協力の一例としてのアジア法整備支援」、『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32-37頁
- 佐藤安信 「法の支配」のジレンマ—カンボジアの法整備支援の課題と展望」、『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11-16頁
- 佐藤直史 「法整備支援実施機関の近年の取組みと法律家(法整備支援専門家)の役割」、『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26-29頁
- 柴田紀子 「法整備支援に学ぶ—外から見直した日本の法制度—プノンペンから」、『研修』2007年3月(No.705)、87-92頁
- 柴田紀子 「カンボジア裁判官・検察官養成支援」、『Jurist』有斐閣、2008年6月15日 (No.1358)、34-41頁
- 関根澄子 「法整備支援の現場から—カンボジア・ベトナムにおける裁判実務の改善に向けて—」、『慶応法学』2007年10月(No.8)、305-314頁
- 竹内努 「最高裁と法整備支援」、『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25-31頁
- 田中嘉寿子 「法整備支援に学ぶ—外から見直した日本の法制度—イン

ドネシア和解・調停制度強化支援プロジェクトの開始』『研修』2007年6月(No.708)、75-82頁

鳥居香代 『JICAの法整備支援』 JICA公共政策部

中井憲治 『カンボジアの法整備支援のことなど』『研修』2006年10月(No.70)、23-34頁

平石努 『ADR支援の意義と課題—インドネシア』『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42-45頁

本間佳子 『法律起草後の課題—カンボジア』『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30-33頁

松尾弘 『法整備支援における民法典整備の意義と課題』『慶応法学』、2006年1月(No. 4)、31-62頁

松尾弘 『法と開発』(Law and Development)への法科大学院の取組み 『慶応法学』2006年5月(No.5)、329-350頁

松尾弘 『良い統治』は法整備支援の目標たりうるか? —その内在的ジレンマを解く鍵のあり方』『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4-10頁

松嶋希会 『移行経済国に対する支援—ウズベキスタン・中央アジア諸国』『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38-41頁

丸山毅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による法整備支援への取組み』『慶応法学』2006年5月(No. 5)、351-363頁

三ヶ月章 『アジア諸国の法整備に対する支援と協力—法学者による若干の感想と展望』『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44-52頁

- 三澤あずみ 「カンボジアにおける法整備支援の概要」 『慶応法学』 2006年5月(No.5)、365-372頁
- 宮崎朋紀 「法整備支援の現場から—カンボジアにおける法曹養成、ベトナムにおける裁判実務改善について—」 『慶応法学』 2009年3月(No.13)、263-274頁
- 森島昭夫 「法整備支援の理念とその課題」 『法律のひろば』 2001年10月(Vol.54 No.10)、12-17頁
- 安田佳子 「法令の外国語の必要性—法整備支援の体験から」 『Jurist』 有斐閣、2005年 2月15日(No.1284)、20-25頁
- 山下輝年 「法整備支援がもたらすもの」 『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 (Vol.82 No. 1)、22-25頁
- 矢吹公敏 「国際司法支援と弁護士」 『自由と正義』 1999年10月号(Vol.50 No.10)、44-55頁
- 矢吹公敏 「日弁連における法整備支援」 『法律のひろば』 2001年10月(Vol.54 No.10)、18-24頁
- 矢吹公敏 「日弁連における法整備支援」 『慶応法学』 2006年5月(No.5)、373-385頁
- 矢吹公敏 「日本弁護士連合会と国際司法支援活動」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9-16頁
- 横田洋三 『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ODA研究会、2008年3月
- Nyo Nyo Thinn 「The legal System in Myanmar and the Foreign Legal Assistance」 『慶応法学』 2006年5月(No.5)、387-403頁

-단행본-

安田信之 『第三世界開發法学入門』 アジア經濟研究所、1992年3月

安田信之 『開發法学：アジア・ポスト開發國家の法システム』 名古屋  
大學出版會、2005年2月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制度構築の國際協力入門』 ミネ  
ルヴァ書房、2007年4月

國際協力機構企画・評価部評価監理室 編 『プロジェクト評価の實踐  
的的手法：考え方と使い方 JICA事業評価ガイドライン改訂  
版』 國際協力出版會、2004年3月

松尾弘 『良い統治と法の支配：開發法学の挑戦』 日本評論社、2009年8月

三ヶ月章 『司法評論. 3(法整備協力支援)』 有斐閣、2005年7月

法務綜合研究所 『法整備支援をめぐる國際情勢と開發法学』 法務省法  
務綜合研究所國際協力部、2009年3月